

연구보고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이선희·박미진·박종식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연구진

연구기관 : 충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이선희 (교수, 충남대학교)

연구원 : 박미진 (실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 박종식 (부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 김선하 (석사과정, 충남대학교)

연구원 : 윤선미 (석사과정, 충남대학교)

연구원 : 멜리아 리즈크 아제다라흐 (석사과정, 충남대학교)

연구원 : 최서영 (박사과정, 서강대학교)

요약문

- 연구기간 2024년 04월 ~ 2024년 10월
- 핵심단어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 설문개발
- 연구과제명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배경

2023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실태조사 3종, 즉,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작업환경 실태조사」, 「근로환경조사」에 대한 개편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편 방향에 따라 2025년에 실시할 제11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의하고, 재정의된 역할과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주요 연구내용

1) 문헌 조사

조사 방향 설정을 위해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검토하고, 최근 산업재해 발생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조사인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근로환경조사」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체 대상 해외 조사인 「유럽 사업체 대상 안전보건 조사」, 「독일의 GDA 사업체 조사」, 일본의 「노동안전위생조사」의 조사 목적, 문항, 조사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의견 수렴

안전, 보건, 조사 분야의 학계, 연구, 실무 전문가 총 29명을 대상으로 조사의 방향, 문항 내용,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3) 조사표 개발

조사표의 설문항은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수정된 설문항을 다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다. 총 2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관점에서의 설문항의 명확성, 이해가능도, 그리고 현장 작동성 등을 확인하였다. 최종 조사표는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 사용할 일반 설문지와 건설업 설문지 등의 2개의 버전으로 개발하였다.

4) 표본설계 및 조사 방법 제안

향후 모집단 재정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업종의 범위 및 사업장 규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여섯 개의 모집단 안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표본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최적의 조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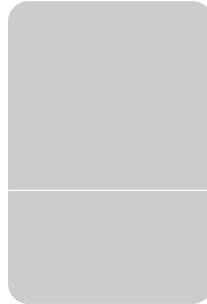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2025년 실시될 제11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시행 방안 개발 및 조사지로 활용될 것이다.

4. 연락처

연구책임자: 충남대학교 교수 이선희 (sunhee_lee@c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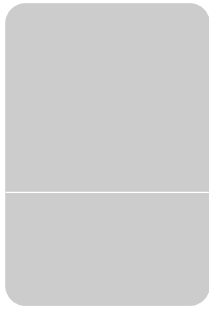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조윤희
(uno@kosha.or.kr)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3
II.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문헌 조사	7
1) 3대 안전보건 조사	7
2) 외국 사업체 대상 안전보건 조사	7
3) 산업재해 발생 실태 분석	7
4) 최근 산업 안전보건 관련 경향	7
2. 전문가 의견 수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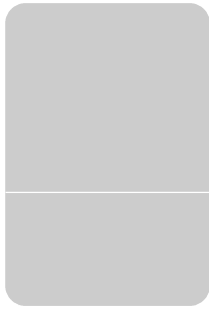
3. 문항 개발 및 예비조사	9
4. 모집단 및 표본 추출안 제안	12
Ⅲ. 결과	13
1. 문헌 조사	15
1) 3대 안전보건 조사	15
2) 외국 사업체 대상 안전보건 조사	22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이슈	32
4) 산업재해 발생 실태	33
2. 전문가 의견 수렴	37
1) 전반적 개선방향	37
2) 사업체 일반 특성	38



목 차

3) 위험 요인	38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태	39
5) 원하청 안전관리	42
6) 안전결과	44
7) 외부지원 및 규제	44
3. 개선 방향	44
1)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	44
2) 모집단과 표본 설계	45
3) 설문 내용 개선 방향	47
4. 문항 개발 및 예비조사	50
1) 예비 문항 개발	50
2) 예비조사 결과	51

3) 최종 검토	54
VI. 결과: 조사 시행방안 제안	55
1. 최종 조사표	57
2. 모집단 및 표집 설계	65
3. 조사 방법	68
참고문헌	70
Abstract	72
부록	75
1. 예비조사 면담 내용 요약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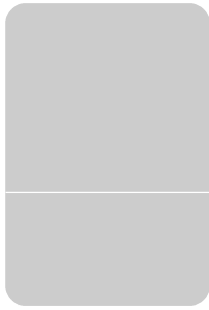
목 차

2. 개정 조사표(안)	95
3. 문항별 참고사항	139
4. 10차 조사와의 비교표	148
5. 표집설계	170



표 목차

〈표 II-1〉 분야별 참여 전문가	8
〈표 II-2〉 예비조사 참여자	11
〈표 III-1〉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조사 내용	17
〈표 III-2〉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 조사 내용	20
〈표 III-3〉 ESENER 주요 조사 내용	24
〈표 III-4〉 3차 ESENER 위험요인	25
〈표 III-5〉 GDA 주요 조사 내용: 사업체 조사	28
〈표 III-6〉 GDA 사업체 및 근로자 조사 위험요인 목록	29
〈표 III-7〉 2023년 노동안전위생조사(사업체) 주요 조사 내용	31
〈표 III-8〉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 및 과제	32
〈표 III-9〉 조사 항목별 정보원	49
〈표 III-10〉 예비 설문지 문항 내용	50
〈표 III-11〉 예비조사 면담 결과 시사점	54
〈표 IV-1〉 최종 조사표의 범주 및 문항 정보	59
〈표 IV-2〉 모집단 안	66
〈표 IV-3〉 조사 절차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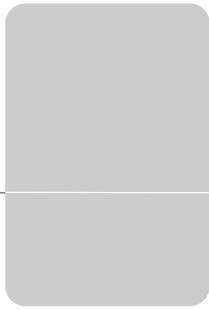


그림목차

[그림 Ⅱ-1] 설문항 개발 절차	9
[그림 Ⅲ-1] 2023년 업종별 재해자 비율	34
[그림 Ⅲ-2] 2023년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건설업 외	35
[그림 Ⅲ-3] 2023년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 비율: 건설업 외	35
[그림 Ⅲ-4] 2023년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건설업	36
[그림 Ⅲ-5] 2023년 공사금액별 산업재해자 비율: 건설업	37
[그림 Ⅲ-6]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주요 개념 간 관계	47

I. 서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실태조사 3종, 즉,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작업환경 실태조사」, 「근로환경조사」에 대한 개편을 결정하였다. 주요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1) 내용 측면에서 산재예방 정책수립 및 안전보건 동향 파악이라는 기본 목적 아래, 특히 산재 예방과 관련성 높은 항목에 초점을 두며, 2) 방법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조사 주기를 가지고 있던 해당 조사들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매년 한 개의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3) 마지막으로, 조사 주체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예산도 모두 22억 원으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기존 예산이 4억 6천만 원에서 22억 원으로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편 방향에 따라 2025년에 실시할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의하고, 재정의된 역할과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개편된 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다. 즉, 실태조사 3종 개편 방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가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근로환경조사」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목적과 역할을 재정의할 것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와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기존에는 대상과 내용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새롭게 개편된 틀 내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취업자 대상인 「근로환경조사」 내용과 사업체 대상인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목적과 내용을 설계할 계획이다.

둘째, 재정의된 조사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대상 모집단을 정의하고, 해당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하위 집단(업종별, 규모별)별 표본 수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조사지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조사지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사 방법 및 조사원 선발 기준 등의 조사 실시방안을 제안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문헌 조사

1) 3대 안전보건 조사

본 연구 대상인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와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근로환경조사」의 목적, 문항, 조사 방법을 분석하였다.

2) 외국 사업체 대상 안전보건 조사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해외 대표적인 조사인 「유럽 사업체 대상 안전보건 조사」(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 ESENER; Howard et al., 2022), 독일의 「Betriebs- und Beschäftigtenbefragung der GDA」의 사업체 조사(GDA, 2019), 일본의 「노동안전위생조사: 사업체」(厚生労働省, 2022)의 조사 목적, 문항, 조사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3) 산업재해 발생 실태 분석

모집단 정의와 설문항 개발을 위해 ‘2023 산업재해현황’(고용노동부, 2024)을 바탕으로 업종별,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최근 산업 안전보건 관련 경향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요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해 ‘제5차 산

재예방 5개년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그 외 관련 연구물을 바탕으로 최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의견 수렴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조사목적 정의, 주요 조사 내용 결정, 문항의 적절성 검토, 모집단 및 표본 계획,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하였다. 의견 수렴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29명이며, 분야별로 구분하면 표 II-1과 같다. 전문가 의견 수렴은 대면 혹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실시하였다.

〈표 II-1〉 분야별 참여 전문가

분야	전문가
안전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분야 연구자 1명 •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3명
보건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분야 교수 2명 • 보건 분야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 3명 • 안전보건공단 담당 1명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분야 연구자 3명
안전보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1명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1명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명 • 건설업 대표 1명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2명
중소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2명
위험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1명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연구원 담당자 1명 • 법학과 교수 1명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분야 현장 전문가 5명

3. 문항 개발 및 예비조사

그림 II-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설문항은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다시 예비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다.



[그림 II-1] 설문항 개발 절차

또한 설문항 개발 단계의 일환으로 설문항의 현장 작동성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는 총 21개의 사업장이 참여하였다. 참여 사업장은 잠재적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업종과 규모를 다양하게 포함하였는데, 표 II-2는 예비조사에 참여한 사업장 및 응답자의 특성을 제시한다.

예비조사는 우선 전화로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이메일을 통해 조사 안내 문과 설문지를 송부하였다. 설문지는 종이 설문지 혹은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제공하고, 이 중 참여자가 선호에 따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종이 설문을 선택한 경우는 참여자가 인쇄하여 응답하고, 응답 소요 시간을 기록하도록 요청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응답 소요 시간이 자동적으로 기록되었다. 응답 소요 시간은 평균 25분(최소=10분, 최대=60분)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 후, 미리 약속한 시간에 연구자가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인지조사(cognitive pretest) 방식을 기반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지조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응답자들이 실제로 예비 설문지에 응답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알아내는 기법으로 조사 문항의 명확성, 난이도, 응답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유용하다(Collins, 2003). 구체적으로, 먼저 전반적으로 응답에 어려움은 없었는지를 질문하고, 참여자의 설문 응답 자료를 검토한 후, 미리 준비한 면담지를 활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였다.

〈표 II-2〉 예비조사 참여자

번호	업종	규모	응답자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21명	• 사업주
2	A. 농업, 임업 및 어업	47명	• 관련 업무 담당자
3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0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90명	• 안전관리자
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9명	• 안전관리자
6	F. 건설업	44억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7	F. 건설업	40억	• 안전관리자
8	F. 건설업	170억	• 안전관리자
9	G. 도매 및 소매업	180명	• 안전관리자
10	H. 운수 및 창고업	25명	• 안전관리자
11	I. 숙박 및 음식점업	47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2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00명	• 안전관리자
13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2명	• 안전관리자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명	• 관련 업무 담당자
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80명	• 관련 업무 담당자
1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20명	• 보건관리자
17	P. 교육 서비스업	76명	• 관련 업무 담당자
1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50명	• 안전관리자
1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0명	• 보건관리자
2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명	• 사업주
2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모집단 및 표본 추출안 제안

문헌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모집단 및 표본 추출안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선정하고, 각 대안별로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층화 집단별 표본 수와 측정오차를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Ⅲ. 결과

.....

Ⅲ. 결과

1. 문헌 조사

1) 3대 안전보건 조사

(1) 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사업장 수준의 전반적 안전보건현황을 조사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승인통계조사로서,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을 포함한 폭넓은 위험 요인과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과 안전문화 등 위험 요인 관리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산업 안전보건의 정책 개발과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다. 2002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 매 3년 주기로 실시되어 왔으며, 2021년에 시행된 제10차 조사가 가장 최근의 조사이다.

나) 조사 방법

2021년에 시행된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상근 근로자 '20인 이상'의 산재보험 가입 제조업 및 기타 서비스업(①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②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③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⑤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⑥ 우편 및 통신업 ⑦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⑧ 사업 지원 서비스업 ⑨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 현장이었다.

표본은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명부를, 그리고 건설업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명부를 표본틀로 사용하였으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층화표집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업종은 표준산업 분류상의 중분류를 사용하였고, 사업장 규모는 5개로 구분했는데, 제조업과 기타 산업에서는 상용근로자 기준(20~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50~120억원 미만, 120~300억원 미만, 300~5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본크기는 제조업 3,000개, 서비스업 2,500개, 건설업 1,500개이었다.

조사대상은 안전보건담당자이고, 담당자가 없으면, 노무·총무·관리부 등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방법은 3개 업종 모두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직접 방문면접 조사로 진행하였는데, 가능한 경우 미리 조사표를 사업장에 송부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조사 내용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항은 김윤화 등(2020)의 관련 연구, 해외 사업체 대상 산업안전보건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1) 기본 정보, 2) 안전보건시스템(운영조직 등), 3)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 요인, 4)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5) 안전문화, 6) 원하청 안전보건 관리, 7) 안전보건 예산(건설업만), 8) 재해 현황, 9) 기타 등을 포함하였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표 III-1은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설문내용을 주요 범주별로 제시한다.

〈표 III-1〉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사업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로자 수(전체, 만 55세 이상, 외국인, 여성) • 교대근무제도 활용여부 • 교대근무 및 야간 근무자 비율 • 근무제도 시행 여부(재택/원격,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 노동조합 유무
안전보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 전담 부서 현황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외부 위탁 여부·관리감독자 수 • KOSHA-MS/ISO45001 인증 여부 • 산업안전/보건 전담 직원 현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유해위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 요소별 위험성평가 여부 • 위험성평가 주체, 근로자 참여 여부, 평가 노력 정도 •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 •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심각도, 관리노력 정도
사업체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의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 정도 •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외부위탁 비율, 교육방법별 비율 •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사후관리조치 대상자 유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정도 •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결과에 따른 조치 노력 정도 • 협력업체 현황, 협력업체 간 관계 정도 • 원청업체 현황, 원청업체 간 관계 정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기간별 산업재해 건 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업무 중 어려운 점 •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도움 받고 싶은 전문서비스 영역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고용노동부 감독 여부 • 고용노동부 감독의 재해 예방 도움 정도 •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제공 및 지원 수혜 여부 • 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제공 및 지원의 재해 예방 도움 정도 • 중대재해처벌법 인지 정도, 실질적인 도움 정도 • 코로나-19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정도 • 기타 건의사항
응답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기본사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등) • 응답자 정보(직급, 부서)

(2) 작업환경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1991년 수립한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1993년부터 전국의 25개 제조업과 19종의 비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현황,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유해 작업환경요인 등 작업 환경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5년 주기로 수집해왔다(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2019).

2024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3종 조사 개편 방향에 따라 여러 차원에서 기존 조사와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제조업 및 일부 비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총 180,000개 사업장을 조사한 반면, 제7차 조사에서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모두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조사 내용이다. 기존 조사에서 화학물질 취급 현황,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유해 작업환경요인 등 전통적인 위험 요인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제7차 조사에서는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을 포함한 보다 전반적인 위험유해요인과 아울러 다양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실태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변화되었다(조운호, 2023).

나) 조사 방법

2024년에 시행 중인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장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사업장(2024년 2월 1일 기준)을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 추출한 표본 20,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집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층화변인으로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업종은 제조업 내 25개의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사용하였고, 사업장 규모는 6개(1~4인, 5~9인, 10~49인, 50~99

인, 100~299인, 300인 이상)로 구분하였다.

조사 방법 측면에서 이번 제7차 조사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조사원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즉, 화학물질 취급 및 제조 그리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등의 조사하는 「작업환경 실태조사」의 특성상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없이는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사원의 자격을 1)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기업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취득자(산업위생, 산업안전, 화학관련, 기계관련) 등으로 제한하였다.

다) 조사 내용

2019년에 실시된 제6차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대부분의 문항이 화학물질의 취급 및 제조, 기계기구 및 설비, 소음, 진동, 분진 발생 작업 현황 등 물리, 화학적 위험유해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요인 등 보다 다양한 위험유해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조윤희 등, 2023).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은 표 III-2와 같다.

〈표 Ⅲ-2〉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사업장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생산품 • 전기계약용량 • 직종별(사무직, 생산직) 현재 근로자 수(전체, 만 55세 이상, 외국인, 여성, 장애인) 및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 초과/교대/야간근무 및 근무자 비율 • 교대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대 고정 여부
안전보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 전담 부서 현황 • 산업안전/산업보건 전담 직원 현황 •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 직원 현황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 안전/보건관리자 전임/겸직/위탁 여부 • 전체 업무 중 안전보건 업무 비중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관리감독자 수 • 관리감독자 평가
유해위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인지 및 실시 여부 •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근로자 참여 여부, 결과 공유 여부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이행 정도 • 직무 스트레스 요인별 해당 여부, 심각도, 평가 실시 여부, 기타 조치 시행 여부 • 작업환경 현황(물리적 유해 요인, 계절별 기후로 인한 폭염·한파, 분진, 화학적 요인, 밀폐공간,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 요인) • 화학물질 취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물질의 종류, 연간 사용량, MSDS 번호, 구성 화학물질명, CAS 번호, 함유량, 사용용도 및 공정, 해당공정 근로자수 등) - 제조물질의 상품명, 연간 생산량, MSDS 번호, 구성 화학물질명, CAS번호, 함유량 • 산업용 세척 작업 유무, 세척제 종류 및 계열(수계, 준수계, 용제계 등), 작업방식, 월 평균 세척제 취급량 • 기계기구 및 설비 현황
사업체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 현황, 협력업체 간 관계 정도 • 원청업체 현황, 원청업체 간 관계 정도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 위생 및 복지시설 현황 • 사업체의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 정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내용
응답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기본정보(소속 부서, 직위)

(3) 근로환경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근로환경 실태조사」는 2006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3차 조사(2011년)부터 표본을 5만 가구로 확대하고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노동환경을 조사하여 산재예방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인간공학적, 심리사회적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수준, 근로시간, 노동강도, 업무 자율성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 조사 방법

모집단은 만 15세 이상 취업자이다. '취업자'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로 정의하였다. 표본은 50,000명으로, 가구를 방문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2020년 제6차 조사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조사 방식을 확대하여 종이설문지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였다.

다)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취업자 특성(종사상 지위 등), 노동강도,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폭력/차별, 건강상태, 위험 요인 노출정도 등 13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사는 유럽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s, EU-OSHA)와 유사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유럽 35개국의 노동환경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외국 사업체 대상 안전보건 조사

(1) EU 「ESENER」

가) 조사 개요

「ESENER」 즉,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ESENER)」는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이 2009년부터 5년 주기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ENER」는 유럽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주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 전체와 각 유럽 국가의 관련 정책 입안 시 기초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Howard et al., 2022).

나) 조사 방법

가장 최근 실시된 「ESENER」는 2019년에 실시된 3차 조사이다. 「ESENER」 방법론 보고서(2020)에 따르면, 3차 「ESENER」의 모집단은 유럽 연합 회원국 27개와 아이슬란드, 북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스위스, 영국을 포함한 33개국의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업종의 사업장(establishment)이다. 여기서 사업장이란 단일 고용주가 관리하는 단일 사업장(예: 은행의 단일 지점, 자동차 공장 1곳, 학교)을 의미한다.

표본은 층화(stratification)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추출되었는데,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사업장 규모 4개 집단(5-9; 10-49; 50-249; 250명 이상)과 산업 8개 집단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건설업, 폐기물 관리, 수도 및 전기 공급; 3) 제조업; 4) 무역, 수송, 음식/숙박 및 레크레이션 활동; 5) IT, 금융, 부동산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6) 공공 행정; 7) 교육; 8) 건강 및 사회복지활동을 바탕으로 한 32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참여 표본 수는 45,420개의 사업장이었으며, 국가에 따라 표본 수는 최소 453개(말타)부터 최대 2,264개(독일) 사업장이었다.

설문조사는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ing), 즉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응답을 받는 방법과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응답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사업장 내에서의 직책이나 역할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의 안전과 보건 이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협조율은 국가에 따라 6%(슬로바키아)에서 85%(북 마케도니아)로 나타났다.

조사표는 1차,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1) 사전인지조사(cognitive pre-test), 2) 번역 평가, 3) 시범조사(pilot test)를 통해 개발되었다. 사전인지조사에서는 3개국의 36개 사업장 응답자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응답자들이 문항이 명확하다고 인식하는지, 설문항을 원래 의도대로 이해하는지, 각 문항이 적절하다고 인식되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시범조사는 전체 33개 참여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당 최소 30개의 사업장에서 본조사와 동일한 방식(CATI & CAWI)으로 실시되었다.

다) 조사 내용

3차 「ESENER」의 주요 조사 내용은 사업장의 전반적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 위험 요인 및 대응 방안,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등이다.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와 유사한 설문항을 사용했지만, 신기술(digitalization), 산업 안전보건, 안전보건대표자 선임, 안전보건 관련 외부 서비스에 대한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위험 요인은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며, 각 요인에 대한 사업장의 대응 방안도 조사되었다. 표 III-3에는 3차 「ESENER」에서 조사 내용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으며, 표 III-4에는 조사에 포함된 위험 요인 항목을 제시한다 (3차「ESENER」 전체 조사표는 이선희 등(2023)을 참고할 것).

〈표 III-3〉 ESENER 주요 조사 내용

범주	내용
1. 응답자 접촉 및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컨택 및 대상 조건 확인 • 조직 기초 정보 (직원 수, 산업, 설립연도 등)
2. 전반적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련 외부 서비스 이용 현황 • 노동감독관 방문 경험 • 안전보건정책 관리 현황 • 보건활동 (영양 정보 제공, 운동 지원 등) • 안전보건 교육 실태 • 직무상 사고, 결근 추세
3. 위험요인 및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위험요인 •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 신기술 사용 여부 및 안전보건 영향 (작업강도, 일-사생활 경계 등) • 각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 안전보건 활동의 주 동인 및 고충
4. 위험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미실시 이유 • 평가 주체 및 참여자 • 평가 대상 (화학물질, 자세 등) • 평가 범위 (사업장 외부 작업 등) • 위험성 평가 후 조치 • 그 외 안전보건 위험요인 확인 방법
5. 근로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대표 유형 (노조, 안전보건위원회 등) • 안전보건 대표 선정 방법 • 안전보건 대표 활동 및 회사 지원
6. 국가별 특별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장애인 및 고령근로자 고용정책, 어린 근로자 위험 관리 • 아일랜드: 인체공학적 위험관리, 인증
7. 배경정보 및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경제 상황 • 추가조사 참여 의지

〈표 III-4〉 3차 ESENER 위험요인

요인	내용
전통적인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행동으로 인한 위험 • 반복 손/ 팔 동작으로 인한 위험 • 장기간 앉아 있는 자세로 인한 위험 • 피로하거나 고통스러운 자세로 인한 위험 • 큰 소음으로 인한 위험 • 열, 추위, 또는 외풍 문제로 인한 위험 • 기계나 공구 사용으로 인한 사고위험 • 차량 사용 중 사고위험 (출, 퇴근 제외) • 액체, 연기, 먼지 등 화학, 생물학적 물질로 인한 위험 •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으로 인한 위험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압박 • 조직 내 소통 또는 협력 부족 • 실직에 대한 두려움 • 어려운 고객, 환자, 학생 등을 대하는 것 • 장시간 또는 불규칙한 근무시간 • (특정 국가만) 위협, 학대 또는 폭행 • (특정 국가만) 괴롭힘 또는 따돌림 • (특정 국가만) 성희롱
디지털화 관련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컴퓨터 •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또는 기타 모바일 장치 • 근로자와 상호작용하는 로봇 • 작업의 내용이나 속도를 결정하는 기계, 시스템 또는 컴퓨터 • 근로자 수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계, 시스템 또는 컴퓨터 • 스마트워치, 데이터 안경, 기타 (내장) 센서 등의 웨어러블 장치

(2) 독일 「GDA 사업체 조사」

가) 조사 개요

독일 「GDA 사업체 조사」는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기관의 연합체인 ‘연합 산업안전보건 전략’(Joint Germ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rategy, Gemeinsame Deutschutz Strategy, GDA)의 성과를 측

정하기 위해 실시한 「GDA 사업체 및 근로자 조사」의 일부이다. GDA는 산업 안전보건 관리의 3대 주체는 1) 독일 연방 정부, 2) 주 정부, 그리고 3) 사업체 및 공공부문 사고를 담당하는 보험기관들의 연합체로서, 각 주체의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다. GDA는 1기(2008~2012), 2기(2013~2018)를 거쳐, 현재는 3기(2019~2024)에 접어들었으며, 1기와 2기의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각각 2011년과 2015년에 사업체와 근로자 대상의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 방법

2차 「GDA 사업체 및 근로자 조사」는 2015년에 실시되었다. 사업체 조사의 모집단은 NACE(Nomenclature of Economic Activities) 2판의 1~96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직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표본은 사업체 크기(1~9명; 10~49명; 50~249명; 250명 이상)와 연방 주 16개 집단의 매트릭스인 64개 층화를 활용한 층화표집법을 사용하여 추출되었다. 최종 참여 표본 수는 6,500개 사업장이었으며, 협조율은 15.4%였다. 응답 대상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및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50인 이상 사업체)였다. 설문조사는 CATI를 활용해 전화로 실시되었다.

근로자 조사의 모집단은 15세 이상의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급 근로자였으며, 표본 선정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층화 표집으로 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의 구성원 중 요건에 맞는 구성원을 무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최종 참여 표본 수는 5,000명이었으며, 협조율은 33.8%였다.

다) 조사 내용

사업체 조사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전반적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 위험성평가, 외부 감독관, 근로자 참여 등이다. 근로자 조사의 주요 내용도 전반적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GDA 사업체 및 근로자 조사」는 전통적 위험요인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하며, 주요 산업안전보건 지표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체 조사와 근로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룬다. 정부 당국의 안전보건 감독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체 조사에서만 질문하고, 개인의 안전보건 행동에 대해서는 근로자 조사에만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III-5는 2차「GDA 사업체 조사」의 조사 내용을 범주화한 것이며, 표 III-6은 이 조사에 포함된 위험유해요인을 정리한 것이다(2차 「GDA 사업체 조사」, 3차「ESENER」 전체 조사표는 이선희 등(2023)을 참고할 것).

〈표 III-5〉 GDA 주요 조사 내용: 사업체 조사

범주	내용
1.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소개 및 응답자 조건 확인 • 조직 기초 정보 (본사/지점, 직원 수, 업종, 공공부문 여부 등) • 고용형태 (파견/외부 근로자 등) • 직무스트레스 및 위험요소별 영향 정도
2. 산업안전보건 규정 지식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이해도와 규정 평가 (이해하기 쉬운지, 너무 세부적인지 등) • 영역별 규정 적용의 어려움
3. 안전보건 시스템 및 위험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 인력 활용 실태 • 위험성평가 (실시주기, 실시년도, 평가 대상, 고려된 위험요소, 개선 조치, 미실시 이유 등)
4. 안전보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시험 (입사, 업무배치, 신장비 도입 등) • 파견직 및 계약업체 직원 교육 여부 • 교육 미실시 이유 (시간 부족, 낮은 위험수준, 지원 부족 등)
5. 안전보건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문화 증진 활동 • 근로자 건강 노력 (병가 분석, 중독 예방, 사내 체력활동, 건강관련 설문조사 등)
6. 안전보건 감독 서비스 및 GDA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감독 방문 시기, 목적, 논의 내용 • 외부 감독 서비스에 대한 평가 • GDA 활동 인지 여부
7. 직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협의회, 산업안전위원회 • 관리자 안전보건 교육
8.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회사 노력 자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전반적 안전보건 노력 평가 • 영역별 (교육, 위험성평가, 작업장 설계 등) 산업안전보건 노력 추이 및 이유 • 안전보건 노력 성과 vs. 비용
9. 기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건수 추이 • 사업체의 경제상황

〈표 Ⅲ-6〉 GDA 사업체 및 근로자 조사 위험요인 목록

요인	내용
전통적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운동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 작업환경 (소음, 열, 추위 또는 먼지 등)에 의한 스트레스 • 물리적 하중 또는 어색한 자세 • 기계 및 작업장비 취급에 따른 위험 • 유해물질 또는 생물학적 물질의 취급으로 인한 위험
심리적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집단 (불만 고객, 환자 등) 대응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 • 시간 또는 성과에 대한 높은 압력에 의한 스트레스 • 사회적 관계 (동료 갈등, 경영문화 등)로 인한 스트레스

(3) 일본「노동안전위생조사」

가) 조사 개요

「노동안전위생조사」는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1947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과 1972년에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 및 작업환경측정법 등을 기반으로 1966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체 대상의 안전보건 조사이다. 「노동안전위생조사」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체 대상 조사와 아울러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에 소속된 개인 근로자 일부를 표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나) 조사 방법

후생노동성의 조사개요 자료(2023)에 따르면, 2022년 「노동안전위생조사」의 모집단은 일본 전국의 일본표준산업분류(2011년 10월 개정)에 속하는 17개 업종의 민영 사업장 중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17개 업종은 (1) 농업, 임업(임업만 포함), 2) 광업, 채석업, 자갈 채취업, 3) 건설업, 4) 제조업, 5)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6) 정보통신업, 7) 운수업, 우편업, 8) 도매업, 소매업, 9) 금융업, 보험업, 10)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11)

학술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 12)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 13) 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14) 교육, 학습 지원업, 15) 의료, 복지, 16) 복합 서비스업, 17) 서비스업(그 밖에 분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표본은 17개 산업군 및 사업장 규모별로 층화 표집방법으로 추출하였고, 2022년 조사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표본 조사 대상 수는 14,260, 유효 응답 수 8,144로 유효 응답률은 약 57.1%로 나타났다. 조사의 응답자는 ‘각 사업장의 노동안전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조사는 우편을 이용한 종이설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우편 방식은 후생노동성이 직접 조사표를 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송부하면 사업장에서 응답을 기입한 후 다시 후생노동성에 우편으로 발송하며, 온라인 조사는 정부 통계 공동의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다) 조사 내용

「노동안전위생조사」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재해 예방활동, 위험요인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2022년 조사에서는 ‘작업장 감염 방지 대책’과 ‘안전 위생 관리 체계’가 포함된 반면, 2023년 조사에서는 이 범주가 제외되고 ‘허리통증 예방 대책’과 ‘작업장 열사병 예방 대책’ 범주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2022년 조사의 ‘노동재해 방지 대책’ 범주에는 전도 재해, 트럭을 이용한 적재, 적하 작업 관련 재해에 대해 조사한 반면, 2023년 해당 범주에는 비정규직(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 재해 방지 대책 및 업종별(육상 화물 운송 사업, 건설업, 제조업, 임업) 노동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는 등 동일한 하위범주 아래 해마다 새로운 문항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표 III-7은 「노동안전위생조사」의 조사 내용을 범주화한 것이다(2022년과 2023년 전체 조사표는 이선희 등(2023)을 참고할 것).

〈표 III-7〉 2023년 노동안전위생조사(사업체) 주요 조사 내용

범주	내용
1.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전체 상용근로자 수 • 고용형태별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수, 파견 근로자) 근로자 수
2.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휴직·퇴직자 수 • 정신건강 대책 실시 여부 • 스트레스 점검 실시, 결과 분석, 및 활용 실태
3. 산업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검진 실시 및 조치 현황 • 치과 검진 현황 • 질병 치료와 일 양립 지원 대응 및 관련 고충
4. 허리통증 예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통증 업무 관리* • 예방 교육*
5. 노동재해 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도 재해 방지 대책 •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고령 근로자 노동재해 방지 대책* • 외국인 근로자 노동재해 방지 대책* • 업종별 (육상 화물 운송 사업, 건설업, 제조업, 임업) 노동재해 방지 대책*
6. 직장의 열사병 예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작업 현황* • 더위 지수 파악* • 열사병 예방 대책*
7. 화학물질의 노출 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취급 여부 •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 실시 여부 및 현황 • 화학물질 노출 저감화 조치* • 화학물질 관리

* 2023년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범주 혹은 항목임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이슈

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 발표한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산재 사망 감축 및 사업장별 안전보건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5개의 추진 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다(표 III-8 참고).

〈표 III-8〉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과제
1.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1) 의무 주체와 보호대상 확대 2)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3) 화학물질 관리기준의 정립 및 실행
2. 산재 사망사고 감축	1) 주요 사고 사망 요인 집중 관리 2) 안전보건 주체별 역할 강화 3)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장 지도/감독
3.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	1) 업무상 질병 발생 단계별 관리 강화 2) 유해요인별 사각지대 해소
4.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1)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성 제고 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
5.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	1) 안전보건 정보 등에 관한 공유와 참여 확대 2) 안전보건 교육 실효성 제고 3) 안전보건 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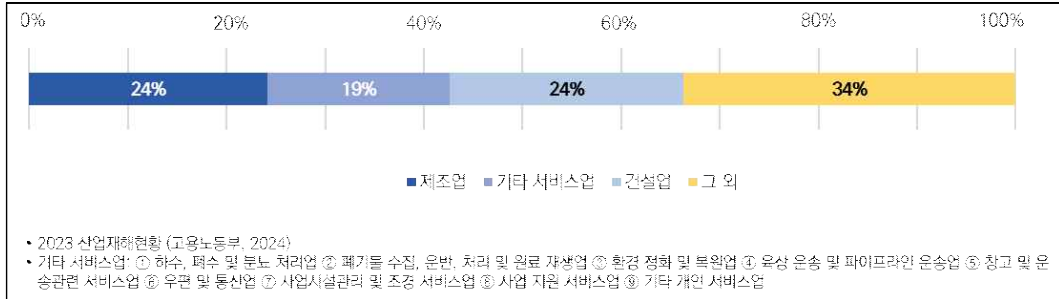
이러한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주는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조사 범위 측면에서 5개년 계획에서 소규모 사

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조사 대상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 내용 측면에서 5개년 계획이 강조하고 있는 1)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2)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원하청의 협력, 3)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 4) 근로자 참여, 5) 안전보건 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의 실천 과제를 고려하여 이러한 항목과 관련된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산업재해 발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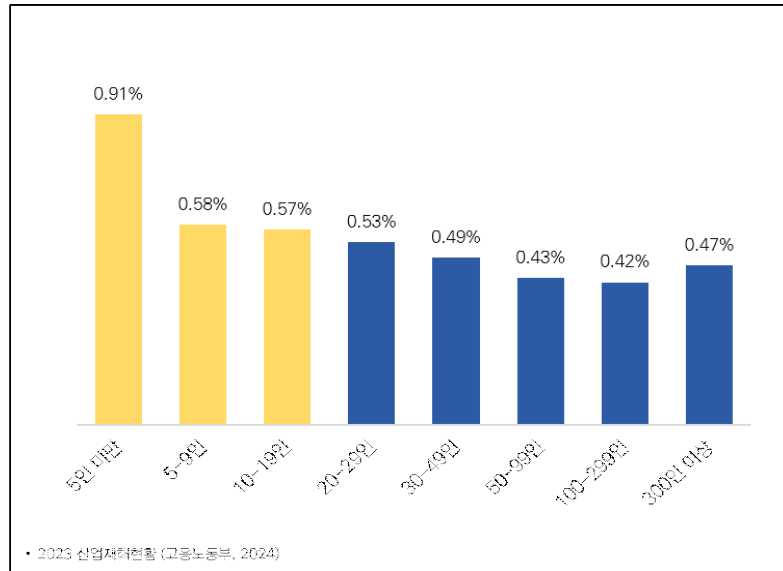
제11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모집단 정의 시 참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 산업재해현황(고용노동부, 2024)을 바탕으로 기존 표집 방법의 총화로 활용한 1) 업종과 2)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실태를 살펴보았다. 통계 산출 대상 재해는 2023년 동안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이 승인된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사망재해 포함)를 포함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6,796명으로 재해율은 0.66%로 나타났다.

우선, 업종별 산업재해 실태는 업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제10차 조사에 포함된 1) 제조업, 2) 기타 서비스업, 3) 건설업, 그리고 4) 그 외 업종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그림 III-1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23년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 중 24%가 제조업, 19%가 기타 서비스업, 24%가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총 재해자의 약 66%가 기존 제10차 조사의 대상 업종인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동시에 총 재해자의 34%가 기존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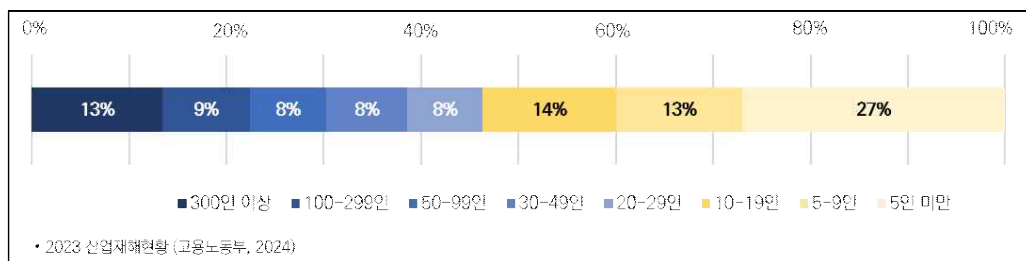


[그림 III-1] 2023년 업종별 재해자 비율

사업체 규모별 산업재해 비율은 규모의 기준이 다른 건설업과 그 외 업종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비건설업은 제10차 조사에서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업의 모집단이 상용 근로자 '20인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1) '5인 미만', 2) '5-19인', 3) '2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III-2에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았다. 특히, 기존 제10차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은 '5인 미만'(0.91%), '5-9인'(0.58%), '10-19인'(0.57%)의 재해율이 높았다. 한편, 그림 III-3은 전체 산업재해자수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을 보여주는데, 제10차 조사에 포함된 '20인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5인 미만'이 27%, '5-9인'이 13%, '10-19인'이 14%로 총 5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제11차 조사에서 '5인 이상'으로 모집단을 확대하면, 전체 재해자의 약 73%가 속하는 업종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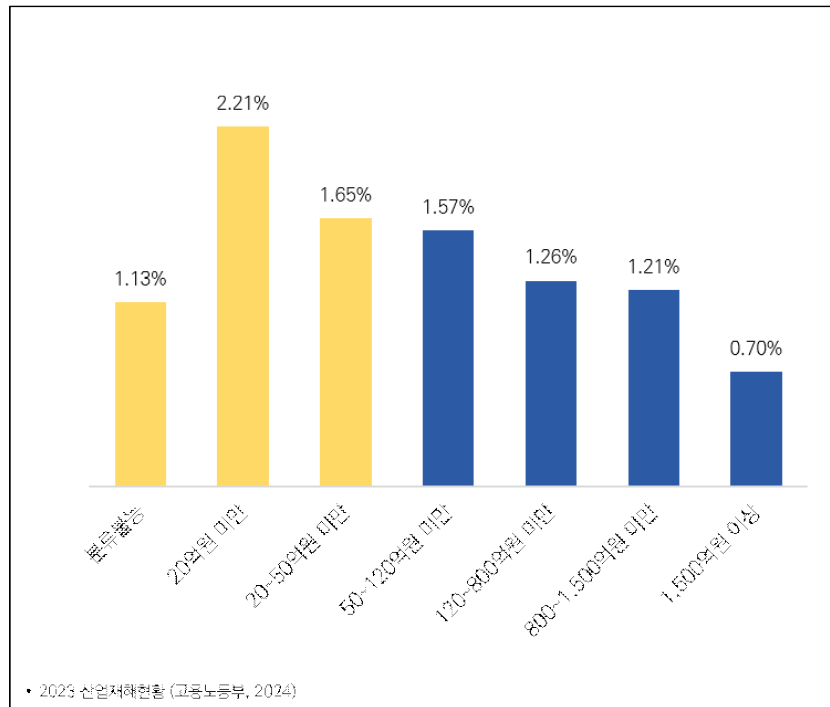
[그림 III-2] 2023년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건설업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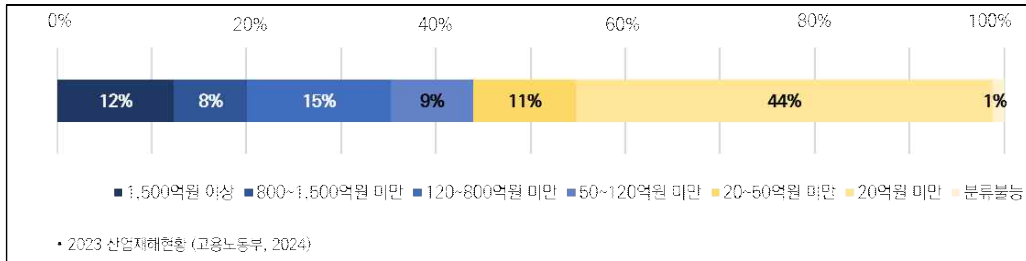
[그림 III-3] 2023년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 비율: 건설업 외

건설업의 경우는 제10차 조사의 모집단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1) 20억원 미만, 2) 20-50억원 미만, 3) 50억-120억원 미만, 4) 120-800억원 미만, 5) 800-1,500억원 미만, 6) 1,500억원 이상, 7) 분류 불능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건설업도 비건설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기존 제10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인 ‘20억원 미만’

사업장(2.21%)과 '20-50억원 미만'(1.65%) 사업장의 재해율이 그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높았다(그림 III-4 참고). 또한, 전체 건설업 재해자 수 중, 기존 제10차 조사의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그림 III-4 참고). 한편, '20억원 이상'에 속하는 비율은 11%로 나타나, 건설업 모집단을 '2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포함 비중이 55%로 확대된다.



[그림 III-4] 2023년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건설업



[그림 III-5] 2023년 공사금액별 산업재해자 비율: 건설업

2. 전문가 의견 수렴

다음은 학계 전문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1차 및 2차 면담 결과를 주제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1) 전반적 개선방향

- 모집단 정의
 - 모집단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 외 업종은 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항 내용
 - 조사 대상 및 업종의 확대에 따라 기존 설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 필요
 - 필요 정보 중 행정자료로 수집가능한 것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작업환경조사」 조사 내용 참고하고, 「작업환경조사」에서 조사하

는 내용은 가능한 한 문항의 일관성 유지 필요

2) 사업체 일반 특성

-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 필요
- 사업체의 ‘경영상태’가 안전보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문항을 추가 필요
- 안전보건 예산 정보가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우므로 ‘안전보건관련 지출액 변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
- 건설업 대상 설문에서 ‘공사 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공정분류’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등 참고

3) 위험 요인

-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 또는 ‘직무스트레스’
 - 해당 내용에 대한 문항 확대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따른 위험 요인(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고용불안정,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을 포함
 -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신체적 폭력’, ‘성폭력·성희롱’에 대하여 조직 외부인과 내부 직원에 따라 구분하여 질문
- 신 위험 요인
 -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추가
 - ‘스마트 기술’에 대한 문항은 추가 필요하지만, 아직 스마트 기술의 유형 구분 및 정의(예: 로봇)에 대한 동의된 틀이 존재하지 않아 추후 연구 수행 후 다음 버전에서 포함하는 것이 적절
- 취약 집단(예: 교대 근무자, 장시간 노동자) 등의 정보 필요

- ‘재택/원격 근무’, ‘선택적 근무’, ‘탄력 근무’ 문항의 조사 목적 확인 필요
- 위험 요인에 대한 문항 추가 제안
 - 직무요구(장시간 집중, 동시에 여러 가지 일 등)
 - 조직체계(인사제도 공정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
 - 과압(반도체 공장 클린룸 등)
 - 사다리 관련 위험(서비스업)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태

(1) 경영진 안전의지

- 건설업은 해당 현장이 지사, 공장으로 본사에 결정권이 있는 경우 본사의 경영진을 경영진으로 정의

(2)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안전보건체계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함
 - 제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이 있으나, 비제조업은 제외 사항이 많고 그 내용이 업종에 따라 다름
- 건설업
 - 안전보건 담당자의 정규직 여부 중요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및 인원수 문항은 건설업에는 해당 없음
- 안전 인증 문항(KOSHA-MS, ISO45001)은 행정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삭제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전담 조직에 대한 문항 추가

(3) 안전규정 및 절차

- 소규모 사업장 고려하여 안전 규정 및 절차에 관한 정기적 정보제공 여부 문항 추가 필요

(4) 안전시설과 장비

- 시설, 장비, 보호구에 개인 특성(성별, 체력 등)이 고려되었는지 조사 필요

(5) 안전보건활동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문항 추가 필요
 - 인지 여부, 실시 여부, 미실시 이유, 실시 주기, 참여자, 근로자 참여 정도, 후속조치, 문서화, 유용성 지각 등에 대해 질문 추가
 - 위험성평가에서의 근로자 '참여' 강조 필요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 해당 제도가 의도하는 대로 실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 필요
 - 기한을 특정년도 보다는 '최근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
- TBM 문항을 추가하되, 제조업 외 업종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쉽게 기술
- 사업장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노력에 대한 질문 필요하며,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됨
 - 직무스트레스 검사*
 - 직무스트레스 예방 또는 대처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 신고 제도*
 - 심리상담 지원

-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 재택/원격 근무제
- 선택적 근로 시간제
- 직무스트레스 발생 시 휴게시간 혹은 휴가 부여
-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위험성평가
- 단, * 표시한 항목은 건설업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

(6) 안전보건교육 및 활용

- 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 확인 필요
 - 교육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질문 추가
 - 교육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구분 참조(근로자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참조(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예방과 보상 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태 파악 필요
- 자체, 위탁 교육 비율 문항과 온라인, 집체, 실습, 그 외 교육 비율 정보는 활용가능성이 낮으므로 삭제

(7) 근로자 참여

- 위험 요인 신고 또는 안전 관련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여부 확인 필요
- 다양한 근로자 참여 제도 및 활동에 관한 질문 추가 (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건설업의 경우,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120억 이상 현장만 해당) 운영 여부 질문
- 안전보건에 대한 노사관계 질문 추가

(8) 관리감독자

- 소규모 사업장의 응답자는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어 문항 수정 필요
- 기존 문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만 질문하나, 관리감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선임하므로 모두에게 질문 가능

(9) 현장 실천

-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잘 이행하는지'를 묻는 질문 필요
- 작업거부권 문항 추가 필요
- 산업재해 발생 시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대한 인지 여부 문항 추가

5) 원하청 안전관리

- 원청, 하청 여부 질문
 - 하청업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하청업체는 사업체가 아닌 사업장으로 장소적 개념으로 묻는 것이 적절함(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소속 현장을 묻는 문항에서 건설업의 경우, 일부 공정을 직접 시

공하는 경우 '원청'과 '자체공사'에 동시 해당될 수 있음 주의

- 원청의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활동
 - 원청 활동 항목 질문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산재예방조치), 제65조(정보제공), 제66조(시정조치)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 추가: 원하청 사업주 회의(도급 안전보건협의체), 원하청 노사 회의(건설 노사협의체, 공공 안전근로협의체),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 원청의 순회점검, 위험성평가 실시지원 및 검토, 안전보건교육 지원, 안전보건자료 및 정보 제공, 원청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 요구
 - 건설업의 경우 '협의체(20-120억원 미만)', '노사협의체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120억원 이상)', '위험성평가 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으로 구성 가능
- 하청업체에 추가 질문 사항 제안
 - 원청과 계약 시 원청에서 하청업체가 근로자가 작업 시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는지 여부
 - 원청과 계약 시 원청에서 하청업체가 도급업무를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지 여부
 - 적격수급인 확인의무, 예산반영의무, 충분한 작업기간 산정의무(건설 등) 반영 필요
 - 협의체 등 회의,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지(회의록 및 교육일지에 서명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미이행하는 사례 등 파악 필요)
 - 건설업의 경우, 현장 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안전관리비를 책정했는지 여부 질문 (원 공사비를 줄여 서류상 안전관리비가 책정된 경우도 '아니오'로 답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필요)

6) 안전결과

- 안전행동은 「근로환경조사」에서 조사될 항목으로 판단하여 삭제함
- 재해 정보는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삭제

7) 외부지원 및 규제

-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항목 질문 응답지에 ‘방호장치 설치 등 재정지원’ 추가 및 ‘위험성평가’ 항목을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으로 수정 제안
-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령상의 의무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고 싶은지 질문 추가 제안
- 건설업 대상에서 ‘기술지도’에 대한 문항(기술지도가 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 되는지, 기술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지) 추가
- 표본 수를 고려하여 주관식 응답 분석이 어려우므로 주관식 문항(정부에 바라는 점) 삭제

3. 개선 방향

문헌조사 및 1, 2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의 산업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실태 지표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우리나라 사업장에 존재하는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및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노력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모집단과 표본 설계

3중 조사의 개편 방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표본 수를 늘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조사 대상, 즉, 모집단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물론, 가능한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표본 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할수록 모수치 추정의 신뢰도는 낮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사업장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제10차 실태조사는 상용근로자 '20인 이상'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재해율, 전체 재해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1차 조사에서 소규모 사업장으로 모집단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기존 조사에서는 20인 이상),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기존 조사에서는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표본설계 시 5인 이상과 10인 이상의 두 개 안을 모두 고려하고, 각 구간은 다음과 같이 5개로 설정하였다. 1) 건설 외: ① 5~19 (또는 10~19인) ② 20~49인 ③ 50~99인 ④ 100~299인 ⑤ 300인 이상, 2) 건설업: ① 20~50억원 미만 ② 50~120억원 미만 ③ 120~800억원 미만 ④ 800~1,500억원

미만 ⑤ 1,500억원 이상.

다음으로, 업종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10차 실태조사는 1) 제조업, 2) 기타 서비스업(①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②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③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⑤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⑥ 우편 및 통신업 ⑦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⑧ 사업 지원 서비스업 ⑨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3)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업종은 상대적으로 재해율 높았기 때문에 선정되었지만, 다수의 업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전 업종으로 모집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총 21개의 대분류 업종 중,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활동'과 'U.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총 19개 대분류 업종으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대분류 업종에 속한 중분류 업종의 특성과 이에 따른 재해율의 차이가 존재하여 제10차 실태조사의 표본 설계 시 층화를 대분류가 아니라 중분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만약 19개 대분류 업종으로 모집단을 확대한다면, 총 75개의 중분류 업종¹⁾과 사업체 규모의 층화를 고려하면, 총 375(75x5)개라는 엄청난 수의 층화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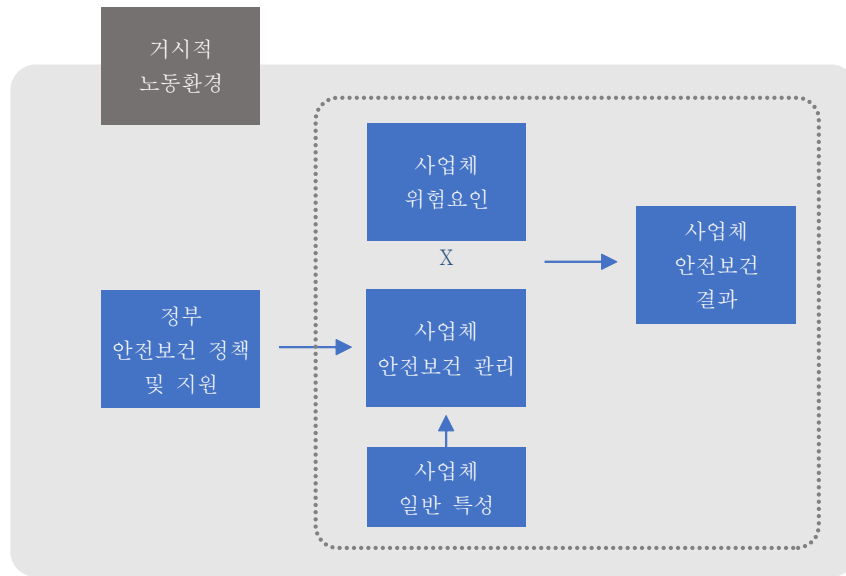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모집단에서 제조업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가 제조업 20,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기존과 달리,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문항을 대거 포함하였다. 따라서, 제 11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T와 U 대분류를 제외한 대분류 업종을 총 74개의 중분류(건설업 2개 포함)로 분류하는데, 본 조사에서 건설업은 표준산업 중분류가 아닌 '건축(건축건설공사)', '토목'(도로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기타'(기계장치공사, 기타 건설공사, 건설기계관리사업)의 3개로 분류하여, 총 75개가 됨

사」에서 제조업을 포함하지 않아도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로 제조업의 안전보건 실태를 알 수 있다. 만약, 제11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 제조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업종과 규모의 양 측면에서 모집단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설문 내용 개선 방향

그림 III-6은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포함할 다양한 설문 내용을 범주화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다. 이 틀에서는 산업 안전보건에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1) 거시적 노동환경, 2) 정부의 산업 안전보건 정책 및 지원, 그리고 사업체의 3) 일반 특성, 4) 위험 요인, 5) 안전보건관리, 6) 안전보건 결과 등 총 6개 범주로 나누었다. 단, 본 조사의 응답자가 사업체의 안전보건담당자임을 고려하여, ‘거시적 노동환경’은 본 조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및 지원’ 범주 역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는 아니지만, 본 조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산업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사업체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림 III-6]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주요 개념 간 관계

위 틀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 개선 방향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체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 ‘노동자 참여’, ‘새로운 안전보건 위험요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작동성을 검증한다.

둘째, 소규모 사업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문항을 수정 혹은 새 문항을 추가한다.

셋째, 다양한 업종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문항을 수정 혹은 새 문항을 추가한다.

넷째, 필요한 산업 안전보건 자료 중, 행정자료 및 관련 조사(「근로환경조사」,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고려하여 사업체 대상 조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조사에 포함할 5개 범주

별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해 1) 행정자료 이용 가능성, 2) 사업체 대상 실태조사와 3) 「근로환경조사」에서 해당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을 판단해보았다(표 Ⅲ-9 참조).

〈표 Ⅲ-9〉 조사 항목별 정보원

주요 요인	세부 항목	행정자료	사업체 대상 실태조사	근로환경 조사
정부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인식	사업장 애로		√	
	안전보건 서비스 수요		√	
	정부 지원 평가		√	
	관련 법에 대한 인식		√	
사업체 일반특성	종사자 구성	일부	√	
	경영현황	일부	√	
위험요인	전통적 위험요인		√	√
	새로운 위험요인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경영진 안전의지		√	√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일부	√	√
	안전규정 및 절차		√	√
	안전시설과 장비		√	√
	안전보건활동	일부	√	√
	안전보건교육		√	√
	근로자 참여			
	관리감독자		√	√
	현장실천		√	√
	원하청 관계		√	
안전행동 및 재해 결과	안전행동			√
	재해결과	√		√

4. 문항 개발 및 예비조사

1) 예비 문항 개발

위에서 기술한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조사표에 포함할 내용을 표 Ⅲ-10와 같이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차 예비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2차 예비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표 Ⅲ-10〉 예비 설문지 문항 내용

조사영역	문항내용
I. 사업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수 (전체, 내/외국인, 남/여, 상용/기타, 만 55세 이상) • 최근 3년간 경영 상황 • 전년 대비 안전보건 투자액 변화
II.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형태 (주 52시간 초과 및 야간 근로 직원) • 위험요인 유무 (직무 스트레스/신체적 부담/작업 환경/생화학 물질/기계, 전기, 기타)
III.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 안전의지 • 안전보건관리 운영 조직 (전담 부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 안전 규정 및 절차 (유무, 정기적 고지, 실질적 도움) • 안전시설과 장비 (유무, 개인 특성 고려 여부) • 위험성 평가 (인지/실시 여부, 미실시 이유, 실시 주기, 참여 대상, 후속조치, 문서 작성, 실질적 도움 등) • 작업환경측정 (인지 여부, 후속조치) •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사후 관리 등) •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시행한 활동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교육 내용 등)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자료 제공, 표지 부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참여 (근로차 참여 제도, 안전보건 소통 활동, 안전보건 관련 노사관계 등) • 관리감독자 (업무 이해, 지식 및 기술 보유, 업무 지원) • 현장실천 (정리정돈, 자발적 안전 개선, 작업중지권, 산업재해 조사표 등) • 원하청 관계 (협력업체 및 원청업체 현황 및 소통/지원 여부, 안전보건 관련 활동 등)
IV. 외부지원 및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어려운 점 • 도움받고 싶은 외부 전문 서비스 • 고용노동부 감독 여부 및 도움 정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 제공/지원 여부 및 도움 정도 • 법적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인지 여부, 선호하는 법적 의무 정보 제공 방식)

2) 예비조사 결과

설문항의 현장 작동성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2차 예비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21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11은 예비조사에서 도출한 개선 시사점을 정리한 내용을 제시한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고).

〈표 III-11〉 예비조사 면담 결과 시사점

문항 범주	시사점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원 가이드: 응답자가 안전 혹은 보건 전담인 경우, 본인 분야 외 질문은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안내 추가: 검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문 전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전반적 업무 질문

문항 범주	시사점
사업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수’ 정의 시 계약직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이라는 점 강조; ‘제외’ 항목 (‘특고를 제외한 자영업자’, ‘협력업체/도급업체’ 직원) 명기 • 야간근로자 수 문항: 야간근로의 정의를 문항 표 안에 제시; 전체 근로자 중 야간근로자 ‘%’ 또는 ‘인원수’ 중 하나를 작성하라는 점을 명시 • 최근 3년간 경영 상황 문항: 비영리 조직 고려하여 ‘매출, 영업이익, 집행 예산 등을 고려할 때’로 수정 • 안전보건 투자액 변화 문항: ‘안전과 건강’을 ‘안전과 보건’ 수정; ‘1인당 비용’ 문구 추가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인 ‘있음’에 대한 추가적 정의 제공 • 응답지 중 ‘모르겠음’ 삭제 • ‘차량에 의한 위험’은 ‘기계, 전기, 기타 위험요인’에서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 범주로로 이동 • 고온/저온 작업 환경 항목의 ‘실내’ 강조 • ‘차량에 의한 위험’을 ‘차량에 의한 위험(예: 충돌)’로 수정 • ‘전압, 감전에 의한 위험’을 ‘전압에 의한 위험(예: 감전, 화상)’으로 수정
안전보건 관리실태 : 1) 경영진 안전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 안전의지: 관찰가능한 행동 위주의 문항으로 수정
안전보건 관리실태 : 2) 안전보건관리 운영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구 수정 •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문항: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정의 제시; 지시문에서 ‘산업안전 업무’, ‘산업보건 업무’ 강조; 지시문에서 ‘전담’은 안전/보건 업무만 수행함을 명시 • 안전/보건관리자 문항: ‘전담이 아닌’ 직원의 안전/보건 업무 비중 질문 추가
안전보건 관리실태 : 3)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규정 및 절차’를 ‘안전보건규정과 절차’로 수정

문항 범주	시사점
안전보건 관리실태 : 4)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과 장비에 대한 예시 추가 필요
안전보건 관리실태 : 5) 안전보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에 대한 응답지를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표기하되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병기; 참여자 응답 항목에서 ‘관리감독자(관리자)’, ‘일반근로자(작업자)’로 건설업 고려하여 응답지 제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시기 예시(예: 툴박스미팅) 제시 • 작업환경측정: 지시문의 ‘건강’을 ‘보건’으로 수정 •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관리 대상이 C, D등급이라는 점을 지시문에 추가
안전보건 관리실태 : 6)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 유형: 지시문에서 ‘최근 1년 동안’ 강조; 응답지 중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비상탈출 등 대응 방법에 관한 교육’을 ‘비상대응훈련’으로 수정 • 외국인 근로자 문항: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무 질문 추가; 지시문에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구 추가; ‘안전보건 자료 제공’ 여부 문항 삭제;
안전보건 관리실태 : 7) 근로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참여 제도 및 활동 문항: 응답지에 ‘안전보건게시판’ 추가; ‘안전보건 관련 자율적 소모임’을 ‘안전보건 관련 소모임’으로 수정
안전보건 관리실태 : 9) 현장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중지권: 지시문에서 ‘근로자’ 강조
직무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스트레스 위험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잠재적 위험이 아니라 실제적 위험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지시문 수정 필요 • 직무스트레스 감소 노력: 건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거의 전무함. 단, 본사 소속 직원들은 적용 가능함
하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청 기업에 대한 평가 질문 건설업 지시문: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보건관리비’로 수정

문항 범주	시사점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 항목 문항 지시문에서 '현재 기성공정율 산출시점' 강조
외부지원 및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업무 어려움 문항: 비제조 업종 고려하여, '작업 일정 또는 생산 목표'를 '작업 일정, 생산 목표, 매출 또는 이익'으로 수정

3) 최종 검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예비 설문지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와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 대상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 전문가 5명(조사 연구원 2명, 실사 관리자 2명, 조사원 1명)에게 최종 검토를 받았다.

VI. 결론: 조사 시행방안 제안



IV. 결론: 조사 시행방안 제안

1. 최종 조사표

최종 조사표는 ‘일반 조사표’와 ‘건설업 조사표’로 구성하였는데, ‘일반 조사표’는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설문 개정 조사표(안)는 부록 2에 제시하였고, 문항별 참고 사항(예: 법규, 외국 설문항)을 부록 3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 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와의 비교내용은 부록 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IV-1은 최종 개정 조사표(안)의 1) 범주, 3) 문항 내용, 3)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대비 변경 내용, 그리고 4) 제7차 「작업환경실태조사」 문항과의 비교 정보를 제시한다.

‘일반 조사표’는 크게 여섯 개의 범주, 즉, A. 사업체 특성, B. 위험요인, C. 안전보건 관리실태, D. 직무스트레스, E. 하청 지원, F. 외부 지원 및 규제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C. 안전보건 관리실태 범주는 9개의 하위범주를 포함한다: 1) 경영진 안전의지, 2)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3)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 4)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5) 안전보건 활동, 6) 안전보건교육, 7) 근로자 참여, 8) 관리자, 9) 현장실천. 전체 문항수는 하위 문항을 포함하여 총 136개이다.

‘건설업 조사표’는 ‘일반 조사표’의 6개 범주에 ‘산업안전보건관련 투자’ 범주가 추가되었으나, 그 외 범주의 문항은 ‘일반 조사표’와 거의 동일하다. 단, ‘일반 조사표’ 문항 중 건설업에 적용되지 않는 4개 문항(예: 최근 3년간 경영 상황)을 제외하였고, 건설업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다(예: ‘사업장’ 대신 ‘현장’).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정 조사표(안)를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문항과 비교하면, 일반 조사표 기준으로 개정 조사표 문항 중 32%

가 제10차 조사 문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27%는 기존 문항의 문구 및 응답지를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41%는 기존 문항을 다른 문항으로 교체하거나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였다.

문항 수정의 예를 보면, 기존 '우리 회사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를 보건시설 등을 포함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장비,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문 14-1)로 수정하였다. 문항 교체의 예를 보면, 사전 조사에서 경영진의 안전의지를 안전에 대한 투자로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기존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에 우선순위를 둔다'와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를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보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문 6-2)로 수정하였다.

새로 추가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 사업체 특성에서 최근 3년간 경영 상황 및 안전보건 투자액 변화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둘째, C. 안전보건 관리실태 범주에서는 소규모 업체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고, 법적 요건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2) 안전보건 관리 운영 조직'에서는, 안전보건 전담부서가 없을 경우의 운영 조직의 특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예: 안전 업무 비중). '5) 안전보건활동'에서는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그리고 특수건강검진의 현장 작동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예: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 및 결과공유). '6) 안전보건교육'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예: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와 외국인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마찬가지로, '7) 근로자 참여'에서는 작업중지, '9) 현장 실천'에서는 위험작업 전 TBM 활동 등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셋째, D. 직무스트레스 범주는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대인 간 스트레스요인(예: 언어적, 신체적, 성적)을 조직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였고, 산업안전보

건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예: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 기계 조작 작업 등)을 포함하고, 다양한 직무스트레스 감소 노력(예: 직무스트레스 검사, 상담지원) 문항을 추가하였다.

넷째, E. 하청 지원 범주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지원 활동을 구체적 확인하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였다(예: 계약 시 안전보건 예산 반영 및 안전보건 역량 확인, 원청 기업의 안전한 작업기간 보장).

마지막으로, F. 외부지원 및 규제 범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현장의 인식(예: 적용상의 어려움, 소요 비용 등)을 확인하고, 선호하는 정보 제공 방식(예: 사업주 집체교육, 동영상 자료)에 대한 문항을 새로 추가하였다.

한편, 개정 조사표(안)와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의 문항을 비교한 결과, 개정 조사표(안)에서 조사되는 정보의 약 43%가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최종 조사표의 범주 및 문항 정보

문항 범주	문 번	문항	10차 조사	7차 작업 환경조사
A. 사업체 특성	1	근로자 수 (성별*외국인*상용/임시및일용) + 55세이상	문항 수정	I-3 장애인, 사무직/생 산직 구분
	2	최근 3년간 경영 상황(일반조사표만)	새로 추가	
	3	안전보건 투자액 변화(일반조사표만)	새로 추가	
	4	노동조합 유무(일반조사표만)	문항 유지	
B. 위험 요인	5A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요인 5개	문항 유지	II-6-1
	5B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 12개	문항 수정	II-1~2, 5
	5C	생/화학물질 관련 위험요인 5개	문항 유지	II-3~4
	5D	기계, 전기, 기타 위험요인 2개	문항 유지	

문항 범주	문 번	문항	10차 조사	7차 작업 환경조사
C. 안전보건 관리실태 1) 경영진 안전의지	6	경영진 안전의지: 1.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 강조 2. 안전보건에 적극적 투자	문항 수정(1) 문항 교체(2)	I-18
	7	1.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유무 2. 직원 수 3. 직급 4. 안전 전담 직원 수 5. 보건 전담 직원 수	문항 유지 정의 추가	I-8-1~4
2) 안전보건 관리 운영조직	8	(전담부서 없을 경우) 1) 산업안전보건 담당 직원 수 2) 업무 비중	문항 수정(1) 새로 추가(2)	I-8-5 I-8-6
	9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 여부 1. 선임 인원 수 2. 정규직 수 3. 전담 직원 수 4. 겸임 직원 입무 비중	문항 유지(1) 새로 추가(2~4)	I-9
	10	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 여부 1. 선임 인원 수 2. 정규직 수 3. 전담 직원 수 4. 겸임 직원 입무 비중	문항 유지(1) 새로 추가(2~4)	I-9
	1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수(일반조사표만)	문항 수정	I-10
3)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	12	문서화된 규정과 절차 유무	새로 추가	
	13	규정과 절차 1. 정기적 공지 2. 실질적 도움	문항 교체(1) 문항 수정(2)	I-18-12
4)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14	시설, 장비 충분히 구비	문항 수정	I-18-13

문항 범주	문 번	문항	10차 조사	7차 작업 환경조사
5) 안전보건 활동	15	위험성평가 인지도	새로 추가	
	16	최근 1년간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1. 위험성평가 실시 유형 2. 위험성평가 미실시 이유	문항 수정	I-13
	17	위험성평가 참여 주체	문항 수정	
	18	위험성평가 1. 근로자 참여 2. 후속조치 3. 문서화 4. 결과 공유 5. 안전보건 향상 도움	문항 수정(2) 새로 추가 (1,3~5)	
	19	작업환경측정 1. 실시 여부 2. 결과 공유 3. 후속조치 실시 여부 4. 후속조치 종류 5. 도움 정도	문항 수정(1, 3) 새로 추가 (2, 4~5)	I-14
	20	특수건강진단 1. 실시 여부 2. 사후관리 대상자 유무 및 인원 3. 후속조치 실시 여부 4. 후속조치 종류 5. 도움 정도	문항 수정(1~3) 새로 추가(4~5)	I-15
6) 안전보건 교육	21	안전보건교육: 실시한 교육 유형	새로 추가	
	22	안전보건교육: 교육 내용	새로 추가	
	23	안전보건교육 평가 1. 필요한 정보 충분히 제공 2. 실질적 도움	문항 수정(1) 문항 유지(2)	I-18
	24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무	새로 추가	
	25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 가능한 1. 안전보건 교육 실시 2. 표지 부착	새로 추가	

문항 범주	문 번	문항	10차 조사	7차 작업 환경조사
7) 근로자 참여	26	1. 정기적 근로자 의견 요청 2. 직원의견 적극 수용	문항 수정(1) 문항 교체(2)	I-18-6~8
	27	안전보건 참여 제도 및 활동 1. 실시 유형 2. 활용 정도	새로 추가	
	28	작업중지권: 1. 내용 고지 여부 2. 3년간 실시 여부	문항 교체(1) 새로 추가(2)	I-18-16
8) 관리자	29	관리자 안전보건: 1. 안전보건 책임 인지 2. 안전보건 역량 보유 3. 회사의 관리자 안전보건 업무 지원	문항 수정	I-11-1
9) 현장실천	30	1. 위험 작업전 방법/절차 고지 2.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 절차 및 표준 준수 4. 시정지시 이행	문항 유지(2, 3) 새로 추가(1, 4)	I-18-14 I-18-15
D. 직무 스트레스	31	조직 외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1. 언어적 폭력 2. 신체적 폭력 3. 성폭력·성희롱 조직 내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4. 언어적 폭력 5. 신체적 폭력 6. 성폭력·성희롱 7. 시간 압박 8. 고용의 불안정성	문항 교체(1~4) 문항 유지(5~8)	I-17-0-5 ~10
	32	1. 장시간 노동 2.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3.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만) 4. 정밀기계 조작 작업	문항 유지(1) 새로 추가(2~4)	I-17-0-1 ~4
	33	직무스트레스 감소 노력	새로 추가	

문항 범주	문 번	문항	10차 조사	7차 작업 환경조사
E. 하청 지원	34	원청여부	문항 수정	I-5
	35	협력업체 지원: 1) 계약시 안전보건예산 반영 2) 계약시 안전보건역량 확인 3) 정기적 소통 4)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지원 5) 안전한 작업기간 보장	문항 유지	I-5-3
	36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활동	새로 추가	
	37 38	원청 기업 유무 및 원청 사업장내 근무 여부	문항 수정	I-6
	39	원청 기업의 지원 1) 계약시 안전보건예산 반영 2) 계약시 안전보건역량 확인 3) 정기적 소통 4)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지원 5) 안전한 작업기간 보장	문항 유지(3, 4) 새로 추가 (1, 2, 5)	I-6-1
	40	원청 기업의 안전보건 지원 활동	새로 추가	

문항 범주	문 번	문항	10차 조사	7차 작업 환경조사
F. 외부지원 및 규제	41	안전보건 업무상 어려운 점	문항 수정	
	42	안전보건 지원 수요	문항 수정	
	43	1. 고용노동부 감독 경험 여부 2. 도움 인식	문항 유지	
	44	1. 안전보건공단 서비스 경험 여부 2. 도움 인식	문항 유지	
	45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정도	문항 수정	
	46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 1. 쉽게 이해 가능 2. 적용 어려움 3. 준수 비용 높음 4. 처벌 수준 적정 5. 실질적 도움	새로 추가	
	47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정도	문항 수정	
	48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1. 쉽게 이해 가능 2. 적용 어려움 3. 준수 비용 높음 4. 처벌 수준 적정 5. 실질적 도움	새로 추가	
	49	선호하는 법적 의무 제공 방식	새로 추가	
건설 ¹	1	A. 현장 특성 1. 공사 시작일 2. 공사 종료일 3. 공사 금액 4. 발주처 5. 기성공정율	문항 유지(1~4) 문항 수정(5)	
	2	A. 현장 특성 1. 공사 종류 2. 현 공정	문항 유지(1~2)	
	38	F. 산업안전보건관련 투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금액	문항 유지(1)	
	39	F. 산업안전보건관련 투자 항목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액	문항 유지(1~8)	

주1. 건설업 조사표에만 포함되는 문항으로 문번도 해당 조사표의 문번임

2. 모집단 및 표집 설계

모집단은 가용한 예산 범위에서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1) 업종 확장, 2) 사업체 규모 확장, 3) 제조업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6개의 모집단 안을 구성하였다. 표 IV-2는 6개의 모집단 안별로 층화의 개수와 최대 허용오차를 제시한다. 6개 안에 대한 표집설계의 자세한 결과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표집설계 시, 이전 조사 기준 조사비를 고려하여 예산으로 수집가능한 최대 표본 수는 3만 개라고 가정하고, 이중 건설업에 3,000개를 배정하고, 나머지 27,000개를 그 외 업종에 배분하였다.

우선, 모든 안에서 공통적으로 건설업은 중분류 3개(건축, 토목, 기타)로 구분하고, 규모는 '20억원 이상'으로 통일하였으며, 규모는 5개로 구분하였다 (① 20~50억원 미만 ② 50~120억원 미만 ③ 120~800억원 미만 ④ 800~1,500억원 미만 ⑤ 1,500억원 이상). 이때의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의 10%이었다.

건설 외 업종에 해당되는 6개 안을 비교해보면, 우선, 1안~4안은 표준산업 분류의 21개 대분류 중 'T. 가구내 고용활동'과 'U.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한 19개 업종으로 업종을 확장하는 방안이다. 이중, 1안과 2안은 표집설계 시 모든 업종을 중분류 기준으로 층화하여, 전체 층화 수는 375개로 가장 많다. 이에 비해, 3안과 4안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중분류로 층화를 나누고, 나머지 17개 대업종은 대업종 수준에서 층화를 나뉘, 전체 층화 수를 225개로 줄였다. 표 IV-2는 층화의 기준에 따라 층화 수가 다르고, 결과적으로 최대 허용오차가 차이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모든 층화를 중업종으로 하는 1안과 2안은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허용오차가 16%인데 반해, 3안과 4안은 최대 허용오차가 1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1안과 2안, 그리고 3안과 4안은 모집단에서 포함하는 사업체 규모에

서 차별성을 가진다. 즉, 1안과 3안은 '5인 이상' 사업체(사업체 수=758,491), 2안과 4안은 '10인 이상' 사업체(사업체 수=330,054)를 포함한다. 그런데, 사업체 규모에 따라 1안과 2안 그리고 3안과 4안간의 최대 허용오차의 차이는 없지만, '5인 이상'일 때의 모집단 수가 '10인 이상' 모집단 수보다 크기 때문에, 모집단 수가 큰 '5인 이상'인, 즉, 1안과 3안이 2안과 4안보다 각 층화의 허용오차가 크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각 층화 당 허용오차는 부록 5 참고).

마지막으로, 5안과 6안은 제7차 「작업환경실태조사」가 제조업 20,000개 표본에 대해 유사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업을 제외한 18개 대업종을 모집단으로 정의하는 방안이다. 이때의 층화 개수는 250개이고, 최대 허용오차는 13%로 가장 낮았다. 한편, 5안과 6안의 차이는 역시 사업장의 규모에 있으며, 5안은 '5인 이상', 6안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

〈표 IV-2〉 모집단 안

안	건설 외 업종 (표본수 27,000)					건설업 (표본수 3,000)					전체 총수
	업종(분류)	규모	총 수	모집단 사업체 수	최대 허용오차	분류	규모	총 수	모집단 사업체 수	최대 허용오차	
1안	17개 대업종1 (총47) + 제조업(총25)	5인이상 ²	72x5=360	758,491	16%	건축 토목 기타	20억 이상 ⁴	3x5=15	33,299	10%	375
2안	17개 대업종 (총47) + 제조업(총25)	10인이상 ³	72x5=360	330,054	16%						375
3안	17개 대업종 (대17) + 제조업(총25)	5인이상	42x5=210	758,491	14%						225
4안	17개 대업종 (대17) + 제조업(총25)	10인이상	42x5=210	330,054	14%						225
5안	17개 대업종(총47) (제조업 제외)	5인이상	47x5=235	605,745	13%						250
6안	17개 대업종(총47) (제조업 제외)	10인이상	47x5=235	253,202	13%						250

주1.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 가구내 고용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한 전업종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주2. ① 5~19인 ② 20~49인 ③ 50~99인 ④ 100~299인 ⑤ 300인 이상

주3. ① 10~19인 ② 20~49인 ③ 50~99인 ④ 100~299인 ⑤ 300인 이상

주4. ① 20~50억원 미만 ② 50~120억원 미만 ③ 120~800억원 미만 ④ 800~1,500억원 미만 ⑤ 1,500억원 이상

종합해보면, 제11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하고, 조사 대상 업종을 전업종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모든 업종을 중업종 수준으로 세분화할 경우, 총 표본 수 대비 층화 개수가 과도해져 측정 오차가 증가하고 모수치 추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건설업은 기존 중업종 단위로 유지하고, 그 외 업종은 대업종 수준에서 조사하는 절충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경우 2023년 기준 총 재해 수의 60%만 포함되는 반면, 5인 이상으로 확대하면 총 재해자 수의 73%까지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절충안은 3안으로 업종은 전업종을 포함하되 제조업과 건설업은 기존 중업종 단위로 유지하고 그 외 업종은 대업종 수준에서 조사하며, 사업장 규모는 건설업은 20억이상, 그 외 업종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안은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이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중업종간 차이를 추정할 수 없고, 표본수 대비 모집단 수가 많아 추정치를 공표할 수 없는 층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모든 업종을 중업종 단위로 구분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더라도 모든 층화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3. 조사 방법

개정된 조사표는 내용과 길이 면에서 기존 제 10차 조사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2021년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조사책임자, 실사관리자, 조사원, 그리고 2024년 현재 제7차 「작업환경실태조사」의 실사를 맡은 조사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조사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결과, 조사의 난이도 등 모든 측면에서 제10차 조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조사 방법을 유지하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약간의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응답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담당자로 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는 노무·총무·관리부 등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으로 정한다. 단, 주 응답자가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예: 근로자 수)의 경우 타 부서 직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조사 방법은 제10차 조사까지는 종이 조사표를 이용한 직접 방문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EU는 CATI 기반 전화 면접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독일은 CATI 기반 전화 면접, 그리고 일본은 온라인 설문과 우편 설문을 활용하는 등 외국의 사업장 조사에서는 방문 면접을 활용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도 응답자에게 종이 조사표와 온라인 조사표를 중 선택하도록 한 경우, 절반 이상이 온라인 조사표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제11차 조사에서는 종이 조사표와 아울러 온라인 조사를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조사 참여 요청은 전화 또는 사업장 방문을 활용하고, 1차적으로 응답자가 종이 조사표와 온라인 조사표 중 선호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응답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답한 내용을 조사원 또는 검증원이 검증한 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1차 응답에서 응답하지 못했던 문항이나 1차 응답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응답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조사 절차를 정리하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조사 절차

단계	목적	방법
1. 조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소개 참가 동의 획득 조사표 제공 (온라인과 종이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참가 동의 후, 이메일, 전화, 팩스로 조사표 송부 방문: 참가 동의 후, 종이 조사표 또는 온라인 링크 제공
2. 1차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표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가 선호하는 조사표를 이용하여 응답 기록 (자기보고식)
3. 검증 및 2차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 내용 검증 2차 응답 (1차 응답에서 응답 못했거나 잘못된 문항에 대한 응답 또는 수정) 사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 설문지: 조사원이 방문하여 응답 검증 후, 2차 응답 온라인 설문지: 온라인으로 응답 검증 후, 전화로 2차 응답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3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 2024.
- 고진주, 김태한, 오현정.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 이선희, 박형인, 이진. 외국의 산업안전보건관련 조사현황 비교 분석.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3.
- 이정열, 박경순, 강원목 등. 2019년 전국 사업장 작업환경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
- 조윤희, 김부관, 최윤석 등. 2023년 작업환경 실태조사 기초설계 및 문항개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3.
- 厚生労働省. 令和4年「労働安全衛生調査(実態調査)」の概況. e-Stat. Retrieved November 3, 2023. 2022. from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450110&tstat=000001069310&cycle=0&tclass1=000001207300&tclass2=000001207320&tclass3val=0>
- Collins, D. Pretesting survey instruments: an overview of cognitive methods. *Quality of Life Research*, 12, 229-238. 2003.
- GDA. Strategieperiode 2013 - 2018. GDA-Portal. Retrieved November 4, 2023. 2019. from https://www.gda-portal.de/DE/GDA/Evaluation/2013-2018/2013-2018_node.html
- Howard A, Antczak R, Albertsen K. Third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 (ESENER 2019):
Overview Report.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22.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s

Objectives: This study was undertaken in preparation for the 11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scheduled for 2025.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1) redefine the survey's purpose and role, 2) propose new population with sampling plan, and 3) develop the survey questionnaire to reflect these changes.

Method: This study began wit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key documents and relevant surveys. Specifically, we reviewed the "5th Five-Year Plan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analyzed recent occupational injury data. Also, we analyzed the 10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the 7th 「Work Environment Survey」, and the 「Working Conditions Survey」, as well as related international surveys, including the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 (ESENER)」, Germany's 「GDA Company Survey」, and Japan's 「Labor Safety and Hygiene Survey」. We also conducted interviews with 29 experts from academia, research, and practice in the fields of safety, health, and survey methodologies to gather insights and feedback on the survey's direction, content, and methodology.

Preliminary survey ques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opinions. The questions were then refined through an iterative process of expert reviews and revisions. A pretest survey was conducted with 21 companies to evaluate clarity, comprehension, and effectiveness of survey qu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respondent.

Results: The final questionnaire was developed in two versions: 1) the 'General Questionnaire' for industries other than construction and the 'Construction Questionnaire', a separate version specifically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sections: A. Business Characteristics, B. Risk Factors, 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ractices, D. Job Stress, E. Support for Subcontractors, and F. External Support and Regulations. Section C consists of nine subcategories: 1) Management's Commitment to Safety, 2)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3)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and Procedures, 4) Safety and Health Facilities and Equipment, 5)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6) Safety and Health Training, 7) Employee Participation, 8) Supervisors, and 9) On-site Implementation. Additionally, the 'Construction Questionnaire' includes an extra section on 'Investment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o support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redefining the population, six scenarios were created based on combinations of different industry sectors and business sizes. A sample design plan was provided for each scenario. Finally, the study proposed optimal survey methods for the survey.

Conclusion: This study redefines the purpose of the 11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proposes several alternatives for the population and sampling plan, and revises the survey questionnaire to reflect these changes.

Key word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Questionnaire Development, Survey Method

부록 1. 예비조사 면담 내용 요약

문항 범주	내용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 소요 시간(타 부서/담당자에게 질문하는 시간 제외) 2) 20분 3) 30분 4) 30분 5) 30분 6) 1시간 7) 30분 8) 1시간 9) 30분 10) 20분 11) 15분 12) 20분 13) 10분 14) 30분 15) 15분 16) 10분 17) 20분 18) 30분 19) 15분 20) 15분 21)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내용 1) 농업(버섯재배업, 배지생산, 포장/유통) 2) 파프리카 농장 재배 선별 출하 3) 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공사, 유지 보수, 점검 4) 공장내 식수, 생활용수, 철강 폐수, 냉각수 등 종합적인 수질 관리 5) 서울시 성북구 지역 음식물, 재활용, 일반 쓰레기 수거 6) (건설) 공공기관 내 건물 주차장 신축 공사 7) (건설) 대기업 공장 건설, 설비 유지 보수, 기계 전기, 배관, 소방 등 다양한 업무 진행 8) (건설) 온샘 중학교 신축 공사 9) 백화점 10) 택배업 11) 4성급 호텔(숙박업) 12) 연구소 (화학, 기계, 전기, 생물 등 분야) 13) 옥내 및 옥외 청소, 환경폐기물 최종 정리 및 운송, 원료 적재 14) 회사 내 시설 청소 15) 소방본부

문항 범주	내용
	<p>16) 세종시 공공기관 시설관리 서비스업 17) 국립 대학교 - 농수산 특화이며, 실습 위주의 학교 18) 280개 병상 소유 중형 종합병원 19) 3천명 규모 종합병원 (보건관리자) 20) 체육시설(수영장) 21) 청주지역 중소기업체 안전보건 컨설팅 (SK하이닉스의 재정지원)</p> <p>• 전체적으로 응답 어려운 점</p> <p>2) 현재 농장 사정으로 담당이 휴업 중인 것은 답하기 어려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법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비슷비슷한 말처럼 보여서 답하기 지루했음. 문항이 너무 많아 다른 농장분들은 응답하기 힘들어 할 것 같음.</p> <p>3) 유해요인 응답시 고려 대상이 전체인가, 일부인가 혼란스러움</p> <p>4) 안전보건을 받고 있으면 어렵지는 않지만, 안전과 보건이 따로 있으면 따로 질문 필요</p> <p>5) 업종과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오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음; 업종 최적화는 어려울지</p> <p>6) 어렵지는 않으나 바빠서 응답하기가 어려웠음</p> <p>8) 법적인 것을 안 한다고 응답하는 것이 고민됨</p> <p>10) 근로자 수 정보 확보 외에는 쉬움</p> <p>11) 47명 규모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팀장으로 직접 업무를 하지 않고, 주로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보건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단어가 어렵고, 서비스업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p> <p>12) 혼자서는 조사에서 묻는 사항을 다 파악하기 어려움, 사업체 소재지가 복수일 때 어떻게 응답?</p> <p>13) 어렵지는 않았음</p> <p>14) 응답이 어렵지는 않은 거 같음</p> <p>15) 보건담당자로서 어렵지는 않음. 도급관련 내용은 별도 부서에서 담당해서 응답이 어려웠음</p> <p>16) 어렵진 않으며, 용어들은 다 아는데, 기준이 좀 모호한 경우들이 있었음.</p> <p>17) 안전보건 담당 모두 해봐서 어렵지 않았음.</p> <p>18) 안전관리자로서 보건 응답이 어려웠음</p> <p>19) 응답에 어려움은 없었고, 인원수 입력이 조금 어려웠음. 회사 전산망에서 총무부서의 자료를 확인하고서 대답.(보건관리자 총무부 소속)</p> <p>20) 어렵지는 않았으나,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문항이 많아서 넘어가는 문항이 많았음</p> <p>20) CPR 같은 모든 업종에 해당할 만한 것들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면 좋을 듯</p> <p>21) 산업간호사 출신으로 어려움 없었음. 다만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는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 문항들이 있음. 서비스업종의 담당자(관리자가 아닌)들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 규모별로 똑같은 설문지인데, 중소기업 사업장 수준에서 적용하려고 보니 고민되는 점이 있음</p>
(건설) 진행 공정 수	<p>• 진행 공정 수 응답 난이도</p> <p>6) 대답 가능</p> <p>7) 대답 가능</p>

문항 범주	내용
사업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수 정의 3) 상용/기타보다는 정규직/비정규직이 더 와닿음 4) 상용은 정규직, 기타는 계약직으로 이해함 5) 이해에 문제 없음 6) 포크레인 소유하여 공사에 들어오는 근로자는 사업주이며, 특수 고용 근로자로 보지 않고, 따라서 보호구 지급도 안 함 6) 철골/콘크리트로 하는 공사는 인원수가 많이 안 필요 7) 상용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 외는 기타; 매일 인원을 집계해서 1주일 평균 근로자 수 응답 어렵지 않음 8) 이해에 문제 없음 9) 설명이 충분히 이해됨 10) 우리 회사 직원은 25명, 협력사 직원이 약 1,200명(시설, 청소, 경비, 식당, 분류 및 상하차 인력, 특고도 자영업자에 포함되는데 정의에서 구분되어 있음. 특고도 직접 계약하는 경우와 협력업체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분이 필요 11) 상용은 정규직, 기타는 임시직 / 계약직으로 생각 12) 상용근로자 정의에서 '또는'이라고 하면 응답자들이 귀찮아서 정규직 인원만 응답할 것 같음 12) 1년 이상 계약기간인 비정규직의 경우 상용으로 포함하는게 맞는지? 12) 정원인지 현재원인지 명확히 할 필요 있을 듯, 일일 근로자는 집계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략적 숫자는 나올 수 있음 13) 읽으면 이해됨 14)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음 15) 문제없음 16) 상용은 정규직, 기타를 계약직으로 이해. 기타보다는 임시직이나 계약직이라고 하는 게 낫다는 의견 17) 문제 없음 18) 내용을 잘 몰라서 인사과에 내용 요청 19) 상용은 정규직, 기타는 임시직 / 계약직으로 생각 20) 내용 보면 이해 됨,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수 정보 찾는 어려움 2) 담당자가 있으면 어렵지 않으나, 지금 휴직이라 현재 작성은 좀 부정확할 수 있음. 3) 인사팀에 요청해서 어렵지 않았음 4) 안전 교육을 위해 전직원 명부를 갖고 있어서 어렵지 않았음 5) 어렵지 않음 7) 어렵지 않음 8) 관리 대장이 있어서 어렵지 않았음 9) 인사 부서에 요청 필요, 어렵지 않았음. 기준이 만 60세 이상인 줄 알고 잘못 응답함 10) 협력사까지는 파악 못 했음(물어볼 수 있음) 11) 규모가 작고, 평균연령 36세 정도로 젊어서 해당자 없음 14) 어렵지 않음

문항 범주	내용
	15) 교육을 위해서 전직원 명부를 가지고 있어 어렵지 않음 16) 55세 이상이 별로 많지 않아서 어려움은 없었음 17) 어렵지 않음. 담당자와 협조 받으면 18) 알 수가 없어서 인사과에 내용 요청 19) 사내 전산망에서 총무부서 자료를 보고 확인 20) 어렵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인원 답변 난이도/부담 2) 문제 없음 3) 인사팀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인사팀이 타부서에 위법사항을 알려주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음 4) 경영지원 인사팀에 물어봐서 확인 5)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어렵지 않음 8)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어렵지 않음 9) 시스템적으로 초과 근무 제한되어 있어서 잘 지켜짐. 만약 위반되는 경우 위반했다고 응답하지 않을 듯(법적 위반 사항이라면 모두) 10) 초과자가 없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지는 않았음 11) 연말을 제외하면, 52시간 이상 근무자는 거의 없음. 지난 달에 52시간 초과자가 없어서 없다고 응답 12) 초과하더라도 처벌사항이라서 답 안 할 듯. 현실성 없어 보임 14) 초과자 없음. 부담스럽지 않음 15) 문제 없음 16) 공공부문은 철저히 법 준수해서 어렵지 않음 17) 문제 없음 18) 친분이 있는 인사부 직원이라 괜찮았지만, 아닌 경우 어려울 듯 19) 시간외 연장수당 신청자들이 생각하고 입력.(보건관리자여서 근로시간 현행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음) 20) 6~10시 운영이라 해당안 됨 21)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 다만 파악은 가능한데, 법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를 솔직하게 드러낼 것인지는 모르겠음. 그리고 안전보건부서 담당자가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서 타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근로 2) 문제 없음. - 야근이 없음. 청원 경찰 3교대 정도, 또는 열대야가 심할 때 근무 시간 새벽이동 정도 3) 상황실만 야간 근무라서 정해진 인력; 퍼센트를 꼭 안해도 될 거 같음; 야간근로 설명이 눈에 잘 안띄 4) 직원 명부에 교대 근무 정보가 있어서 확인 가능했음,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회사에서도 동일한 정의 사용 중. %는 계산이 어렵진 않지만 빼도 될 거 같음. 단, 이런 내용이 정리 안되어 있는 사업체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음 5) 수거 운반조(18:00-3:00) 인원으로 기입. 근무조가 8가지 있음 10) 야간근로가 특건 대상이라서 이해하는데 문제 없음 11) 호텔 프런트 근무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야간근로를 함. 그런데

문항 범주	내용
	<p>'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는 없어서 0명으로 체크. 특검 대상자는 있지만, 보기에는 비해당이어서 없다고 응답</p> <p>12) '교대근무자?', 교대근무자 수는 파악이 되는데, 그들이 다 야간근로는 아님</p> <p>15) 문제 없음. - 야근이 없음. 청원 경찰 3교대 정도, 또는 열대야가 심할 때 근무 시간 새벽이동 정도</p> <p>16) 특검 대상으로 이해</p> <p>17) 문제 없음. - 야근이 없음. 청원 경찰 3교대 정도, 또는 열대야가 심할 때 근무 시간 새벽이동 정도</p> <p>18) 병원이라 교대 근무자로 이해하고 인사부에 자료 요청</p> <p>19) 심야당직 수당 신청자들 기준으로 입력</p> <p>21) 야간근로는 특검 대상이어서 보건관리자들은 쉽게 파악은 가능할 듯. 현재의 설문지 정보보다는 산안법 상의 야간근로 규정을 보여주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상태 평가 <p>2) 문제 없음</p> <p>3) 업종 특성상 정부 규제 사업이라서 수입이 안정적인 편</p> <p>4) 주관적으로 성과급 나오는 기준을 토대로 평가, 직장인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p> <p>5)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질문이 좋을 듯</p> <p>9) 이익이 나냐, 안 나냐를 중점으로 주관적 판단함. 안전이나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면 응답에 필요한 정보 알고 있을 것</p> <p>10) 반기에 한 번씩 경영지표 공표하기 때문에 응답가능</p> <p>12) 공공기관의 경우 매출, 영업, 이익이 아니라 전체 집행 예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듯</p> <p>13) 원청과 정기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편</p> <p>14) 어렵지 않음</p> <p>15) 공공기관이라 해당없다고 생각</p> <p>16)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응답</p> <p>17) 문제 없음. 매출액은 알아도 영업이익은 모름.</p> <p>18) 코로나 이후 계속 적자로 들음. 회의에서 원장님이 매출 언급하는데 참석하지 않아서 잘은 모름</p> <p>20) 어렵지 않은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응답하기를 꺼려할 듯</p> <p>21) 비영리기관이어서 애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투자액 변화 <p>1) 건강검진, 상비약 구비, 기계의 유지보수 및 점검 비용 등을 생각함. '보건'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을 듯</p> <p>2) 중처법 이후 주기적인 컨설팅</p> <p>3) 안전보건 투자액 비율이 정해진 게 있어서 거의 유지됨</p> <p>4) 안전보건을 맡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음</p> <p>5) 안전보건 예산 투입 내용 잘 정리 되어 있음</p> <p>9) 담당자라면 무조건 알고 있을 정보임</p> <p>10) '건강'보다 '보건'이 나올 듯</p>

문항 범주	내용
	<p>12) 단순히 금액보다는 %가 중요할 수 있음</p> <p>13) 자세한 수치는 총무팀에 문의했음</p> <p>14) 복날에 제공하는 오리백숙, 명절 상여금이 안전 관련 투자라고 생각했음</p> <p>16) 매년 비슷함</p> <p>17) 국가 예산은 3년에 한번이라 전후는 변함 없는데, 3년전 책정시에는 증액했었음</p> <p>18) 기존에 하는 기본 산안 준수(교육, 측정 검진 등)라 변한 것 없음</p> <p>20) 대학 안에 있어서 산안법 외 관련법에 의해서도 안전점검을 함, CPR 교육 실시(강사 아닌 미화직원들도)</p> <p>• 노조</p> <p>5) 내부 노조와 사이 좋음</p> <p>8) 일반 노조 가입자 존재하지만, 서로 누구인지 내색은 안함</p> <p>15) 몇 년전 소방관노조 생겨서 알고 있음</p> <p>16) 2개 복수노조 사업장임을 잘 알고 있음</p> <p>17) 대학 노조</p>
위험요인	<p>• 위험요인</p> <p>1) 현재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위험요인은 아닌 듯함. 수확량에 따라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장시간 노동'이 간혹 발생</p> <p>1) 농업 특성 상 수확량이 많아지면 저녁 또는 새벽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정기적, 드물</p> <p>1) 배지생산, 입상 작업 시에 유해한 가스, 분진 등의 위험요인이 있을 듯함. 미끄럼, 헛디딤, 떨어짐 등의 위험 있음</p> <p>2) 모르겠다 필요 없다고 생각함. 사실 그냥 담당이라 (모르는 용어도 있어서) 거의다 모르겠다고 답해야 할 상황이 많다.</p> <p>6) 모르겠다는 응답이 모호할 거 같음</p> <p>7) 건설에서 시간 압박이 해당안되나? 그런 일은 안하려고 함</p> <p>8) 건설 현장은 조금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긴 함 ;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일도 있으니 있다 없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p> <p>10) 전직장에 비해 시간 압박이 덜하다고 느껴서 없다고 응답. 시간 압박이 있긴 하나, 극소수임. 공조 설비가 갖춰져 있어서 폭염 등은 문제가 안됨. 인화성 물질을 몰래 보내는 경우가 있음</p> <p>11) 서비스업종에서 특별한 위험은 별로 없음. 8시간 초과하면 장시간 노동으로 생각. 성수기 연말 등에 장시간노동이 가끔씩 발생</p> <p>12) 직무가 다양해서 거의 모든 항목이 '있음'</p> <p>13) 목욕탕 청소시 미끄럼 위험 존재하고, 청소시 화학물질 사용(교육도 실시)하지만, 일상 수준의 위험이라고 판단하여 위험요소라고 응답하지 않음; 유리창 청소시 고소차 작업 진행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데 기억을 못했었음</p> <p>13) 모르겠다 필요없을 거 같음</p> <p>14) 물청소로 인해 미끄럼 위험이 있을 순 있으나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 락스 같은 게 위험요인이 되긴 하지만 계속 교육하고, 희석해서 사용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p> <p>15) 사업장 위험을 다 포괄하는지 모르겠음</p> <p>16)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어느 정도가 장시간인가? - 안전 또는 보건 관리자 1명이</p>

문항 범주	내용
	<p>집단 전체를 제대로 알고서 응답을 할지 모르겠음.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을지?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다소 들었음.</p> <p>17) 모르겠다 필요 없다고 생각함. 모르겠다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할 것 같다.</p> <p>18) 모두 없다고 응답. 위험성 평가를 최근에 해서 위험유해요인을 알 수 있음; 병원은 Blood pathogen이 산업보건에서 주요 유해요인인데 알지는 못하고 있으며, 주사기 바늘 관리 등도 위험으로 인식 못 함.</p> <p>18) 모르겠다 있는 것이 나올 듯 함</p> <p>19) 응답에 어려움은 없었음. 다만 용역업체까지 포함해서 응답해야하는지 조금 고민이 되었음. 하청용역 포함해서인지 아닌지를 명기해주면 좋겠다.</p> <p>20) 외부인에 의한 폭력 등은 사업장 특성. 손님 연령 다양하다 보니 고령자, 음주자, 그 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언어폭력 등 발생. 특히 데스크 직원들</p> <p>20) 고용 불안정성에 모르겠다(이직 많은 편, 자발적이직, 주로 40대)</p> <p>20) 미끄럼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안전 위한 조치함, 해수풀장이라 수질 관리에 화학물질 위험 없음, 사우나는 청소 업무라 고온 위험 없음, 감전은 위험한 정도는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 어려운 항목 <p>2) 언어 폭력 관련 등은 대민 업무나 고객 응대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보고된 것이 없어 없음이라고 하긴 했는데 좀 짝짝함.</p> <p>3) 내부 직원 문제는 있어도 없다고 할 거 같음 / 고객 관련은 응답하기 불편하지 않음</p> <p>4) 언어, 신체, 성폭력 위험은 있어도 말하기 어려울 듯</p> <p>5) 악성 민원 대비 활동 진행함</p> <p>6) 현장소장은 가해자의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할 거 같음; 근로자나 직원에게 물어봐야하는 질문 같음</p> <p>7) 정신적 스트레스(고객 언어적 폭력)이 없지는 않지만, 있다고 할 만큼 자주는 아니어서 '없다'고 응답함</p> <p>8) 원형이다 보니 거의 협력사라서 내부 문제 없음</p> <p>9) 직무 스트레스 위험 요인을 응답하기 어려움. '무리한 요구'를 갑자기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다 '있음'으로 체크하게 됨. 나머지는 쉬웠음</p> <p>9) 언어, 신체, 성폭력 위험을 응답하기 어려움. '무리한 요구'를 갑자기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다 '있음'으로 체크하게 됨. 나머지는 쉬웠음</p> <p>12) 언어, 신체적, 성적 폭력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있다고 응답함</p> <p>12) 내부 직원에 의한 언어적 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한 응답 기준은 게시판 사례 공유, 고충 처리에 보고된 사항 등을 고려했음</p> <p>14) 신체적, 성적 폭력 요즘은 없음</p> <p>16)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도 쉽지는 않음. 소음의 경우, 장례식장은 해당없으나, 재활용시설 분류작업자는 소음 작업 해당</p> <p>17) 언어 폭력 관련 등은 대민 업무나 고객 응대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보고된 것이 없어 없음이라고 하긴 했는데 좀 짝짝함.</p> <p>18) 최근 어느 환자의 매우 심한 언어 폭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음. 체계적으로 관련 소식을 듣지는 못함.</p> <p>20) 내부 직원에 의한 폭력 등에 대해서는 응답 어려울 듯</p>

문항 범주	내용
	<p>21) 신체적 폭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어서 대답이 쉬운데, '언어적 폭력 및 무리한 요구'는 대답하기가 애매함. 언어폭력에 대해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생각 차이가 있을 것.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에 의한 위험 해석 <p>2) 관련 질문들을 동일하게 운전 전업자가 있느냐는 관점으로 해석함 3) 사고에 대한 위험으로 해석함. 시설점검을 위한 차량 이용이 많아 접촉사고 빈번 5) 도로에 근무를 하니, 차량과 관련된 내용이 작업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류가 달리 되어 첨예 좀 헷갈림 9) 주차관리는 도급이지만, 주차장 관리할 때 직원들이 돌아다니기도 해서 위험 요인 있음 13) 운전은 하지만 사업장 내 제한속도가 낮아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 17) 관련 질문들을 동일하게 운전 전업자가 있느냐는 관점으로 해석함 18) 가정 간혹사 5분, 엠블런스 기사 1분을 기준으로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분들을 위주로 해석 21) 직원들이 사업장 컨설팅을 다니면서 회사 차량을 수시로 이용하는데, 이를 업무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야 하는지 애매.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기도 사무실에서 늘 쓰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인가?</p>
<p>안전보건 관리실태 : 1) 경영진 안전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 안전의지 <p>2) ok 경영진이 관심이 많음. 4) 설명이 증거법 내용이라 편찮은 거 같음; 추가 질문으로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보건 조직이 있는지?' '우리 회사 경영진은 "생산성보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둔다' 제안 6) 사장님을 생각하고 응답함. 안전보건 관리비 집행을 장려/적극 협조할 때 경영진 안전의지를 느낌 7) 안전 관련 예산을 사용할 때 경영진 안전의지를 느낌 9) 안전을 위해 추가로 예산 집행했는지, 업무중단을 결정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을 수 있을 듯 10) "경영진과 함께하는 안전과 관련한 행사가 있는지?" (예: 안전경영활동의 날-경영진이 사업장으로 내려가서 직원들 만나고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눔) 11) 직원 안전도 중요하지만, 고객안전이 우선. 경영진이 안전을 강조하는 편. 고객이 우선. 12) "공식 회의 석상에서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언급 빈도", "불시안전점검 빈도, 직접하는지 등" 13) 대기업 내부 협력사는 대부분 갖춰져 있을 거임 14) 산업법이 강조되면서 재해 발생 시 회사에서 받는 페널티를 알려주며 안전 매우 강조해서 의지가 있다고 판단 15) 소방업무여서 예전부터 안전을 많이 강조하는 편 17) ok 경영진이 관심이 많음. 20) 경영진에 대해 대표보다는 강사들을 생각하고 응답</p>
<p>안전보건 관리실태 : 2)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전담부서 <p>1) 전담 부서는 없고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2명 있음 2) 전담 부서를 헛갈려 함. 있다고 표시하는 경향, 구체적으로 물어 보면, 그럼 없네요. 3) RM팀 (compliance+안전), 도시가스 업체에서는 산업안전과 가스안전(예:</p>

문항 범주	내용
	<p>배관누출관리) 업무가 섞여있음</p> <p>4) 안전보건그룹; 문 8-4/ 8-5에서 '전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함</p> <p>5) 50인 미만으로 사무실에 5인 근무하지만, 한팀이 되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안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p> <p>6) 건설현장에 안전전담 부서는 잘 없음</p> <p>7) 본사에는 있지만 현장에는 없음</p> <p>8) 건설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만 있고, 본사에 전담 부서 있음</p> <p>9) '안전팀': 5명으로 구성(팀장1, 안전2, 보건2), 보건 1명은 간호사, 다른 1명은 산업보건보다는 식품위생 담당</p> <p>10) 안전팀: 4명(파트장1/안전2/보건1)</p> <p>11) 없음. 팀장님이 책임이고, 총지배인(대표이사)이 서류 결제를 하고 있음. 팀장-주임 2명이 업무 담당.</p> <p>12) 전담부서 전체 인원 25명 중 23명 안전, 2명 보건 담당(모두 각각 전담)</p> <p>15) 전담부서는 없고, 담당자만 있음. 내용은 정확히 이해함</p> <p>16) 안전보건팀이라는 전담부서 있고, 제대로 숙지. 최근 전담부서가 이사장 직속이 되면서 위상이 강화</p> <p>17) 전담 부서를 갖길래 함. 있다고 표시하는 경향, 구체적으로 물어 보면, 그럼 없네요.</p> <p>18) 전담부서 없음; 안전관리자 사무처 시설팀/보건관리자 감염관리실</p> <p>19) 안전관리자(비상계획관리파트), 화재관리자(시설관리팀), 보건관리자(인사총무팀) 등은 구분되어 있으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부서는 없다. 병원 및 학교를 아우르는 법인 내 전담부서는 있음</p> <p>21) 소규모 사업장에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전담을 잘 모를 수 있을 것. 전담부서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부서 없는 경우, 안전보건업무 수행직원 업무비중 <p>1) 10~30% 정도. 작업장 내 안전 점검, 청소, 위험물 제거 등을 함. 당사자가 아니라 응답이 쉽지는 않음</p> <p>6) 전임임. 일정 공사비 이상이면 안전관리 전담 직원을 두어야 함</p> <p>7) 작년에 이 현장에서 35건 정도의 공사 진행해서 총 인원을 5명이라고 기입함</p> <p>8)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및 정규직; 실제적인 일은 겸임(다른 일이 많음)임.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의 겸임 정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p> <p>14) 무엇이 안전 업무인지 알 수 없어 답하기 어려웠음 (아침 스트레칭 및 락스 사용법 재고지 등의 활동 진행)</p> <p>16) '조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음. 모호해서 응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p> <p>18) 안전 관리자 - 10~30% / 보건 관리자 70~100%</p> <p>20)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30% 정도), 소규모에서는 책임소재를 이유로 응답 회피할 듯</p> <p>21) 안전보건 업무가 일상 업무에서 시기별로 편차가 있음.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혼재되어서 대략적인 퍼센트로 답하기가 쉽지 않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자 <p>4)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는 겸업 금지이므로, 겸업을 해도 그렇게 응답하기가 어려움</p> <p>4) 보건의 대행으로 진행</p>

문항 범주	내용
	<p>5) 다른 업무도 당연히 하지만, 안전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8) 전담이라고 했지만, 다른 일도 다 함. 실제 안전 업무는 30~50% 정도임 15) 소방서는 산안법 미적용 18) 법 준수 파악이 아닌 실태 파악 중점이 맞다고 봄 ; 이것을 근거로 추후 법적인 불이익을 절대 주지 못하도록 통계 과정에서 분리해서 handling 할 필요 있음 19) 산업안전관련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7명에는 소방관리자, 위험물관리자 방사선관리자 등이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내용의 팩스나 우편물, 안전교육 준비 등을 통해서 들어박서 용어가 낯설지는 않음 10) 20~49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은 제조업만 해당함(물류업은 해당 없음) 11)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잘 이해하지 못함. 안전 및 보건 대행기관에서 교육자료를 주면 전파 교육, 안전점검도 같이 진행하는 편. 15) 소방서는 산안법 미적용
<p>안전보건 관리실태 : 3)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 16)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기는 함. 직원들이 제대로 알고, 준수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 17) 규정과 절차는 중앙 부서에서 다 내려와서 문서상으로는 잘 되어 있음. 18) 규정과 절차 헛갈림. 규정은 문서로 있고, 실행의 절차는 없음
<p>안전보건 관리실태 : 4)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개인 특성 고려 여부 1) 거의 공용(용접 또는 기계 수리 시 도구 등). 신발(장화, 작업화) 및 유니폼은 개인 신체 사이즈에 맞춰 제공 2) 신발 사이즈와 머리 대중 소 정도 5) 시설 장비와 보호구는 분리 했으면 함; 남성만 있고, 특별한 맞춤형은 없음. 웨어러블 장비 착용시 맞춤형이 필요하기는 함. 6) 건설현장도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별로 화장실/휴게실/탈의실을 구분함 7) 여성 근로자는 화기 감시자 정도로 조끼와 안전모만 제공 8) 성별과 관계없음. 건설 보호구는 안전화 빼고는 동일 장비 사용 9) 여성/남성 전용 휴게실 있음. 장비는 개인 신체 사이즈 별로 제공됨, 안전모는 성별 구분이 없음. 일반 업무 시에는 보호구를 쓸 일이 잘 없음. 보호구 폐기 또는 훼손 시 재구매하고 재고를 갖고 있긴 함. 주방에 자동 소화 장치가 있음 10) 신발(개인 사이즈 고려) 외에는 없음 10) 보건시설이라고 하면 안전시설과 따로 있다는 게 연결되지 않음. 보건관리시설/휴게실/탈의실 등으로 명확히 짚어줘야 함 12) 보호구는 개인 신체 사이즈 고려, 시설/장비를 성별에 따라 갖추지는 않을 것 12) 휴게실은 성별 나누어서 마련됨 13) 장비 신청 시 본인 사이즈별로 신청 방지 신발. 체격 고려는 안 함 14) 장비는 앞치마, 미끄럼 15) 응답에 어려움 없음 16)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경우 실제 사용 여부를 응답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함.

문항 범주	내용
	17) 신발 사이즈와 머리 대중 소 정도 18) 시설장비는 모르겠고, 보호구 정도 비치; 동성(여성)이라 사이즈만 고려 20) 보통 응답: 제조업체처럼 특수한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 관련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서; 구급약품, 제세동기 등의 장비 갖추 21) 개인 특성 고려는 사이즈에 맞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함. '시설 장비'의 성별 고려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음. 21) 실습생들의 치수를 물어봐서 결정하기는 함.
안전보건 관리실태 : 5) 안전보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정의 2)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안전 컨설턴트가 다 할 것이라 생각함. 11) 위험성평가는 대행업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 팀장과 대행업체에서 함께 진행. 일반직원은 미참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 14) 아침마다 랙스 조심하라고 하는 등의 얘기하고, 의견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위험성평가 한다고 체크함 15)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지 애매함 16) 매년 안전관리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응답 자체는 어렵지 않음. 17) 연안법의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참여자, 내용 6) 처음에 전체 공정에 대해 만들어보고, 세부 공정에 들어가서 빠진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함 9) 최근 파쇄기 관련(넥타이 착용 시 위험성), 모니터 받침대(거북목), 코팅지 화상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함 19) 위험성평가는 담당 자체는 안전관리자이며, 사전준비 및 진행관련해서는 보건관리자도 함께 준비. 협력업체는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미실시 이유 21) 고용부 권고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올 해 하면서 위험성평가 올 해 처음 진행. 작년까지는 위험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 게다가 올 해 산재가 1건 발생(기계 절단베임)하면서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확인. 후속조치로 팀장들이 수시 위험성평가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참여자 리스트 18) 노조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참여 응답 근거 3) 업종 특성상 사고 위험이 낮아서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거 같음 5) 노사 협의회 하면서 함께 실시 6) 아침 안전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지만 근로자들이 그게 위험성 평가라고 인지하지는 않는 거 같음 7) 건설업에서 협력업체 관계자는 작업반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사장을 의미 8) 일반 근로자 참여 안 함 9) 일반근로자는 팀장과 파트너(선임 근로자)가 참여함. 파트너들 중 일부를 지정해서 들어감 9) 적극적 참여에 보통 응답한 이유는 위험성평가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다 보니까, 서류상

문항 범주	내용
	<p>근거를 남기는 일이라는 느낌이 좀 크다고 느껴짐. 업종 특성이라고 봄</p> <p>10) 솔직히 모든 근로자라고 적혀 있지 않아서, 일부만 그렇더라도 매우 그렇다고 응답함. 현재 종사자 의견 청취를 무기명으로 받는 제도가 있음. 분기별로 1회 포상 실시함</p> <p>12) 위험성평가 하는 시스템이 있음. 참여 근로자 명단, 내용 사진 등 증빙하게 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 등록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음. 단, 관리자가 응답한다면 다 긍정적으로 답변할 문항 같음</p> <p>14) 안전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반응해주고, 적극적으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p> <p>14) 위험성평가 문서를 작성해본 적은 없음</p> <p>17) 중처법 요구 사항이라 중앙 부처에서 부서장이 분기별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분기별로 근로자 모아서 안전교육하고 질의 응답하고 있음.</p> <p>21) 전직원 참여형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면서 따로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공유 시기 및 방법 <p>2) 날마다 시작전 조회를 하는데, 그 때 안전에 대해서도 언급함</p> <p>3) 위험성 평가 결과를 팀 교육에서 전달함</p> <p>5) 교육이나 아침 조회에서 알려줌.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는 단체 문자</p> <p>6) 필요할 때는 수시로 진행.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위험성 평가 교육이라고 인지하지는 않음</p> <p>7) (예. TBM)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듯</p> <p>8) 안전관리자가 아침 조회마다 그 날 작업 특성에 맞게 하나씩 전달, 조장들이 구체적 작업에 맞게 다시 전달</p> <p>9) 서류(공문)로 사무실마다 뿌리는 식인데, 내용을 보면 한 번 보고 '그렇구나'하고 끝나는 것들임</p> <p>10) 노동부에서 밀고 있는 내용. 결과 공유를 TBM으로 하지 않고, 위험성평가 하기 전, 후에 알려주고 게시함.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음</p> <p>11) 근로자들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고 있음. 알려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함.</p> <p>16) 위험성평가 종료후 결과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p> <p>17) 분기별 안전보건교육 후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 <p>5) 50인 미만 폐기물 처리업과 같이 측정 항목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곳은 작업환경측정 기관에서 측정을 해 주지 않아 서비스 기관을 찾기는 힘들</p> <p>6) 유해위험물질 항목에 해당이 되면, 그걸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해달라고 해야 함; 이걸 할지 말지는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임 (예. 아파트는 소음, 분진 확인 필요)</p> <p>7) 공장내 상주하는 건설업의 경우는 작업환경측정을 발주처(공장)에서 수행함</p> <p>8) 법적 점검이나 근로자들의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유용하게 사용됨. 작업장이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감독을 받을 때 면피용</p> <p>9) 도급사까지 포함되므로 측정 대상임. 지금은 야간 왁싱 작업, 식기세척기, 소음 등의 요인이 있음</p> <p>10) 소음이 많음</p> <p>11) 작업환경측정 측정은 처음 들어봄</p> <p>17) 면피를 위해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면피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함.</p> <p>18) 안전관리자라서 잘 모름 ; 인트라넷 공고로 작업자들에게 알려줌</p>

문항 범주	내용
	<p>19) 직업환경측정 후속조치로 노조에 통보하고(산보위), 노조에서 피드백을 제공. 21) 서비스업은 해당이 없을 것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 후속조치 항목 <p>10) 유해요인제거, 개인보호구지급 시행 중 12) 1, 2, 4번 해당. 유해 물질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경우 극히 드물지만, 실험 장치를 바꿔서 유해 요인을 제거할 수는 있음 12) 유해물질 노출을 감소하기 위해 SOP 변경을 하기도 함 16)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법적 기준치 이내면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18번의 특검도 마찬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건강진단 <p>3) 특수건강진단 사후조치 대상자 13명인데, 조치는 해당없음으로 응답 (보건담당자에게 들은 대로 응답했음다고 하는데, 사후조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음) 5) 야간 근로 관련 검진, 일반 검진, 별도의 뇌심혈관 질환 검진을 실시 8) 사후 관리 관련 내용 이해가 어려움; 결과표를 봐도 복잡, 마무리에 요약있으면 좋겠음, 특수건강검진은 과태료가 빠져 면피용으로 하게 됨 10) C나 D등급 받은 사람 모두 협력업체 인원임. 협력사를 통해 들어오는 일용직의 경우 건강관리가 안되는 사람이 많음(음주로 인한 고혈압 등). 사후관리조치는 우리 회사(원청)와 협력업체가 같이 해야 함. 예.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급비 추가 지급 11) 야간근무자 특검. 10명 중 7명 특검 진행. 12) 소음으로 3명 이 D1, D2 판정받아서, 3번, 5번 시행함 17) 대학기관 연구소에서 특검은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뭐라도 나온 적이 없다(측정은 많이 사용한 경우 조금 나온 적이 있다.) 청력 검진은 조금 의미가 있다. 19) 특수건강검진 후 이상소견 3명은 야간업무 배제</p>
안전보건 관리실태 : 6)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종류 <p>3) 4번 응답처럼 교육을 해야할 정도의 새로운 장비를 바꾸는 일이 별로 없음 4) 4번은 법적 사항은 아님 5) 온라인이 의미 없지만 감독 받을 때 유리함; 대면 교육 시 사인을 해도 답이 다를 수 있어서 개인이 확실하게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 8) 현장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어 도움됨 13) '최근 1년'을 간과하고 응답함; 세제, 고소차 관련 교육을 특별 안전보건 교육이라고 판단함 14) CPR, 소화기 교육만 해 봄 15) 법정/비법정 교육으로 구분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16) 법정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을 진행 18) 준수 항목처럼 응답; 대표적인 교육은 온라인이라 전혀 효과 없음 21) 관리감독자 지정하고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비스업종의 경우 적용제외가 있어서 비해당일 수 있는데, 비해당 보기가 없다. 적용제외에 대한 고려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내용 <p>3) 시스템화/온라인화되어 담당자는 편하지만 교육 효과나 직원 관심은 저조 4) 3년 이하 저근속자(신규 사원) 교육 진행</p>

문항 범주	내용
	<p>6)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하는 것으로 임할수도 있음 7)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교육이 더 잘 이해됨 8) 영세 업체는 정보 제공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부재 12)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은 위험성평가 방법 관련 교육이라고 이해하고 응답함 14)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교육 정도만 해봄 18) 새로 부각되는 교육도 정기 교육 온라인의 한 모듈로 넣어 큰 의미가 없음 20) 직무스트레스 예방 교육: 서비스 컨설팅 강사 초청해서 고객 컴플레인 대처 등에대한 교육 실시한 적 있음, 소방 교육 매년 실시 21) 안전교육 이외의 교육인 것 같은데, 사업장에서는 뇌심이나 근골 관련 교육이 많음. 직업병 이외의 교육이 필요. 보기에 안전이나 사고예방 관련 교육은 왜 없는지 궁금.</p> <p>• 교육 평가 4) “법정 외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다.” 추가하면 좋을 듯 5) 작업자가 잘 알아 듣고 수행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 6) 근로자들을 몇 시간을 앉혀놓고 교육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기본적인 것만 진행함 8) 필요한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시행 11) 안전보건교육은 월 1회 1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14)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17) 해야 할 일이라 안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제대로된 질문이 아니다. 18) 교육이 실제적이지 못해서 별 도움이 안됨, 관리 감독자 교육을 다녀와도 역할을 모름</p> <p>• 외국인 안전교육 1) 자료는 잘 안 보고 오히려 표지를 해당 언어(태국어 등)로 번역해서 붙여뒀을 때 한 번씩 보는 것 같음. 1) 조회 때나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직원들 모아서 교육(한국에 오래 있던 근로자들이 많아서 한국어로 진행, 이해가 어려운 경우 한국어가 능숙한 직원이 추가적으로 설명해서 숙지하도록 함) 1) 교육자료 외의 안전보건 자료는 생각나는 것 없음 2) 외국인 근로자는 오면 거의 10년이상 근속한다. 따라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10명중 6명은 한국 사람 수준의 한국어를 하고, 3명은 한국어를 할 줄은 알지만 가끔 헛갈릴 때가 있다. 1~2명이 잘 모른다고 할 수 신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동일 국가 선임들이 도와줘서 문제는 없다. 6) 못 알아들으면 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다 말을 알아들음 6) 안전보건 교육은 중요하나, 자료 제공은 의미가 없는 거 같음. 교육과 시설(휴게실 확충), 음료 제공, 휴식 보장 등 현실적인 것들이 더 중요 8)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 알아들어서, 팀장을 통해 전달 요청하면 TBM을 통해 전파 됨 11) 비해당 15) 비해당 16) 비해당 21) 비해당</p>
안전보건 관리실태 : 7) 근로자 참여	<p>• 근로자 참여 3) 직원소통에서 직영 구성원과 협력사 구성원 소통 제도를 구분 필요</p>

문항 범주	내용
	<p>4) 26번 다음에 24번을 배치하는 건 어떨지? > 법을 먼저 물어보고 이 외에 무엇을 하는지</p> <p>16) 노조와 산보위도 정기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음. 안전보건 관련 의견은 어느 정도 내는 편이지만 노조에서 적극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5점 척도에 2.5점 정도.</p> <p>17) 해야 할 일이라 안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다.</p> <p>20) 대표 및 관리자가 빠지고 직원들이 주관하는 의견 표출 기회 제공하고 있음, 워크숍 등 기획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직원들 중심으로 의견받고 진행</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참여 제도 및 활동 <p>1) 안전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음</p> <p>2) 명칭상 안전보건 노사 협의체인데, 다른 이름이 없어서 공공안전근로협의체 체크</p> <p>4) 소모임 예시는 도시락간담회, 법정외 활동; 4번에서 '자율적'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게 좋을 듯</p> <p>6) 근로자 개개인과 소통하기보다는 반장 등을 통해 소통함</p> <p>7) 직원소통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으나, 교육시간/TBM이 전부임</p> <p>8) 조희나 정기 교육 시간에 쌍방향 소통. 단, 유사시 빠져나갈 구멍을 위해 노사 협의체 등을 꼭 운영해야 함</p> <p>9) '공공안전근로협의체'가 '안전보건협의체' 인줄 알고 응답함</p> <p>9) 산보위에는 근로자 대표로 총무 주부가 들어감. 점포에 노조 대표가 있는 것은 아님</p> <p>10) 산보위 시행 중.</p> <p>10) 공공안전근로협의체가 안전보건협의체 아닌지? '안전보건협의체'라고 해야 모든 업종에서 알아듣기 편함</p> <p>11) 노사협의회를 거의 매주 진행. 매주 금요일. 팀장과 실무진 10여명이 진행. 산업안전관련 건의도 노사협의회에서 진행. 노후시설교체 등을 주로 건의. 자유롭게 말하는 편이라고 생각.</p> <p>12) 모두 시행 중(산보위, 안전근로협의체, 명예감독관, 자율적 소모임)이고 잘 진행되고 있음</p> <p>13) 소모임 예시는 안전분임조</p> <p>16) 안전보건 동아리 활동. 분기별로 모임</p> <p>17) 산안위 대상은 아니고, 분기별 부서별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소모임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기적인 소모임이 (산안위보다) 더 쌍방 통행으로 더 나은 것 같다.</p> <p>18) 고충 처리 소통함이 있으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음.</p> <p>19) 노조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조와 소통 활발한 편.</p> <p>21) 중소기업은 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활동 및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기에 없음</p>
안전보건 관리실태 : 8)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p>3) 해당 팀장이 다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음</p> <p>4) 산안법에 나와서 이해될 듯</p> <p>6) 관리자, 반장이 있으니까 안전담당자로 이해해서 응답함</p> <p>7) 관리감독자는 발주처나 사외에서 감독나온 걸로 오해 가능</p> <p>9) 당사자들은 본인 스스로 관리감독자인 것 알고 있음</p> <p>10) 관리감독자라고 하면 알아들을 듯</p> <p>12) 담당자라면 잘 이해할 듯</p> <p>14) 자신이 안전관련해서 모두 담당하므로 내가 관리감독자라고 생각함</p>

문항 범주	내용
	<p>18) 관리감독자는 정하기 나름인 듯; 교육이 부담스러워 가능한 한 적게 정하려는 경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감독자 평가 <p>3) 안전관리 인사평가 > 관리감독자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함(법정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반기에 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감독자 지정 기준 <p>6) 따로 지정하지 않음,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관리자로 생각함 9)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응답했음 11) 관리감독자를 주임(입사 8개월)로 지정해서 교육을 받음 14)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도 받으려 감 17) 예산은 운영 지원과에서 다 가지고 있고, 관리감독자는 별개로 지정하여,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개선) 활동에 제약이 있어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18) 관리 감독자를 처음에는 최대한 선정했으나, 교육 등의 관리가 어려워 줄임. 실제 관리 감독자 교육 내용이 실제적이지 못해서 교육 이후에도 인식이 없음. 안전관리자 판단에 안전보건 조직도가 잘못되어 있음. 21) 관리감독자 미지정 상태. 사무처장이 해당될 듯 함.</p>
<p>안전보건 관리상태 : 9) 현장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천 <p>3) 회사 구조상 수칙 위반 지적을 하면 바로 시정할 수 밖에 없음 6) 중요한 문항으로 구성된 거 같음; 근로자와 감독자의 생각은 항상 다름 8) 안전 관리자가 지시하는 것 이외에 현장 실천 잘 안 됨 9) 제조업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지만 해당되는 게 많이 없다 보니 삭제하게 됨. 일을 하기 전 안전한 작업 방법 절차라고 할 게 없음. 그렇다고 이상한 문항은 없고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문항들임 11) 대행기관(안전협회)과 순회를 할 때 실무자들이 건의를 하는 수준.. 12) 1번은 TBM 같은 거라고 이해했음. 추가할 것은 없어보임 16) 잘 안되는 편. 17) 하라면 하기는 함. 18) 안전 절차 및 작업 표준이 제대로 있지 않아 그 준수를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 없음 20) '시정 지시' 문항에 '보통이다': 너무 잘 한다고 하기도 그래서 20) '안전 절차 및 작업 표준은 청소 시 전기 사용에 대해서 일이 끝나면 차단기를 내리거나 콘센트를 뽑으라고 하는데 까먹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중지권 <p>1) 화재같은 경우 최근 관련 교육을 했는데, 그 외에는 급박한 상황은 잘 없는 것 같음. 기계를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작업자들의 판단 하에 작업을 멈추고 수리를 할 때도 있지만 이게 급박한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음 2) 선별기에 중지 버튼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누를 수 있음. 인라인이 아니라 중지에 대한 제약은 작은 편임. 4)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음 (가스가 조금 새어 나와서) 5) 우천이나 눈이 많이 오는 경우 등 긴밀하게 상호 소통하여 작업 여부를 결정 6) 작업중지권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봄; 불합리하면 스탁하고 얘기해줘, 위험하면 하지 말고 먼저 말해서 해결하고 작업하라고 교육은 함. 급박한 위험은 작업중지권이 없어서</p>

문항 범주	내용
	<p>대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불필요하다고 느낌</p> <p>7) 근로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음</p> <p>9) 안전관리자가 중지시키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작업자들도 중지를 할 수가 있음. 사용 주체에 대해 생각하게 됨</p> <p>10)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보다 사업주(협력업체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사용이 많음. 협력업체에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데이터 수집)</p> <p>11) 별로 해당없음</p> <p>13)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매우 드뭄</p> <p>16) 제도가 있으나 활용도 낮음. 안전신문고도 있음.</p> <p>17) 폭염 때문에 문자 5번 보냄. 실제로 작업을 중지하고 쉬라고 하면 쉴 곳에 에어컨을 설치 해 주어야 하나 그런 것은 없음. 작업을 안하고쉬면 그 시간 동안 추가로 일을 해야 하는 데 별다른 보상이 없어서 면피성 활동이라고 생각함.</p> <p>20) 작업중지권은 처음 들어봤지만 내용을 보니 이해는 됨. 사우나 청소 야간 작업 시 전기를 사용하다가 짜릿함을 느끼는 경우, 전체 다른 일도 중지하도록 함</p> <p>21) 서비스업종에서는 작업중지할만한 긴박한 위험이 있을까?</p>
직무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스트레스 감소 개입책 <p>1) 여러 고충에 대해 상담 및 개선하고 있음</p> <p>2) 응답자가 법적용어 잘 구분 못함.</p> <p>3) 외부 업체와 계약해서 심리상담 제공</p> <p>4) 대부분 대행업체에서 진행</p> <p>5)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지원 받으며 하고 있음</p> <p>6) 본사소속 직원 대상인지 근로자 대상인지 의문이 들었음.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단기 계약자라서 이 문항들이 해당되지 않음</p> <p>7) 건설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데가 거의 없음</p> <p>9) 보건 관리자가 설문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검사함</p> <p>9) 사고 발생 시(추락사 등) 해당 점포 근로자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행</p> <p>9) 협력업체에 대한 것을 추가하면 답변 시간이 엄청 길어질 듯</p> <p>10) 근로자 건강 센터 등과 협업해서 직무 스트레스 검사 시행 중(협업 많이 함). 건강증진 프로그램, 직무 스트레스 검사는 매년 하고 있음</p> <p>11) 직무스트레스 대응 필요성은 아는데 교육은 진행한 적이 없음. (안전보건교육을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대행을 해서 그런 듯.)</p> <p>13) 원청 심리센터 이용 가능</p> <p>14) 응답지 중 하고 있는 것이 없음</p> <p>15)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교육 및 상담)을 별도로 매년 진행</p> <p>16) 힐링 프로그램, 아로마 테라피, 원예 프로그램, 힐링 숲 체험 모발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서 시도</p> <p>17) 스트레스 관련 심리 상담 지원은 공공기관은 다 하고 있다.</p> <p>20) 연간 2회 워크샵, 3개월마다 화식문화 진행(직원들과의 소통 기회 마련, 휴식 보완 등)</p> <p>20) 직무 스트레스 발생 시 휴게시간 절차: 스트레스 발생에 대해 전달 받으면 조치, 부모님 상을 당한 경우 재량으로 2개월 휴식하도록 한 바 있음</p>



문항 범주	내용
	<p>21) 1번 보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으로 하는게 낫겠다는 의견. 5번 보기와 7번 보기가 좀 혼동될 수 있겠다고 생각. 법적으로는 7번으로 알고 있음.</p>
하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청, 하도급업체 명칭 이해 6) 발주처, 원청, 하도급 업체 구분 가능 11) 실제로 호텔업무를 위해서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는 3곳인데,(시설관리, 객실청소, 조리지원) '상주'는 1개 업체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1개 업체 5명이라고 응답. ('상주' 개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음.) 조리지원 업체는 연말이나 주말 등에만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 객실청소는 하루 13~15명 정도 파견.(객실 판매량에 따라서 변동) 협력업체와 정기적인 협의체 등의 운영은 안하고 있음 19) 병원 용역업체와 입점업체(의료기기업체, 제과점, 식당 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점업체들도 하청업체인지 헷갈렸음. 참고로 한양대 병원에서는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입점업체는 이 협의체에 미참여하고 있음. 대신 입점업체 직원들도 보건관리 대상에는 포함됨. • 협력업체 근로자 수 정보 파악 출처 12) 협력업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관리 부서에 다 물어봐야 함 16) 공공부문에서는 일상적으로 사내상주 업체 및 인원수를 파악. 아마 공공안전보건협의체 때문인 듯. 19) 원하청 부문, 협력업체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규모 응답이 어려웠음. • 원청 활동 6) 꼭 다 해야하는 항목임 : 점검 나오면 이 서류를 보고,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음(안전보건 점검 및 순회점검) 6) '5. 안전보건교육 지원'이라고 하면 하도급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는 것으로 이해됨. 실제로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음 7) '5. 안전보건교육 지원'이 와닿지 않아서 체크안함.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와닿긴 함 10) 대부분 다 함. 협력사도 ISO받았을 것. 만약 받지 않았는데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와줄 것 • 원청 평가 19)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는 업체에서 직접 하고, 대신 원청 안전관리자들이 확인은 하고 있음. 필요한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권고도 진행. • 협력업체 지원 활동 4) 8번의 KOSHA 응답지는 원청지원의무 없음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 관리비 비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답 가능 7) 여러 현장이 있어서 어떻게 기입할지 모르겠음 • 사용된 항목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 응답시 "현재 기성공정을 산출시점" 조건을 간과함 7)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다 알 수 있음
외부지원 및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걸림돌 2) 법적 요건을 모르는 것이 많다. 어렵다. 세세하게 못 들어 가서 컨설턴트에게 외주를




문항 범주	내용
	<p>준다.</p> <p>3) 도시가스사업법 기준으로 안전 관리. 산안법과 이중으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 존재</p> <p>9) 매출 또는 이익을 기타로 응답</p> <p>11) 전업 담당자가 없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에도 어렵다. 대행기관의 지원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p> <p>14)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문항이 없어서 체크 안 함</p> <p>16) 부서에 6명이 있는데, 2명의 안전관리자와 1명의 보건관리자에게 업무가 몰려 있음. 나머지 3명은 순환보직으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서 일을 많이 하지 못함</p> <p>20) 안전보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수하거나 교육을 받은 게 아니다보니 전문성 부족에 응답, 전문 교육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에 요건을 대응하기가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도움 <p>1) '일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컨설팅', '위험성평가'에 체크. '위험성평가'는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준다면 도움 받고 싶음</p> <p>13)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내용이라서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다고 체크했음</p> <p>15) 소방 부문은 외부에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외부 지원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p> <p>16) 공공기관이 예산제약으로 오히려 못할 수도 있음.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데 못하고 있음. 세종시에서 기재부의 예산통제로 인해서 지원을 잘 못해주는 것 같음. 지방공기업의 한계</p> <p>17) 직무 스트레스에 관해서 보건 관리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 전주 신도시에 정신과는 하나밖에 없다.</p> <p>20) 이왕이면 강사들이 현장에 와서 교육해주면 좋겠음. 소규모의 경우 직원들이 외부로 교육을 받으러 가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p>3) 근로자도 산안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추가하면 좋을 듯 (근데 질문해도 저조하다고 할 거 같음)</p> <p>5) 면담에 참여한 안전 관리자는 산안법을 숙지하고 있어서 이해에 문제 없다고 함. 이것이 실행에서 의미 있게 작동 되는 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함.</p> <p>5) 면담에 참여한 안전 관리자는 산안법을 숙지하고 있어서 이해에 문제 없다고 함. 이것이 실행에서 의미 있게 작동 되는 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함.</p> <p>7) 자료를 좀 배포해야 이런 문항에 대한 평가를 잘 할 수 있을 거 같음</p> <p>8) 면담에 참여한 안전 관리자는 산안법을 숙지하고 있어서 이해에 문제 없다고 함. 이것이 실행에서 의미 있게 작동 되는 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함.</p> <p>9) 안전관리자지만 법 용어를 잘 모르니 해석의 어려움 있음. 규모가 있을 경우 법무법인에 물어볼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p> <p>10) 산안법 내용이 애매함. 내용 해석에 대해 물어봐도 질의회신으로 받음. 문 43-2(사업주 의무 제시 명확)는 매칭이 잘 안 됨.</p>

문항 범주	내용
	<p>10) 산안법상 도급, 발주, 수급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렵고 구체적이지 않음. 법률에 대한 해석을 그때그때 고용노동부에 물어봐야 함</p> <p>10) 산안법에는 근로자의 의무도 있는데 그건 왜 빠졌는지?</p> <p>12)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범주가 약간 모호함. 기준에 대한 규칙은 명확해서 자주 봄</p> <p>12) '문 43-2'에 대해, 산안법에서 고용주 의무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하기도 어려움</p> <p>14) 교육에 가서 알게 됨; 교육을 안 받는 곳은 잘 모를 거 같음</p> <p>18) 면담에 참여한 안전 관리자는 산안법을 숙지하고 있어서 이해에 문제 없다고 함. 이것이 실행에서 의미 있게 작동 되는 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함.</p> <hr/> <p>• 법적 의무 정보 제공 방식</p> <p>1) 온라인 영상자료, 현재 미비한 부분도 분명 있을 테니 전문가 방문 컨설팅을 통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함</p> <p>4) 온라인 영상자료(예. 솜뿔)</p> <p>6) 사업주 교육과 전문가 방문은 부담스럽고, 온라인 자료의 경우 소규모 현장에는 마땅한 장비나 장소가 없어 활용도가 낮음. 휴대폰으로 보기도 어려움; 가이드 및 해설서는 인쇄 혹은 보관해서 나중에 사용 가능</p> <p>7) 동영상 교육이 확실히 더 이해가 잘 됨(산안법 핵심내용 정리 영상)</p> <p>9) 해설서는 필요할 때 다시 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음. 집체 교육은 다녀와도 남는 게 크게 없음</p> <p>10) 사업주 집체교육(중처법 처벌 사례 공유)</p> <p>12) 가이드 및 해설서</p> <p>14) 아무래도 전문가가 직접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함</p> <p>14) 평소 산안법 정리 유튜브 영상 시청함</p> <p>20) 전문가 방문 컨설팅, 비대면은 집중이 어렵고 전문가가 직접 대면으로 하면 직원들도 더 관심 갖고 회사가 신경쓴다는 느낌도 들 듯</p>

부록 2. 개정 조사표(안)

부록 2-1. 개정 조사표(안): 일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일반

승인 번호
제 380004 호

ID A1-4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사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xxxxx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추진실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안전보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고용노동부에 사업체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사업체의 몇 %'라는 식으로 통계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노동자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원재영명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담당 : 조윤호 연구위원
 xxx 연구원
 전화 : 052-703-0823
 052-703-0828

<설문 작성 방법>

1. 응답은 귀 사업체의 안전보건담당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전보건담당자가 없으면, 노무·총무·관리부 등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질문에 반드시 귀 사업체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3. 설문작성 전에 「사업자 등록증」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시면 응답하기 편리합니다.
4. 잘 모르는 내용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반드시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안전 혹은 보건만을 담당하는 경우, 본인 분야 이외의 문항(예: 작업환경측정)은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응답해 주십시오.
5. 설문지에 응답자의 명함 또는 사업체의 안내팸플릿 등을 함께 첨부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는 실시간연구원(xxxxxxxxxxx) 또는 담당 조사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1

□ 사업체 기본사항

사업체명		사업체 ID	<input type="text"/>	설립연도	<input type="text"/>	년
종사자 수 (현재기준)	① 5-19인 ② 20-49인 ③ 50-99인 ④ 100-299인 ⑤ 300-499인 ⑥ 500-999인 ⑦ 1,000인 이상					
업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④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⑤ 도매 및 소매업 ⑥ 운수 및 창고업 ⑦ 숙박 및 음식점업 ⑧ 정보통신업 ⑨ 금융 및 보험업 ⑩ 부동산업 ⑪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⑫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⑬ 교육 서비스 ⑭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⑮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⑯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체 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A. 사업체 특성

문 1. 응답하시는 현재 시점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 1) 상용: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2) 임시 및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는 자(임시 및 일용근로자),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로 등을 받는 자(특수고용 근로자 포함)
 ※ 제외: 협력업체(도급업체) 직원, 특수고용 근로자 외의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받은 자(파견·용역업체인 경우 외부에 파견한 근로자는 포함)는 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함
 3) 외국인: 합법 또는 불법 모두 포함

구분	내국인			외국인			전체
	상용	임시 및 일용	계	상용	임시 및 일용	계	
남							
여							
계							

만 55세 이상 근로자 명

문 2. 매출, 영업이익, 집행예산 등을 고려할 때, 최근 3년간의 귀 사업장의 경영 상황을 평가해 주십시오.

- ① 매우 나쁘다
- ② 나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좋은 편이다
- ⑤ 매우 좋다

문 3. 작년에 비해, 올해 귀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예산(근로자 1인당 기준)의 변화가 있나요?

- ① 작년에 비해 감소했음
- ② 작년과 거의 동일함
- ③ 작년에 비해 증가했음

문 4. 귀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B. 위험 요인

문 5. 아래는 사업장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및 환경적 특성입니다.
 다음 각 항목이 현재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존재하면 '예',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오'로
 응답해주시시오. 해당 인원이 적어도, 자주 발생하지 않아도, 현재 조치를 하고 있어 위험성이 낮더라도, 존재하면 '예'라고
 응답해주시시오.

항목	예	아니오
A.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요인		
문 5-1. 장시간 서 있는 자세	①	②
문 5-2.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①	②
문 5-3. 장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	①	②
문 5-4. 무거운 중량 취급	①	②
문 5-5. 반복적인 동작	①	②
B.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		
문 5-6. 소음	①	②
문 5-7. 실내 고온 작업 환경	①	②
문 5-8. 실내 저온 작업 환경	①	②
문 5-9. 심한 진동	①	②
문 5-10. 다습한 작업 환경	①	②
문 5-11. 여름철 폭염	①	②
문 5-12. 겨울철 한파	①	②
문 5-13. 밀폐작업	①	②
문 5-14. 미끄럼, 헛디딤, 떨어짐 등의 위험	①	②
문 5-15. 붕괴 위험	①	②
문 5-16. 방사선, 유해광선	①	②
문 5-17. 차량에 의한 위험(예: 교통사고)	①	②
C. 생/화학물질 관련 위험요인		
문 5-18.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	①	②
문 5-19. 피부 접촉 시 위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	①	②
문 5-20. 유해한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①	②
문 5-21.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①	②
문 5-22. 화염, 뜨거운 액체, 냉각 가스 등 열 관련 위험	①	②
D. 기계, 전기, 기타 위험요인		
문 5-23.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 끼임)	①	②
문 5-24. 전압에 의한 위험(예: 감전, 화상)	①	②

C. 안전보건 관리실태: 1) 경영진 안전의지

문 6. 다음은 귀 사업장의 경영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 경영진 :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귀 사업장이 지사, 공장으로 본사에 해당 결정권이 있는 경우는 본사의 경영진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6-1. 우리 회사 경영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6-2.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보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C. 안전보건 관리실태: 2)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문 7.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예: 안전보건팀, 환경안전팀)에 대한 문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란?

- 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모든 조치와 제도를 의미합니다.
- ② 고객 및 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와 제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가스안전, 식품위생)

전담부서란?

- ① '안전보건환경팀', '환경안전팀' 등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의미합니다.
- ② 해당 부서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소방, 환경 등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③ 노무·총무·관리부 등에서 안전보건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가 안전보건업무가 아니므로 '아니오'에 응답하십시오.

문 7-1. 귀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① 있음 → 문 7-2로 이동 ② 없음 → 문 8로 이동
문 7-2. 이 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부서장 포함)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7-3. 이 부서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임원급(이사, 상무 등) ② 관리자급(부장, 팀장 등) ③ 평직원(대리, 주임, 사원 등) ④ 기타()
문 7-4. 이 부서 직원 중 산업안전 업무만을 전담(100%)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7-5. 이 부서 직원 중 산업보건 업무만을 전담(100%)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 문 9로 이동

문 8. 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8-1. 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조금이라도 수행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있으면, 총 몇 명입니까? (없으면 0명으로 기재하고, 문 9로 이동)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8-2.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전체 업무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얼마입니까?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

문 9.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셨습니다가?

- ① 선임 → 문 9-1로 이동
- ② 위탁 대행 → 문 10으로 이동
- ③ 선임 + 위탁 대행 → 문 9-1로 이동
- ④ 선임 안 함 → 문 10으로 이동

문 9-1.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9-2. 전체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9-3. 전체 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 업무만을 전담(100%)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9-4. 산업안전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전체 업무에서 산업안전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얼마입니까? 해당 직원이 2명 이상이면, 산업안전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

문 10.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셨습니다가?

- ① 선임 → 문 10-1로 이동
- ② 위탁 대행 → 문 12로 이동
- ③ 선임 + 위탁 대행 → 문 10-1로 이동
- ④ 선임 안 함 → 문 11로 이동

문 10-1. 선임한 보건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10-2. 전체 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10-3. 전체 보건관리자 중 산업보건 업무만을 전담(100%)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10-4. 산업보건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전체 업무에서 산업보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얼마입니까? 해당 직원이 2명 이상이면, 산업보건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 → 문 12로 이동

문 11.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셨습니다가? 선임하셨다면 몇 명입니까?

- ① 예 _____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명)
- ② 아니오

C. 안전보건 관리실태: 3)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

문 12. 귀 사업장에는 문서화 된 안전보건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 13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 14로 이동

문 13. 다음은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13-1.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2.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C. 안전보건 관리실태: 4)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문 14. 다음은 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시설과 장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14-1. 우리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장비,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 안전보건 관리실태: 5) 안전보건활동

문 1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들어본 적 없음 → 문 19로 이동
-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름 → 문 16으로 이동
-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문 16으로 이동
- ④ 잘 알고 있음 → 문 16으로 이동

문 16. 귀 사업장은 **최근 1년간** 위험성평가를 한번이라도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 16-1로 이동**
- ② 없음 → **문 16-2로 이동**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
<p>문 16-1. 귀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다음 중 언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십니까?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정기평가) ② 유해·위험요인도 변동될 때마다 실시 (수시평가) ③ 월·주·일 단위로 실시 (상시평가) ④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 <p>→ 문 17로 이동</p>	<p>문 16-2. 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개만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험성평가를 할 만큼의 위험요인이 없다 ②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 ③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이 너무 어렵다 ④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⑤ 기타 (직접 기입) <p>→ 문 19로 이동</p>

문 17. 다음 중, **최근 1년간**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분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사업주/안전관리책임자
- ②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③ 외부 전문가
- ④ 관리감독자(관리자)
- ⑤ 일반근로자(작업자)
- ⑥ 협력업체 관계자
- ⑦ 그 외 (직접 기입)

문 18. 다음은 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 18-1. [문 17에서 '⑤ 일반근로자(작업자)'를 선택한 경우만] 근로자들이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2.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3.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항상 문서로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4.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견한 위험 요인을 교육 시 또는 업무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준다.(예: 툴박스미팅)	①	②	③	④	⑤
문 18-5. 위험성평가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9. 다음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는 제도임

문 19-1. 귀 사업장은 **최근 1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19-2로 이동**
-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이지만 실시하지 않음 → **문 20으로 이동**
- ③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님 → **문 20으로 이동**
- ④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모름 → **문 20으로 이동**

문 19-2. [문 19-1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 19-3. [문 19-1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문 19-4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 19-5로 이동**
- ③ 결과상 후속 조치가 필요 없었음 → **문 19-5로 이동**

문 19-4. [문 19-3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는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복수 응답 가능).

원래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말씀해주시시오.

- ① 유해요인의 제거
- ② 시설 및 설비 설치 또는 개선(예: 국소배기의 설치)
- ③ 개인 보호구 지급
- ④ 건강진단 실시
- ⑤ 기타 (직접 기입)

문 19-5. 작업환경측정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⑤ 매우 도움이 된다

문 20. 다음은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 특수건강진단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문 20-1. 귀 사업장은 **최근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0-2로 이동**
- ② 해당 근로자가 있지만 실시하지 않음 → **문 20-5로 이동**
- ③ 해당 근로자 없음 → **문 21로 이동**
- ④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모름 → **문 21로 이동**

문 20-2. [문 20-1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조치 대상자(C, D등급)가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 **문 20-3으로 이동**
- ② 없었음 → **문 20-5로 이동**

문 20-3. [문 20-2에서 '① 있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문 20-4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 20-5로 이동**
- ③ 후속 조치 대상자가 없었음 → **문 20-5로 이동**

문 20-4. [문 20-3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는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복수 응답 가능).

- ① 작업장소 변경
- ② 작업 전환
- ③ 근무시간 단축
- ④ 야간근로 제한
- ⑤ 작업환경측정
- ⑥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 ⑦ 기타(직접 기입)

문 20-5. 특수건강진단이 근로자의 건강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⑤ 매우 도움이 된다

C. 안전보건 관리실태: 6) 안전보건교육

문 21. 다음 중 **최근 1년 동안** 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고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한 교육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
- 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③ 채용 시 교육(일용직, 단기 계약직 포함)
- ④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부서 및 직무 변경, 새로운 설비 또는 장비 도입 시)
- ⑤ 특별교육(법정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대상)
- ⑥ 실시한 적 없음 → **문 24로 이동**

문 22. 다음 중 **최근 1년 동안** 귀 사업장에서 실시한 안전 보건 교육 내용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교육
- ② 비상 대응 훈련(예: 사고 발생 시 비상탈출 방법)
- ③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교육
- ④ 실시한 적 없음

문 23. 다음은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23-1. 우리 회사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3-2.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은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4.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음 중 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일용직 포함) 중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예,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 **문 25로 이동**
- ② 아니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습니다. → **문 26으로 이동**

문 25.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음 중 귀 사업장에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

구분	예	아니오
문 25-1.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예: 해당국 언어 또는 그림)으로 안전보건 교육 실시	①	②
문 25-2.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예: 해당국 언어 또는 그림)으로 안전보건 표지 부착	①	②

C. 안전보건 관리실태: 7) 근로자 참여

문 26. 다음은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26-1. 우리 회사는 정기적으로 근로자(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작업장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 26-2. 우리 회사는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7. 다음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참여를 위한 제도 및 활동입니다. 이 중 귀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② 안전보건협의체
-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④ 안전보건관련 소모임 활동
- ⑤ 안전보건 게시판
- ⑥ 그 외 (직접 기입)
- ⑦ 없음 → 문 28로 이동

문 27-1. 귀 사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 28. 다음은 작업중지권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문 28-1. 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권(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까?	①	②
문 28-2. 귀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안전 때문에 근로자가 작업중단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②

C. 안전보건 관리실태: 8) 관리자

문 29. 다음은 귀 사업장의 관리자(예: 부사장, 반장, 팀장, 조장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평소 관리자들에게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에 가장 적절한 것의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29-1.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안전보건에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9-2.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안전보건 관리를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9-3. 우리 회사는 관리자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 안전보건 관리실태: 9) 현장실천

문 30. 다음은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30-1. 우리 회사에서는 위험한 일을 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절차를 알려주고 위험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문 30-2. 우리 회사의 작업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0-3.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항상 안전 절차 및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0-4.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를 잘 이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D. 직무스트레스

문 31. 아래는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입니다. 각 요인이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세요.

항목	예	아니오
직무 스트레스 위험요인		
문 31-1.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①	②
문 31-2.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신체적 폭력	①	②
문 31-3.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성폭력·성희롱	①	②
문 31-4.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①	②
문 31-5.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신체적 폭력	①	②
문 31-6.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성폭력·성희롱	①	②
문 31-7. 시간 압박	①	②
문 31-8. 고용의 불안정성	①	②

문 3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1명이라도 있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세요.

항목	예	아니오
문 32-1. 장시간 노동	①	②
문 32-2.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①	②
문 32-3.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만)	①	②
문 32-4. 정밀기계 조작 작업	①	②

문 33. 다음은 사업장에서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입니다. 이 중 귀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시행하신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복수 응답 가능).

- ① 직무 스트레스 요인 위험성 평가
- ②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검사
- ③ 직무 스트레스 관련 교육
- ④ 심리상담 지원
- 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 신고 제도
- ⑥ 직무 스트레스 발생 시 휴게시간 혹은 휴가 부여
- ⑦ 선택적 근로 시간제
- ⑧ 재택/원격 근무제
- ⑨ 건강증진 프로그램
- ⑩ 그 외 (직접 기입)
- ⑪ 없음

E. 하청사 지원

문 34. 귀 사업장에는 연간 계약을 하는 **협력사(파트너사, 하청업체)**가 있습니까?

※ **협력사(파트너사, 하청업체)**란? 명칭은 사업체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사업주(도급인, 원청)로부터 해당 업무를 받은 사업주(수급인, 하청)

- ① 있음 → **문 35로 이동**
- ② 없음 → **문 37로 이동**

문 35. [문 34에서 '①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다음은 협력사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35-1. 우리 회사는 협력사 계약시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2. 우리 회사는 계약시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3. 우리 회사는 협력사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4. 우리 회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5. 우리 회사는 협력사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6. [문 34에서 '①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다음 중 **최근 1년** 기준으로 귀 사업장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을 위해 시행한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 ② 작업장 순회 점검
-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 장소 또는 교육자료 제공)
- ④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⑥ 휴게실 등 위생시설 제공
- ⑦ 안전보건 조치 확인 및 시정 요구
- ⑧ 안전보건 자료 및 정보 제공
- ⑨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점검
- ⑩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및 검토
- ⑪ 협력사 근로자 작업증지권 보장
- ⑫ 그 외(직접 기입)
- ⑬ 없음

문 37. 귀 사업장은 거래하는 원청(도급업체)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38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 41로 이동

문 38. [문 37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원청(도급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 39. [문 37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다음은 원청(도급업체)와 관련 문항입니다. 거래하는 원청(도급업체)이 여러 개인 경우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39-1. 원청(도급업체)은 계약시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2. 원청(도급업체)은 계약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확인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3. 우리 회사와 원청(도급업체)은 직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4. 원청(도급업체)은 우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5. 원청(도급업체)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40. [문 37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다음 중 **최근 1년 기준**으로 원청사가 귀 사업장 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시행한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 ② 작업장 순회 점검
-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 장소 또는 교육자료 제공)
- ④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⑥ 휴게실 등 위생시설 제공
- ⑦ 안전보건 조치 확인 및 시정 요구
- ⑧ 안전보건 자료 및 정보 제공
- ⑨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점검
- ⑩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및 검토
- ⑪ 협력사 근로자 작업증지권 보장
- ⑫ 그 외(직접 기입) _____)
- ⑬ 없음

F. 외부지원 및 규제

문 41. 다음 중 귀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가장 큰 걸림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3개 골라 주십시오.

항목	1위	2위	3위
1) 경영진의 관심 부족	①	②	③
2) 예산 부족	①	②	③
3) 작업 일정, 생산 목표, 매출 또는 이익	①	②	③
4) 근로자의 인식 부족	①	②	③
5) 안전보건 담당자의 인원 또는 시간 부족	①	②	③
6) 안전보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7) 과도한 행정 업무	①	②	③
8) 법적 요건	①	②	③

문 42.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영역을 다음 중에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일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② 위험성평가
- ③ 작업환경 개선
- ④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컨설팅
- 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⑥ 안전장치 및 보호구 컨설팅
- ⑦ 건강증진 컨설팅
- ⑧ 안전문화 측정 및 향상 방안 제시
- ⑨ 인간공학적 작업 자세 및 작업 환경 평가
- ⑩ 그 외 일반 안전보건 컨설팅
- ⑪ 재정지원사업
- ⑫ 기타(직접 기입)
- ⑬ 없음

문 43.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고용노동부 감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43-1. 귀 사업장은 최근 1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43-2로 이동
- ② 없다 → 문 44로 이동

문 43-2. [문 43-1에서 '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귀 사업장의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 44. 다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44-1. 귀 사업장은 최근 1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거나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44-2로 이동
- ② 없다 → 문 45로 이동

문 44-2. [문 44-1에서 '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이나 자료가 귀 사업장의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 45.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예: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문 47로 이동
- ② 거의 모른다 → 문 46으로 이동
- ③ 조금 안다 → 문 46으로 이동
- ④ 잘 안다 → 문 46으로 이동

문 46. [문 45에서 '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예: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46-1. 현장의 안전보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2. 우리 사업장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3. 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4.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5.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47. 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문 49로 이동
- ② 거의 모른다 → 문 48로 이동
- ③ 조금 안다 → 문 48로 이동
- ④ 잘 안다 → 문 48로 이동

문 48. [문 47에서 '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48-1. 현장의 안전보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2. 우리 사업장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3. 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4.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5.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49. 다음 중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을 1개 선택해주세요.

- ① 사업주 집체교육
- ② 전문가 방문 컨설팅
- ③ 가이드 및 해설서
- ④ 동영상 자료
- ⑤ 필요 없음

부록 2-2. 개정 조사표(안): 건설업



승인번호
제 380004호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건설업

ID A1-4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사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xxxxx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추진실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안전보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고용노동부에 사업체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사업체의 몇 %'라는 식으로 통계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노동자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담당 : 조윤호 연구위원
xxx 연구원
전화 : 052-703-0823
052-703-0828

<설문 작성 방법>

1. 응답은 귀 사업체의 안전보건담당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전보건담당자가 없으면, 노무·총무·관리부 등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질문에 반드시 귀 현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3. 설문작성 전에 「사업자 등록증」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시면 응답하기 편리합니다.
4. 잘 모르는 내용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반드시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5. 설문지에 응답자의 명함 또는 사업체의 안내팸플릿 등을 함께 첨부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는 실사연구원(xxxxxxxxxx) 또는 담당 조사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현장 기본사항

회사명	현장명	현장 ID
공사 금액	① 20~50억 미만 ② 50~120억 미만 ③ 120~800억 미만 ④ 800~1,500억 미만 ⑤ 1,500억 이상	
현 장 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A. 현장 특성

문 1. 본 공사현장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사 시작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공사 종료일 (종료 예정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공사 금액	<table border="1"> <tr> <td>천억</td><td>백억</td><td>십억</td><td>일억</td><td>천만</td><td>백만</td> </tr> <tr> <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 </tr> </table> 원	천억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억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발주처	① 정부 ② 공공기관 ③ 사기업 또는 개인 ④ 자제공사 ⑤ 기타												
기성공정율	<input type="text"/> %												

문 2. 다음 중 이 현장의 공사 종류와 공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건축공사	토목공사	그외
문 2-1. 이 현장의 공사는 다음 중 어떤 종류에 해당됩니까?	① 아파트	⑥ 도로	⑩ 전기정보통신공사
	② 공장	⑦ 철도	⑪ 기타
	③ 근생시설/빌딩	⑧ 교량	
	④ 학교/병원	⑨ 상하수도	
	⑤ 건축 기타	⑩ 토목 기타	
문 2-2. 오늘은 다음 중 어떤 공정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공정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① 굴착공사	① 굴착공사	
	② 가설공사	② 가설공사	
	③ 구조물공사	③ 교량 하부공사	
	④ 마감공사	④ 교량 상부공사	
	⑤ 기계설비공사	⑤ 발파공사	
	⑥ 해체공사	⑥ 댐축조공사	
	⑦ 열공사(냉동냉장창고만 해당)		
	⑧ 부대토목공사		

B. 위험 요인

문 4. 아래는 사업장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및 환경적 특성입니다.
 다음 각 항목이 현재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존재하면 '예',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오'로
 응답해주시시오. 해당 인원이 적어도, 자주 발생하지 않아도, 현재 조치를 하고 있어 위험성이 낮더라도, 존재하면 '예'라고
 응답해주시시오.

항목	예	아니오
A.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요인		
문 4-1. 장시간 서 있는 자세	①	②
문 4-2.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①	②
문 4-3. 장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	①	②
문 4-4. 무거운 중량 취급	①	②
문 4-5. 반복적인 동작	①	②
B.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		
문 4-6. 소음	①	②
문 4-7. 실내 고온 작업 환경	①	②
문 4-8. 실내 저온 작업 환경	①	②
문 4-9. 심한 진동	①	②
문 4-10. 다습한 작업 환경	①	②
문 4-11. 여름철 폭염	①	②
문 4-12. 겨울철 한파	①	②
문 4-13. 밀폐작업	①	②
문 4-14. 미끄럼, 헛디딤, 떨어짐 등의 위험	①	②
문 4-15. 붕괴 위험	①	②
문 4-16. 방사선, 유해광선	①	②
문 4-17. 차량에 의한 위험(예: 교통사고)	①	②
C. 생/화학물질 관련 위험요인		
문 4-18.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	①	②
문 4-19. 피부 접촉 시 위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	①	②
문 4-20. 유해한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①	②
문 4-21.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①	②
문 4-22. 화염, 뜨거운 액체, 냉각 가스 등 열 관련 위험	①	②
D. 기계, 전기, 기타 위험요인		
문 4-23.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 끼임)	①	②
문 4-24. 전압에 의한 위험(예: 감전, 화상)	①	②

C. 안전보건 관리실태: 1) 경영진 안전의지

문 5. 다음은 귀 사(본사)의 경영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 경영진 :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귀 사업장이 지사, 공장으로 본사에 해당 결정권이 있는 경우는 본사의 경영진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5-1. 우리 회사 경영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5-2.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보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C. 안전보건 관리실태: 2)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문 6.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예: 안전보건팀, 환경안전팀)에 대한 문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란?

- 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모든 조치와 제도를 의미합니다.
- ② 고객 및 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와 제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가스안전, 식품위생)

전담부서란?

- ① '안전보건환경팀', '환경안전팀' 등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의미합니다.
- ② 해당 부서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소방, 환경 등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③ 노무·총무·관리부 등에서 안전보건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가 안전보건업무가 아니므로 '아니오'에 응답하십시오.

문 6-1. 이 현장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① 있음 → 문 6-2로 이동 ② 없음 → 문 7로 이동
문 6-2. 이 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부서장 포함)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6-3. 이 부서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임원급(이사, 상무 등) ② 관리자급(부장, 팀장 등) ③ 평직원(대리, 주임, 사원 등) ④ 기타()
문 6-4. 이 부서 직원 중 산업안전 업무만을 전담(100%)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6-5. 이 부서 직원 중 산업보건 업무만을 전담(100%)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 문 8로 이동

문 7. 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1. 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조금이라도 수행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있으면, 총 몇 명입니까? (없으면 0명으로 기재하고, 문 8로 이동)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7-2.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전체 업무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얼마입니까?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

문 8.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셨습니다습니까?

- ① 선임 → 문 8-1로 이동
- ② 위탁 대행 → 문 9로 이동
- ③ 선임 + 위탁 대행 → 문 8-1로 이동
- ④ 선임 안 함 → 문 9로 이동

문 8-1.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8-2. 전체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8-3. 전체 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 업무만을 전담(100%)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8-4. 산업안전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전체 업무에서 산업안전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얼마입니까? 해당 직원이 2명 이상이면, 산업안전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

문 9.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셨습니다습니까?

- ① 선임 → 문 9-1로 이동
- ② 위탁 대행 → 문 10으로 이동
- ③ 선임 + 위탁 대행 → 문 9-1로 이동
- ④ 선임 안 함 → 문 10으로 이동

문 9-1. 선임한 보건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9-2. 전체 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9-3. 전체 보건관리자 중 산업보건 업무만을 전담(100%)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문 9-4. 산업보건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전체 업무에서 산업보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얼마입니까? 해당 직원이 2명 이상이면, 산업보건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

C. 안전보건 관리실태: 3) 안전 규정 및 절차

문 10. 이 현장에는 문서화 된 안전보건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 11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 12로 이동

문 11. 다음은 이 현장의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11-1. 우리 현장은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2. 우리 현장의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C. 안전보건 관리실태: 4) 안전시설과 장비

문 12. 다음은 이 현장의 안전시설과 장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12-1. 우리 현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장비,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 안전보건 관리실태: 5) 안전보건활동

문 1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들어본 적 없음 → 문 17로 이동
-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은 모름 → 문 14로 이동
- ③ 내용과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 → 문 14로 이동
- ④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음 → 문 14로 이동

문 14. 이 현장에서 최근 1년간 위험성평가를 한번이라도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 14-1로 이동
- ② 없음 → 문 14-2로 이동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
<p>문 14-1. 이 현장에서 최근 1년간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정기평가) ② 유해·위험요인도 변동될 때마다 실시 (수시평가) ③ 월 주 일 단위로 실시 (상시평가) ④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 <p>→ 문 15로 이동</p>	<p>문 14-2. 이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개만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험성평가를 할 만큼의 위험요인이 없다 ②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 ③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이 너무 어렵다 ④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⑤ 기타(직접 기입) <p>→ 문 17로 이동</p>

문 15. 다음 중, 최근 1년간(1년이 안된 현장은 해당 기간 동안)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분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사업주/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
- ②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③ 외부 전문가
- ④ 관리감독자(관리자)
- ⑤ 일반근로자(작업자)
- ⑥ 협력업체 관계자
- ⑦ 그 외 (직접 기입)

문 16. 다음은 이 현장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문 16-1. [문 15에서 '⑤ 일반근로자(작업자)'를 선택한 경우만] 우리 현장 근로자들은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2. 우리 현장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3. 우리 현장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항상 문서로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4. 우리 현장은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견한 위험 요인을 교육 시 또는 업무 시작 전에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준다.(예: 톨박스미팅)	①	②	③	④	⑤
문 16-5. 위험성평가가 우리 현장의 안전 및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7. 다음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는 제도임

문 17-1. 이 현장은 최근 1년(1년이 안된 현장은 해당 기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17-2로 이동
-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이지만 실시하지 않음 → 문 18로 이동
- ③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님 → 문 18로 이동
- ④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모름 → 문 18로 이동

문 17-2. [문 17-1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 17-3. [문 17-1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문 17-4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 17-5로 이동
- ③ 결과상 후속 조치가 필요 없었음 → 문 17-5로 이동

문 17-4. [문 17-3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는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복수 응답 가능).

원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말씀해주시시오.

- ① 유해요인의 제거
- ② 시설 및 설비 설치 또는 개선(예: 국소배기의 설치)
- ③ 개인 보호구 지급
- ④ 건강진단 실시
- ⑤ 기타 (작업 기입)

문 17-5. 작업환경측정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⑤ 매우 도움이 된다

문 18. 다음은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 특수건강진단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함

문 18-1. 이 현장은 최근 1년(1년이 안된 현장은 해당 기간) 동안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18-2로 이동
- ② 해당 근로자가 있지만 실시하지 않음 → 문 19로 이동
- ③ 해당 근로자 없음 → 문 19로 이동
- ④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모름 → 문 19로 이동

문 18-2. [문 18-1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조치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 문 18-3으로 이동
- ② 없었음 → 문 18-5로 이동

문 18-3. [문 18-2에서 '① 있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문 18-4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 18-5로 이동
- ③ 후속 조치 대상자가 없었음 → 문 18-5로 이동

문 18-4. [문 18-3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는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복수 응답 가능).

- ① 작업장소 변경
- ② 작업 전환
- ③ 근무시간 단축
- ④ 야간근로 제한
- ⑤ 작업환경측정
- ⑥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 ⑦ 기타(작업 기립)

문 18-5. 특수건강진단이 근로자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⑤ 매우 도움이 된다

C. 안전보건 관리실태: 6) 안전보건교육

문 19. 다음 중 **최근 1년(1년이 안된 현장은 해당 기간) 동안** 이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고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한 교육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
- 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③ 채용 시 교육(일용직, 단기 계약직 포함)
- ④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부서 및 직무 변경, 새로운 설비 또는 장비 도입 시)
- ⑤ 특별교육(법정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대상)
- ⑥ 실시한 적 없음 → **문 22로 이동**

문 20. 다음 중 **최근 1년(1년이 안된 현장은 해당 기간) 동안** 이 현장에서 실시한 안전 보건 교육 내용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교육
- ② 비상 대응 훈련(예: 사고 발생 시 비상탈출 방법)
- ③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교육
- ④ 실시한 적 없음

문 21. 다음은 이 현장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21-1. 우리 현장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1-2. 우리 현장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은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2.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이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일용직 포함) 중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예.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 **문 23로 이동**
- ② 아니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습니다. → **문 24로 이동**

문 23.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이 현장에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

구분	예	아니오
문 23-1.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예: 해당국 언어 또는 그림)으로 안전보건 교육 실시	①	②
문 23-2.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예: 해당국 언어 또는 그림)으로 안전보건 표지 부착	①	②

C. 안전보건 관리실태: 7) 근로자 참여

문 24. 다음은 이 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24-1. 우리 현장은 정기적으로 근로자(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작업장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 24-2. 우리 현장은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5. 다음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참여를 위한 제도 및 활동입니다. 이 중 이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② 안전보건협의체
-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④ 안전보건관련 소모임 활동
- ⑤ 안전보건 게시판
- ⑥ 그 외 (직접 기입)
- ⑦ 없음 → 문 26으로 이동

문 25-1. 이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 26. 다음은 작업중지권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문 26-1. 이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권(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까?	①	②
문 26-2. 이 현장에서 최근 3년간 안전 때문에 근로자가 작업중단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②

C. 안전보건 관리실태: 8) 관리자

문 27. 다음은 이 현장의 관리자(예: 부서장, 반장, 팀장, 조장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평소 관리자들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에 가장 적절한 것의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27-1. 우리 현장의 관리자들은 안전보건에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7-2. 우리 현장의 관리자들은 안전보건 관리를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7-3. 우리 현장의 관리자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 안전보건 관리실태: 9) 현장실천

문 28. 다음은 이 현장의 안전보건 실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28-1. 우리 현장에서는 위험한 일을 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절차를 알려주고 위험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문 28-2. 우리 현장의 작업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8-3.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항상 안전 절차 및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8-4.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를 잘 이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D. 직무스트레스

문 29. 아래는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입니다. 각 요인이 이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지 말씀해주시요.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시요.

항목	예	아니오
직무 스트레스 위험요인		
문 29-1.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①	②
문 29-2.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신체적 폭력	①	②
문 29-3.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성폭력·성희롱	①	②
문 29-4.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①	②
문 29-5.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신체적 폭력	①	②
문 29-6.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성폭력·성희롱	①	②
문 29-7. 시간 압박	①	②
문 29-8. 고용의 불안정성	①	②

문 30.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이 현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말씀해주시요. 1명이라도 있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시요.

항목	예	아니오
문 30-1. 장시간 노동	①	②
문 30-2.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①	②
문 30-3.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만)	①	②
문 30-4. 정밀기계 조작 작업	①	②

문 31. 다음은 사업장에서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입니다. 이 중 이 현장에서 **최근 3년간** 시행하신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요(복수 응답 가능). 본사 직원과 일용직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해서 응답해주시요.

항목	본사 직원	일용직
문 30-1. 직무 스트레스 요인 위험성 평가	①	②
문 30-2.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검사	①	②
문 30-3. 직무 스트레스 관련 교육	①	②
문 30-4. 심리상담 지원	①	②
문 30-5.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 신고 제도	①	②
문 30-6. 직무 스트레스 발생 시 휴게시간 혹은 휴가 부여	①	②
문 30-7. 선택적 근로 시간제	①	②
문 30-8. 재택/원격 근무제	①	②
문 30-9. 건강증진 프로그램	①	②
문 30-10. 그 외 (직접 기입)	①	②
문 30-11. 없음	①	②

E. 하청사 지원

문 32. 귀 현장에는 하도급업체(하청, 협력사, 파트너사,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 33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 35로 이동

문 33. [문 32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다음은 귀 현장의 하도급업체(하청, 협력사, 파트너사, 전문건설업체)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33-1. 우리 회사는 본 현장의 하도급 계약시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3-2. 우리 회사는 본 현장의 하도급 계약시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3-3. 우리 회사는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3-4. 우리 회사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3-5. 우리 회사는 하도급업체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4. [문 32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다음 중 최근 1년(1년이 안된 현장은 해당 기간) 동안, 이 현장에서 하도급업체(하청, 협력사, 파트너사, 전문건설업체)의 안전보건을 위해 시행한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 ② 작업장 순회 점검
-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 장소 또는 교육자료 제공)
- ④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⑥ 휴게실 등 위생시설 제공
- ⑦ 안전보건 조치 확인 및 시정 요구
- ⑧ 안전보건 자료 및 정보 제공
- ⑨ 월하청 합동 안전보건 점검
- ⑩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및 검토
- ⑪ 협력사 근로자 작업증지권 보장
- ⑫ 그 외(직접 기입)
- ⑬ 없음

문 35. 귀 현장의 원청(도급업체)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36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 38-1로 이동

문 36. [문 35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다음은 귀 현장의 원청(도급업체)에 관한 문항입니다. 원청(도급업체)이 여러 개인 경우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36-1. 원청(도급업체)은 계약시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6-2. 원청(도급업체)은 계약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확인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6-3. 우리 회사와 원청(도급업체)은 직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6-4. 원청(도급업체)은 우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6-5. 원청(도급업체)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7. [문 35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다음 중 최근 1년(1년이 안된 현장은 해당 기간) 동안, 도급(원청)업체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시행한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 ② 작업장 순회 점검
-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 장소 또는 교육자료 제공)
- ④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⑤ 정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⑥ 휴게실 등 위생시설 제공
- ⑦ 안전보건 조치 확인 및 시정 요구
- ⑧ 안전보건 자료 및 정보 제공
- ⑨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점검
- ⑩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및 검토
- ⑪ 협력사 근로자 작업증지권 보장
- ⑫ 그 외(직접 기입)
- ⑬ 없음

F.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자

문 38. 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원

문 39. 현재 기성공정을 산출 시점에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항목별로 얼마입니까?

※ 세부항목의 구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2023.10.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항목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문 39-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문 39-2. 안전시설비 등						
문 39-3. 보호구 등						
문 39-4. 안전보건진단비 등						
문 39-5. 안전보건교육비 등						
문 39-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문 39-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문 39-8. 본사사용비						
총합계						

G. 외부지원 및 규제

문 40. 다음 중 이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가장 큰 걸림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3개 골라 주십시오.

항목	1위	2위	3위
1) 경영진의 관심 부족	①	②	③
2) 예산 부족	①	②	③
3) 작업 일정, 생산 목표, 매출 또는 이익	①	②	③
4) 근로자의 인식 부족	①	②	③
5) 안전보건 담당자의 인원 또는 시간 부족	①	②	③
6) 안전보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7) 과도한 행정 업무	①	②	③
8) 법적 요건	①	②	③

문 41. 이 현장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영역을 다음 중에서 **모든**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일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② 위험성평가
- ③ 작업환경 개선
- ④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컨설팅
- 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⑥ 안전장치 및 보호구 컨설팅
- ⑦ 건강증진 컨설팅
- ⑧ 안전문화 측정 및 향상 방안 제시
- ⑨ 인간공학적 작업 자세 및 작업 환경 평가
- ⑩ 그 외 일반 안전보건 컨설팅
- ⑪ 재정지원사업
- ⑫ 기타(직접 기입)
- ⑬ 없음

문 42.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고용노동부 감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42-1. 이 현장은 최근 1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장이 2024년 8월 이후에 설립된 경우에는 설립된 시점부터 2025년 8월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있다 → 문 42-2로 이동
- ② 없다 → 문 43으로 이동

문 42-2. [문 42-1에서 '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 현장의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 43. 다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43-1. 이 현장은 최근 1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거나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43-2로 이동
- ② 없다 → 문 44로 이동

문 43-2. [문 43-1에서 '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이나 자료가 이 현장의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 44.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예: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문 46으로 이동
- ② 거의 모른다 → 문 45로 이동
- ③ 조금 안다 → 문 45로 이동
- ④ 잘 안다 → 문 45로 이동

문 45. [문 44에서 '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예: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45-1. 현장의 안전보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45-2. 우리 현장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 45-3. 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 45-4.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5-5. 우리 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 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문 48로 이동
- ② 거의 모른다 → 문 47로 이동
- ③ 조금 안다 → 문 47로 이동
- ④ 잘 안다 → 문 47로 이동

문 47. [문 46에서 '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47-1. 현장의 안전보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47-2. 우리 현장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 47-3. 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 47-4.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7-5. 우리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 다음 중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을 1개 선택해주시시오.

- ① 사업주 집체교육
- ② 전문가 방문 컨설팅
- ③ 가이드 및 해설서
- ④ 온라인 영상자료
- ⑤ 필요 없음

부록 3. 문항별 참고사항

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A. 사업체 특성	1	근로자 수 (성별*외국인*상용/임시 및일용) + 55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수정(문1에 '상용/임시및일용'과 '성별'로 구분해 질문) • 상용 및 기타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자 수 표는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표에서 차용
	2	최근 3년간 경영 상황 (일반 조사표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추가 • ESENER Q400, 독일의 GDA W15B902를 기반으로 수정 및 개발 • 건설업 조사표에는 불포함
	3	안전보건 투자액 변화 (일반 조사표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추가 • 건설업 조사표에는 불포함
	4	노동조합 유무 (일반 조사표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차 조사 문5
B. 위험 요인	5-A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차 조사 문14-B • '위험존재' 에 대한 정의 추가 • 응답지를 5점척도에서 유무로 수정(ESENER 참고)
	5-B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수정(문14-A에 고온과 저온 구분, 다습/폭염/한파 추가)
	5-C	생/화학물질 관련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차 조사 문14-C
	5-D	기계, 전기, 기타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차 조사 문14-D
C. 안전보건 관리실태	6-1	경영진 안전의지: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수정(문17-1에 '기회가 있을때마다' 추가)
	6-2	경영진 안전의지: 안전보건에 적극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교체(문17-2의 '우선순위', 문17-3의 '중요하게 여김' 삭제 후 '투자'로 수정)
2)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7-1 ~7-5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유무/인원/직급/전담 직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수정(문6에 산업안전보건 업무 정의 추가)
	8-1	(전담부서 없을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 직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수정(문7에서 직급 삭제)

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2) 안전보건관리 운영조직	8-2	(전담부서 없을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 직원 업무 비중	• 새로 추가
	9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 여부	• 문항수정(문8-1의 선임과 문9-1의 위탁 여부를 통합하여 응답지 구성)
	9-1	선임된 안전관리자 수	• 10차 문8-1
	9-2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 수	• 새로 추가
	9-3	안전관리자 중 전담 직원 수	• 새로 추가
	9-4	안전관리자 겸임 직원 업무 비중	• 새로 추가
	10	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 여부	• 문항수정(문8-2의 선임과 문9-2의 위탁 여부를 통합하여 응답지 구성)
	10-1	선임된 보건관리자 수	• 문항수정(10차 문8-2 문항 수정)
	10-2	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수	• 새로 추가
	10-3	보건관리자 중 전담 직원 수	• 새로 추가
	10-4	보건관리자 겸임 직원 업무 비중	• 새로 추가
3)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	1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수	• 건설업 조사표에는 불포함 • 문11의 유무에서 인원수 추가
	12	문서화된 규정과 절차 유무	• 새로 추가(ESENER Q155 참고)
	13-1	규정과 절차: 정기적 공지	• 문항교체 ('문17-11, 체계적 안전 규정 및 절차' 삭제 후, ESENER Q156 참조하여 개발)
	13-2	규정과 절차: 실질적 도움	• 문항 수정 (문17-12의 '사고 예방에' 삭제)
4)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14-1	시설, 장비 충분히 구비	• 문항수정(문17-13에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충분히' 추가)
5) 안전보건활동	15	위험성평가 인지여부	• 새로 추가
	16	최근 1년간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 문항수정(위험성 평가 정의 삭제)
	16-1	위험성평가 실시 유형	• 문항수정(문15 정기 실시 여부, 실시 유형 질문: 고용노동부 2023 위험성평가 안내서 참고)

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5) 안전보건활동	16-2	위험성평가 미 실시 이유	• 문항수정(문15-1의 응답지 중 '위험성을 이미 잘 알고 있다'를 '위험성평가를 할 만큼의 위험요인이 없다'로 수정)
	17	위험성평가 참여 주체	• 문항수정(문15-2-1, 문15-2-2를 내부참여자 세분화, 일반근로자 추가)
	18-1	개선책 마련 시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 새로 추가 (ESENER Q258 참조)
	18-2	위험성평가: 실질적인 후속조치 정도	• 문15-2-3에서 '위험성 감소 노력'을 '후속조치'로 수정 • ESENER Q259를 기반으로 수정
	18-3	위험성평가: 문서 작성	• ESENER Q257를 기반으로 수정 및 개발
	18-4	위험성평가: 툴박스미팅	• 새로 추가
	18-5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향상 도움	• 새로 추가
	19-1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 문항수정(1차조사 문22-1에 '대상이지만 실시 안 한 경우' 응답지 추가) • 작업환경측정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 참고
	19-2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에게 공유	• 새로 추가
	19-3	작업환경측정: 후속조치 여부	• 문항수정(1차조사 문22-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노력'을 '후속조치'로 수정 • 응답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참고
	19-4	작업환경측정: 구체적 후속조치	• 새로 추가 • 응답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참고
	19-5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에 도움 여부	• 새로 추가
	20-1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 문항수정(문21-1에 '대상이지만 실시 안 한 경우' 응답지 추가) • 특수건강검진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참고
	20-2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 대상자 유무 및 인원	• 문항수정(문21-2의 사후조치 대상에 C, D등급 표기 추가)

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5) 안전보건활동	20-3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조치 실시 여부	• 문항수정(문21-3의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후속조치 여부'로 수정)
	20-4	특수건강진단: 구체적인 후속조치	• 새로 추가 • 응답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참고
	20-5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에 도움 여부	• 새로 추가
6) 안전보건교육	21	안전보건교육: 실시한 교육 유형(시기)	• 새로 추가 • 교육 유형 응답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참고
	22	안전보건교육: 교육 내용	• 새로 추가
	23-1	안전보건교육: 필요한 정보 충분히 제공 정도	• 문항수정(10차 문17-9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수정)
	23-2	안전보건교육: 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 정도	• 10차 조사 문17-10
	24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무	• 새로 추가 • ESENER Q104 참고
	25-1 25-2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 가능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표지 부착	• 새로 추가
7) 근로자 참여	26-1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의견 요청	• 문항수정(10차조사 문17-6의 근로자에 '또는 근로자 대표' 추가)
	26-2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직원의 의견 적극적 수용	• 문항교체(문17-7 '작업장 안전 제안 시스템 유무', 문17-8 '제안에 성의있게 대응' 삭제하고 교체함)
	27	안전보건 참여 제도 및 활동	• 새로 추가 •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협의체 (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7) 근로자 참여	27-1	안전보건 참여 제도 및 활동 활용 정도	• 새로 추가
	28-1	작업중지권: 내용 고지 여부	• 문항수정(문17-16의 '작업 거부 여부'에서 '작업중지권 고지 여부'로 수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참고
	28-2	작업중지권: 1년간 시행 여부	• 새로 추가
8) 관리자	29-1	관리자: 자신의 책임 인지 여부	• 문항 수정(10차 문18-1의 '역할과 책임'에서 '역할' 삭제)
	29-2	관리자: 지식, 기술 보유 여부	• 문항 수정(10차 문18-2의 '역량'을 '지식과 기술'로 수정)
	29-3	관리자: 회사의 안전보건업무 지원 여부	• 문항수정(10차 문18-3의 '역할과 책임'을 '안전보건 업무'로 수정)
9) 현장실천	30-1	안전보건실태: 위험한 일을 하기 전 방법/절차 고지	• 10차
	30-2	안전보건실태: 작업장 정리정돈	• 10차 조사 문17-14
	30-3	안전보건실태: 작업 절차 및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	• 10차 조사 문17-15
	30-4	안전보건실태: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	• 새로 추가
D. 직무스트레스	31-1 31-2 31-3	조직 외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폭력·성희롱)	• 문항교체(10차 문16-1-1의 '고객대상 감정노동'을 세분화)
	31-4	조직 내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 문항교체(10차 문16-1-5의 '괴롭힘' 삭제)
	31-5	조직 내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신체적 폭력)	• 문16-1-6

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D. 직무스트레스	31-6	조직 내부인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성폭력·성희롱)	• 10차조사 문16-1-7
	31-7	시간 압박	• 10차조사 문16-1-3
	31-8	고용의 불안정성	• 10차조사 문16-1-4
	32-1	장시간 노동	• 10차조사 문16-1-2
	32-2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 새로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참고
	32-3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만)	• 새로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참고
	32-4	정밀기계 조작 작업	• 새로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참고
	33	직무스트레스 감소 노력	• 새로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참고
E. 하청 지원	34	원청여부	• 문항수정(문23에서 '협력업체 및 해당 근로자 수' 삭제)
	35-1	협력사: 계약시 충분한 안전보건예산 반영	• 새로 추가
	35-2	협력사: 계약시 안전보건역량 확인	• 새로 추가
	35-3	협력사: 정기적 소통	• 10차 조사 문24-1
	35-4	협력사: 안전건강을 위한 충분한 지원	• 10차 조사 문24-2
	35-5	협력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기간 보장	• 새로 추가

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E. 하청 지원	36	협력사: 안전보건을 위해 시행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5조 등 참고
	37 38	원청 기업 유무 및 사업장 내 위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수정(문25의 '원청 기업 유무'와 '사업장 내 위치 여부' 따로 질문)
	39-1	원청 기업: 계약시 충분한 안전보건예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추가
	39-2	원청 기업: 계약시 안전보건역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추가
	39-3	원청 기업: 정기적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수정(문26-1에 '우리 회사와' 추가)
	39-4	원청 기업: 안전건강을 위한 충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차 조사 문26-2
	39-5	원청 기업: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기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추가
	40	원청 기업: 안전보건을 위해 시행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5조 등 참고
F. 외부지원 및 규제	41	안전보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수정(문28에서 '기타' 삭제) • ESENER Q263 참고
	42	도움 받고 싶은 안전보건 향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수정(문29 응답지에서 '작업환경 개선', '재정지원사업' 추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관리'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로 수정)
	43	고용노동부 감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30
	43-1	고용노동부 감독 실질적 도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30-1
	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 제공 혹은 지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31 • 독일의 GDA W15B608를 참고

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F. 외부지원 및 규제	44-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 제공 혹은 지원의 실질적 도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31-1 •독일의 GDA W15B608를 참고
	45 47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 해처벌법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32, 문33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추가
	46-1 48-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 해처벌법 : 쉽게 이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의 GDA W15B201_1를 참고하여 수정 및 개발
	46-2 48-2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 해처벌법 : 적용 어려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의 GDA W15B201_5를 참고하여 수정 및 개발
	46-3 48-3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 해처벌법 : 준수 비용 높음	
	46-4 48-4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 해처벌법 : 처벌 수준 적정	
	46-5 48-5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 해처벌법 : 실질적 도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32-1, 문33-1
	49	선호하는 법적 의무 제공 방식	

문항 범주	문번	문항	참고사항
건설	1-1 ¹	공사 시작일	문항 유지
	1-2 ¹	공사 종료일	문항 유지
	1-3 ¹	공사 금액	문항 유지
	1-4 ¹	발주처	문항 유지
	1-5 ¹	기성공정율	문항 수정
	2 ¹	1. 공사 종류 2. 공정	문항 유지
	38 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금액	문항 유지
	39 ¹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문항 유지

주1. 건설 설문에만 포함되는 문항

부록 4. 10차 조사와의 비교표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1	<p>문1) 응답하시는 현재 시점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p> <p>※ 귀하의 사업체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모두 종사와 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특수형태종사자(대리기사, 보편판매인 등)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용역업체에서 파견 나와 일하는 사람 제외(정소인, 경비인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근로자수</th> <th>명</th> </tr> </thead> <tbody> <tr> <td>1-1) 전체 종사자</td> <td><input type="text"/></td> <td>명</td> </tr> <tr> <td>1-2) 만 55세 이상 근로자</td> <td><input type="text"/></td> <td>명</td> </tr> <tr> <td>1-3) 외국인 근로자(국적 기준, 불법체류자 포함)</td> <td><input type="text"/></td> <td>명</td> </tr> <tr> <td>1-4) 여성 근로자</td> <td><input type="text"/></td> <td>명</td> </tr> </tbody> </table>	구분	근로자수	명	1-1) 전체 종사자	<input type="text"/>	명	1-2) 만 55세 이상 근로자	<input type="text"/>	명	1-3) 외국인 근로자(국적 기준, 불법체류자 포함)	<input type="text"/>	명	1-4) 여성 근로자	<input type="text"/>	명	<p>문 1. 응답하시는 현재 시점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p> <p>1) 상용: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2) 임시 및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는 자(임시 및 일용근로자),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로 등을 받는 자(특수고용 근로자 포함) ※ 제외: 협력업체(도급업체) 직인, 특수고용 근로자 외의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받은 자(파견·용역업체인 경우 의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포함)는 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함 3) 외국인: 합법 또는 불법 모두 포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내국인</th> <th colspan="3">외국인</th> <th rowspan="2">전체</th> </tr> <tr> <th>상용</th> <th>임시 및 일용</th> <th>계</th> <th>상용</th> <th>임시 및 일용</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남</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여</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계</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만 55세 이상 근로자</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명</td> </tr> </tbody> </table>	구분	내국인			외국인			전체	상용	임시 및 일용	계	상용	임시 및 일용	계	남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 55세 이상 근로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p>•‘상용,임시및일용’과 ‘성별’로 구분해 조사하여 보다 자세한 자료 획득, 사전조사 결과, 응답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음 확인함</p> <p>•상용, 임시및일용 근로자의 정의는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표’에서 차용하여,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함</p>
구분	근로자수	명																																																														
1-1) 전체 종사자	<input type="text"/>	명																																																														
1-2) 만 55세 이상 근로자	<input type="text"/>	명																																																														
1-3) 외국인 근로자(국적 기준, 불법체류자 포함)	<input type="text"/>	명																																																														
1-4) 여성 근로자	<input type="text"/>	명																																																														
구분	내국인			외국인			전체																																																									
	상용	임시 및 일용	계	상용	임시 및 일용	계																																																										
남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 55세 이상 근로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2	<p>4) 귀사에서는 다음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해당 제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도입되었습니까?</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문항</th> <th rowspan="2">시행 여부</th> <th colspan="2">① 시행중인 경우(안) 코로나 때문에 도입</th> </tr> <tr> <th>예</th> <th>아니오</th> </tr> </thead> <tbody> <tr> <td>4-1) 재택/원격 근무제도 (근로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근무하는 제도)</td> <td>① 시행 중 ② 시행 가능하나 시행안함 ③ 업무 특성상 시행 불가능</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4-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작 그리고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경찰할 수 있는 제도)</td> <td>① 시행 중 ② 시행 가능하나 시행안함 ③ 업무 특성상 시행 불가능</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4-3)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업주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시간의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td> <td>① 시행 중 ② 시행 가능하나 시행안함 ③ 업무 특성상 시행 불가능</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r> </tbody> </table>	문항	시행 여부	① 시행중인 경우(안) 코로나 때문에 도입		예	아니오	4-1) 재택/원격 근무제도 (근로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근무하는 제도)	① 시행 중 ② 시행 가능하나 시행안함 ③ 업무 특성상 시행 불가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작 그리고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경찰할 수 있는 제도)	① 시행 중 ② 시행 가능하나 시행안함 ③ 업무 특성상 시행 불가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3)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업주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시간의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① 시행 중 ② 시행 가능하나 시행안함 ③ 업무 특성상 시행 불가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사례 및 일부 이동(문 33)</p> <p>•코로나 이후 재택/원격 근무제도 실시가 줄어들었으며, 그 외 근무제도는 직무스트레스 감소방안(문 33)으로 이동하여 질문함</p>																																												
문항	시행 여부			① 시행중인 경우(안) 코로나 때문에 도입																																																												
		예	아니오																																																													
4-1) 재택/원격 근무제도 (근로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근무하는 제도)	① 시행 중 ② 시행 가능하나 시행안함 ③ 업무 특성상 시행 불가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작 그리고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경찰할 수 있는 제도)	① 시행 중 ② 시행 가능하나 시행안함 ③ 업무 특성상 시행 불가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3)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업주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시간의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① 시행 중 ② 시행 가능하나 시행안함 ③ 업무 특성상 시행 불가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3		<p>문 2. 매출, 영업이익, 집행예산 등을 고려할 때, 최근 3년간의 귀 사업장의 경영 상황을 평가해 주십시오.</p> <p>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p> <p>문 3. 작년에 비해, 올해 귀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예산(근로자 1인당 기준)의 변화가 있나요?</p> <p>① 작년에 비해 감소했음 ② 작년과 거의 동일함 ③ 작년에 비해 증가했음</p>	<p>•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경영상태가 안전보건관리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대두됨</p> <p>•ESENER Q400, 독일의 GDA W15B902를 기반으로 수정 개발</p> <p>•건설업 조사표에는 불포함</p>
4	<p>문5) 귀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p> <p>※ '노동조합의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p> <p>① 예 ② 아니오</p>	<p>문 4. 귀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p> <p>① 예 ② 아니오</p>	<p>•건설업 조사표에는 불포함</p>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p>문14)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귀 사업체는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요인으로 인한 유해-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위험하지 않음</th> <th>별로 위험하지 않음</th> <th>보통임</th> <th>약간 위험함</th> <th>매우 위험함</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6">A.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td> </tr> <tr> <td>1) 소음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 고온 또는 저온 작업 환경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3) 심한 진동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4) 밀폐작업 관련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5) 미끄럼, 헛디딤, 떨어질 등의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6) 붕괴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7) 방사선, 유해광선 등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 colspan="6">B.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요인</td> </tr> <tr> <td>8) 장시간 서 있는 자세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9)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10)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11) 무거운 중량 취급 관련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12) 반복적인 동작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 colspan="6">C. 생/화학물질 관련 위험요인</td> </tr> <tr> <td>13)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14) 피부 접촉 시 위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15) 유해한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16)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17) 화염, 뜨거운 액체, 냉각 가스 등 열 관련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 colspan="6">D. 기계, 전기, 기타 위험 요인</td> </tr> <tr> <td>18)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 끼임 등)</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19) 전압, 감전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0) 차량에 의한 위험</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위험하지 않음	별로 위험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위험함	매우 위험함	A.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						1) 소음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2) 고온 또는 저온 작업 환경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3) 심한 진동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4) 밀폐작업 관련 위험	①	②	③	④	⑤	5) 미끄럼, 헛디딤, 떨어질 등의 위험	①	②	③	④	⑤	6) 붕괴 위험	①	②	③	④	⑤	7) 방사선, 유해광선 등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B.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요인						8) 장시간 서 있는 자세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9)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10)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11) 무거운 중량 취급 관련 위험	①	②	③	④	⑤	12) 반복적인 동작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C. 생/화학물질 관련 위험요인						13)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	①	②	③	④	⑤	14) 피부 접촉 시 위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15) 유해한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16)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17) 화염, 뜨거운 액체, 냉각 가스 등 열 관련 위험	①	②	③	④	⑤	D. 기계, 전기, 기타 위험 요인						18)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 끼임 등)	①	②	③	④	⑤	19) 전압, 감전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20) 차량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p>문 5. 아래는 사업장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및 환경적 특성입니다. 다음 각 항목이 현재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존재하면 '예',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오'로 응답해주세요. 해당 인원이 적어도, 자주 발생하지 않아도, 현재 조치를 하고 있어 위험성이 낮더라도, 존재하면 '예'라고 응답해주세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예</th> <th>아니오</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A.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요인</td> </tr> <tr> <td>문 5-1. 장시간 서 있는 자세</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2.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3. 장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4. 무거운 중량 취급</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5. 반복적인 동작</td> <td>①</td> <td>②</td> </tr> <tr> <td colspan="3">B.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td> </tr> <tr> <td>문 5-6. 소음</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7. 실내 고온 작업 환경</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8. 실내 저온 작업 환경</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9. 심한 진동</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10. 다습한 작업 환경</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11. 여름철 폭염</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12. 겨울철 한파</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13. 밀폐작업</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14. 미끄럼, 헛디딤, 떨어질 등의 위험</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15. 붕괴 위험</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16. 방사선, 유해광선</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17. 차량에 의한 위험(예: 교통사고)</td> <td>①</td> <td>②</td> </tr> <tr> <td colspan="3">C. 생/화학물질 관련 위험요인</td> </tr> <tr> <td>문 5-18.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19. 피부 접촉 시 위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20. 유해한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21.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22. 화염, 뜨거운 액체, 냉각 가스 등 열 관련 위험</td> <td>①</td> <td>②</td> </tr> <tr> <td colspan="3">D. 기계, 전기, 기타 위험요인</td> </tr> <tr> <td>문 5-23.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 끼임)</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5-24. 전압에 의한 위험(예: 감전, 화상)</td> <td>①</td> <td>②</td> </tr> </tbody> </table>	항목	예	아니오	A.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요인			문 5-1. 장시간 서 있는 자세	①	②	문 5-2.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①	②	문 5-3. 장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	①	②	문 5-4. 무거운 중량 취급	①	②	문 5-5. 반복적인 동작	①	②	B.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			문 5-6. 소음	①	②	문 5-7. 실내 고온 작업 환경	①	②	문 5-8. 실내 저온 작업 환경	①	②	문 5-9. 심한 진동	①	②	문 5-10. 다습한 작업 환경	①	②	문 5-11. 여름철 폭염	①	②	문 5-12. 겨울철 한파	①	②	문 5-13. 밀폐작업	①	②	문 5-14. 미끄럼, 헛디딤, 떨어질 등의 위험	①	②	문 5-15. 붕괴 위험	①	②	문 5-16. 방사선, 유해광선	①	②	문 5-17. 차량에 의한 위험(예: 교통사고)	①	②	C. 생/화학물질 관련 위험요인			문 5-18.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	①	②	문 5-19. 피부 접촉 시 위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	①	②	문 5-20. 유해한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①	②	문 5-21.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①	②	문 5-22. 화염, 뜨거운 액체, 냉각 가스 등 열 관련 위험	①	②	D. 기계, 전기, 기타 위험요인			문 5-23.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 끼임)	①	②	문 5-24. 전압에 의한 위험(예: 감전, 화상)	①	②	<p>변경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시문 및 응답지 수정: 해외조사(ESENER) 분석, 예비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판단이 어려운 5점 응답지보다는 존재유무로 응답지를 수정함. 단, 위험의 범위, 빈도, 조치 여부 등 에 대한 기준을 지시문에 제시함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 지구온난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다습을 추가하고, 2) 실내의 고온, 저온을 추가하고, 3) 차량에 의한 위험을 '기계, 전기, 기타 위험 요인'에서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으로 이동
항목	전혀 위험하지 않음	별로 위험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위험함	매우 위험함																																																																																																																																																																																																																																										
A.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																																																																																																																																																																																																																																															
1) 소음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2) 고온 또는 저온 작업 환경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3) 심한 진동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4) 밀폐작업 관련 위험	①	②	③	④	⑤																																																																																																																																																																																																																																										
5) 미끄럼, 헛디딤, 떨어질 등의 위험	①	②	③	④	⑤																																																																																																																																																																																																																																										
6) 붕괴 위험	①	②	③	④	⑤																																																																																																																																																																																																																																										
7) 방사선, 유해광선 등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B.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요인																																																																																																																																																																																																																																															
8) 장시간 서 있는 자세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9)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10)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11) 무거운 중량 취급 관련 위험	①	②	③	④	⑤																																																																																																																																																																																																																																										
12) 반복적인 동작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C. 생/화학물질 관련 위험요인																																																																																																																																																																																																																																															
13)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	①	②	③	④	⑤																																																																																																																																																																																																																																										
14) 피부 접촉 시 위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15) 유해한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16)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17) 화염, 뜨거운 액체, 냉각 가스 등 열 관련 위험	①	②	③	④	⑤																																																																																																																																																																																																																																										
D. 기계, 전기, 기타 위험 요인																																																																																																																																																																																																																																															
18)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 끼임 등)	①	②	③	④	⑤																																																																																																																																																																																																																																										
19) 전압, 감전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20) 차량에 의한 위험	①	②	③	④	⑤																																																																																																																																																																																																																																										
항목	예	아니오																																																																																																																																																																																																																																													
A.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요인																																																																																																																																																																																																																																															
문 5-1. 장시간 서 있는 자세	①	②																																																																																																																																																																																																																																													
문 5-2.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①	②																																																																																																																																																																																																																																													
문 5-3. 장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	①	②																																																																																																																																																																																																																																													
문 5-4. 무거운 중량 취급	①	②																																																																																																																																																																																																																																													
문 5-5. 반복적인 동작	①	②																																																																																																																																																																																																																																													
B. 작업환경 관련 위험요인																																																																																																																																																																																																																																															
문 5-6. 소음	①	②																																																																																																																																																																																																																																													
문 5-7. 실내 고온 작업 환경	①	②																																																																																																																																																																																																																																													
문 5-8. 실내 저온 작업 환경	①	②																																																																																																																																																																																																																																													
문 5-9. 심한 진동	①	②																																																																																																																																																																																																																																													
문 5-10. 다습한 작업 환경	①	②																																																																																																																																																																																																																																													
문 5-11. 여름철 폭염	①	②																																																																																																																																																																																																																																													
문 5-12. 겨울철 한파	①	②																																																																																																																																																																																																																																													
문 5-13. 밀폐작업	①	②																																																																																																																																																																																																																																													
문 5-14. 미끄럼, 헛디딤, 떨어질 등의 위험	①	②																																																																																																																																																																																																																																													
문 5-15. 붕괴 위험	①	②																																																																																																																																																																																																																																													
문 5-16. 방사선, 유해광선	①	②																																																																																																																																																																																																																																													
문 5-17. 차량에 의한 위험(예: 교통사고)	①	②																																																																																																																																																																																																																																													
C. 생/화학물질 관련 위험요인																																																																																																																																																																																																																																															
문 5-18.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	①	②																																																																																																																																																																																																																																													
문 5-19. 피부 접촉 시 위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	①	②																																																																																																																																																																																																																																													
문 5-20. 유해한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①	②																																																																																																																																																																																																																																													
문 5-21.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①	②																																																																																																																																																																																																																																													
문 5-22. 화염, 뜨거운 액체, 냉각 가스 등 열 관련 위험	①	②																																																																																																																																																																																																																																													
D. 기계, 전기, 기타 위험요인																																																																																																																																																																																																																																															
문 5-23.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 끼임)	①	②																																																																																																																																																																																																																																													
문 5-24. 전압에 의한 위험(예: 감전, 화상)	①	②																																																																																																																																																																																																																																													
<p>문17) 다음은 귀 사업체의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우리 회사 경영진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매우 강조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 경영진 :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 귀 사업체가 의사, 공적으로 본사에 결정권이 있는 경우는 본사의 결정권에 대해 응답하십시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에 우선순위를 둔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3)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 경영진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매우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 경영진 :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 귀 사업체가 의사, 공적으로 본사에 결정권이 있는 경우는 본사의 결정권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에 우선순위를 둔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p>문 6. 다음은 귀 사업장의 경영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p>※ 경영진 :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귀 사업장이 의사, 공적으로 본사에 해당 결정권이 있는 경우는 본사의 결정권에 대해 응답하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문 6-1. 우리 회사 경영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6-2.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보건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6-1. 우리 회사 경영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6-2.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보건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의견 수렴에 따라, 관찰 가능한 행동 위주로 문항을 수정하고, 문항의 반복성을 줄이기 위해 문항 수를 2개로 수정함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 경영진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매우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 경영진 :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 귀 사업체가 의사, 공적으로 본사에 결정권이 있는 경우는 본사의 결정권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에 우선순위를 둔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6-1. 우리 회사 경영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6-2. 우리 회사 경영진은 안전보건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p>문6) 귀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예: 안전보건팀, 환경안전팀)가 있습니까?</p> <p>※ 전담 부서란 '안전보건환경팀', '환경안전팀' 등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의미합니다. ※ 해당 부서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소방, 환경 등 타법에서 경하고 있는 관련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노무·총무·관리부 등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아니오'에 응답하십시오.</p> <p>① 예 ② 아니오 → 문7로 이동</p> <p>◆ 다음에 해당 하는 직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u>없으면 0</u>명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414 518 990 710"> <thead> <tr> <th>구분</th> <th>근로자 수</th> </tr> </thead> <tbody> <tr> <td>6-1) 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수(부서장 포함) ※ 안전담당부서, 보건담당부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있는 경우는 전체 직원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td> <td><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td> </tr> <tr> <td>6-2) 산업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수 ※ 산업보건업무, 소방 업무 등을 함께 한다면 <u>선택이 아니고</u>,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입니다.</td> <td><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td> </tr> <tr> <td>6-3) 산업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수 ※ 산업안전업무 등과 함께 한다면 <u>선택이 아니고</u>,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입니다.</td> <td><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td> </tr> </tbody> </table> <p>문6-4)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분(부서의 장)의 직급은 무엇입니까?</p> <p>※ 안전담당부서, 보건담당부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전체 부서중 총괄하는 분의 직급을 답답해 주십시오.</p> <p>① 일원(이사, 상무 등) ② 대리(부장, 팀장 등) ③ 평직원(대리, 주임, 사원 등) ④ 기타(직급 기입) → 문8로 이동</p>	구분	근로자 수	6-1) 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수(부서장 포함) ※ 안전담당부서, 보건담당부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있는 경우는 전체 직원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6-2) 산업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수 ※ 산업보건업무, 소방 업무 등을 함께 한다면 <u>선택이 아니고</u> ,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입니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6-3) 산업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수 ※ 산업안전업무 등과 함께 한다면 <u>선택이 아니고</u> ,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입니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p>문 7.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예: 안전보건팀, 환경안전팀)에 대한 문항입니다.</p> <p>☑ 산업안전보건 업무란? 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모든 조치와 제도를 의미합니다. ② 고객 및 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와 제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가스안전, 식품위생)</p> <p>☑ 전담부서란? ① '안전보건환경팀', '환경안전팀' 등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의미합니다. ② 해당 부서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소방, 환경 등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③ 노무·총무·관리부 등에서 안전보건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가 안전보건업무가 아니므로 '아니오'에 응답하십시오.</p> <p>문 7-1. 귀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① 있음 → 문 7-2로 이동 ② 없음 → 문 8로 이동</p> <p>문 7-2. 이 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부서장 포함)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p> <p>문 7-3. 이 부서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일원급(이사, 상무 등) ② 대리자급(부장, 팀장 등) ③ 평직원(대리, 주임, 사원 등) ④ 기타()</p> <p>문 7-4. 이 부서 직원 중 산업안전 업무만을 전담(100%)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p> <p>문 7-5. 이 부서 직원 중 산업보건 업무만을 전담(100%)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 문 9로 이동</p>	<p>•사전조사 결과,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정의 추가</p> <p>•조사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문항의 순서 및 어구를 수정함</p>
구분	근로자 수									
6-1) 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수(부서장 포함) ※ 안전담당부서, 보건담당부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있는 경우는 전체 직원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6-2) 산업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수 ※ 산업보건업무, 소방 업무 등을 함께 한다면 <u>선택이 아니고</u> ,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입니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6-3) 산업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수 ※ 산업안전업무 등과 함께 한다면 <u>선택이 아니고</u> ,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입니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8	<p>문7)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가 없는 경우에 응답하여 주십시오.</p> <p>문7-1) 근로자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가 주된 업무(전체 업무량의 30% 이상)인 직원은 몇 명입니까? 그 중 직급이 가장 높은 분의 직급은 무엇입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627 383 1008 454"> <tr> <td>임원 (소장, 이사, 상무 등)</td> <td>관리자급 (부장, 팀장 등)</td> <td>봉직원 (대리, 주임, 사원 등)</td> <td>기타 (직접 기입)</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able> <p>① 인출 : <input type="text"/>명 → <input type="text"/>명 ② 인출 → <input type="text"/>명 (문7-3)으로 이동</p> <p>문7-2) 사업체 내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할 경우 누가 하십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627 510 1008 582"> <tr> <td>임원 (소장, 이사, 상무 등)</td> <td>관리자급 (부장, 팀장 등)</td> <td>봉직원 (대리, 주임, 사원 등)</td> <td>기타 (직접 기입)</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able> <p>→ (문8)으로 이동</p> <p>◆ 다음에 해당 하는 직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없으면 0명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851 630 1008 662"> <tr> <th>구분</th> <th>근로자 수</th> </tr> <tr> <td>7-3) 산업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수 ※ 산업보건업무, 소방 업무 등을 함께 한다면 전담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입니다.</td> <td><input type="text"/>명</td> </tr> <tr> <td>7-4) 산업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수 ※ 산업안전업무 등과 함께 한다면 전담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입니다.</td> <td><input type="text"/>명</td> </tr> </table>	임원 (소장, 이사, 상무 등)	관리자급 (부장, 팀장 등)	봉직원 (대리, 주임, 사원 등)	기타 (직접 기입)	①	②	③	④	임원 (소장, 이사, 상무 등)	관리자급 (부장, 팀장 등)	봉직원 (대리, 주임, 사원 등)	기타 (직접 기입)	①	②	③	④	구분	근로자 수	7-3) 산업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수 ※ 산업보건업무, 소방 업무 등을 함께 한다면 전담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입니다.	<input type="text"/> 명	7-4) 산업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수 ※ 산업안전업무 등과 함께 한다면 전담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입니다.	<input type="text"/> 명	<p>[전담부서가 없는 경우]</p> <p>문 8. 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질문입니다.</p> <p>문 8-1. 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조금이라도 수행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있으면, 총 몇 명입니까? (없으면 0명으로 기재하고, 문 9으로 이동)</p> <table border="1" data-bbox="1456 414 1635 462"> <tr> <td><input type="text"/>명</td> </tr> </table> <p>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p> <p>문 8-2.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전체 업무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얼마입니까?</p>	<input type="text"/> 명	<p>•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겸임 직원의 직급 질문은 삭제하고, 대신 업무 비중 질문을 추가함</p>
임원 (소장, 이사, 상무 등)	관리자급 (부장, 팀장 등)	봉직원 (대리, 주임, 사원 등)	기타 (직접 기입)																							
①	②	③	④																							
임원 (소장, 이사, 상무 등)	관리자급 (부장, 팀장 등)	봉직원 (대리, 주임, 사원 등)	기타 (직접 기입)																							
①	②	③	④																							
구분	근로자 수																									
7-3) 산업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수 ※ 산업보건업무, 소방 업무 등을 함께 한다면 전담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입니다.	<input type="text"/> 명																									
7-4) 산업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수 ※ 산업안전업무 등과 함께 한다면 전담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입니다.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9	<p>문8) 다음에 해당 하는 직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없으면 0명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403 837 1008 933"> <tr> <th>구분</th> <th>근로자 수</th> </tr> <tr> <td>8-1)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한 직원의 수</td> <td><input type="text"/>명</td> </tr> <tr> <td>8-2) 고용노동부에 '보건관리자'로 선임 신고한 직원의 수</td> <td><input type="text"/>명</td> </tr> </table> <p>문9) 아래의 항목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여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03 973 1008 1077"> <tr> <th>항 목</th> <th>예</th> <th>아니오</th> </tr> <tr> <td>9-1) 귀 사업체는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있으십니까?</td> <td>①</td> <td>②</td> </tr> <tr> <td>9-2) 귀 사업체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있으십니까?</td> <td>①</td> <td>②</td> </tr> </table> <p>※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체 → 문(10)으로 이동 ※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49인 이하인 사업체 → 문(11)로 이동</p>	구분	근로자 수	8-1)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한 직원의 수	<input type="text"/> 명	8-2) 고용노동부에 '보건관리자'로 선임 신고한 직원의 수	<input type="text"/> 명	항 목	예	아니오	9-1) 귀 사업체는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있으십니까?	①	②	9-2) 귀 사업체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있으십니까?	①	②	<p>문 9.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셨습니까?</p> <p>① 선임 → 문 9-1으로 이동 ② 위탁 대행 → 문 10으로 이동 ③ 선임 + 위탁 대행 → 문 9-1으로 이동 ④ 선임 안 함 → 문 10으로 이동</p> <p>문 9-1.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몇 명입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1456 933 1635 965"> <tr> <td><input type="text"/>명</td> </tr> </table> <p>문 9-2. 전체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 직원은 몇 명입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1456 965 1635 997"> <tr> <td><input type="text"/>명</td> </tr> </table> <p>문 9-3. 전체 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 업무만을 전담(100%)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1456 997 1635 1029"> <tr> <td><input type="text"/>명</td> </tr> </table> <p>문 9-4. 산업안전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전체 업무에서 산업안전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얼마입니까? 해당 직원이 2명 이상이면, 산업안전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고.</p> <p>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p>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p>•응답의 편의를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문항을 구분하고, 선임 및 위탁 문항을 통합함</p> <p>•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정규직과 전담 직원 수, 업무비중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문 9-2와 9-3, 9-4 및 문 10-2와 10-3, 10-4 추가</p>					
구분	근로자 수																									
8-1)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한 직원의 수	<input type="text"/> 명																									
8-2) 고용노동부에 '보건관리자'로 선임 신고한 직원의 수	<input type="text"/> 명																									
항 목	예	아니오																								
9-1) 귀 사업체는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있으십니까?	①	②																								
9-2) 귀 사업체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있으십니까?	①	②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10		<p>문 10.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십니까?</p> <p>① 선임 → 문 10-1로 이동 ② 위탁 대행 → 문 12로 이동 ③ 선임 + 위탁 대행 → 문 10-1로 이동 ④ 선임 안 함 → 문 11로 이동</p> <p>문 10-1. 선임한 보건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명</p> <p>문 10-2. 전체 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명</p> <p>문 10-3. 전체 보건관리자 중 산업보건 업무만을 전담(100%)으로 수행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명</p> <p>문 10-4. 산업보건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전체 업무에서 산업보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얼마입니까? 해당 직원이 2명 이상이면, 산업보건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 → 문 12로 이동</p>										
11	<p>문11) 【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49인 이하인 사업체만 응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십니까?</p> <p>① 선임함 ② 선임하지 않음</p>	<p>문 11.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십니까? 선임하셨다면 몇 명입니까?</p> <p>① 예 _____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명) ② 아니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규모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한다는 표현이 거짓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문항 표현을 수정함 •선임한 직원 수 추가 									
12	<p>3) 아래의 항목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여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05 986 1010 1088"> <thead> <tr> <th>항 목</th> <th>예</th> <th>아니오</th> </tr> </thead> <tbody> <tr> <td>13-1) 귀 사업체는 KOSHA-MS(구, KOSHA 18001) 인증을 받으셨습니까?</td> <td>①</td> <td>②</td> </tr> <tr> <td>13-2) 귀 사업체는 ISO 45001(구, OHSAS 18001) 인증을 받으셨습니까?</td> <td>①</td> <td>②</td> </tr> </tbody> </table>	항 목	예	아니오	13-1) 귀 사업체는 KOSHA-MS(구, KOSHA 18001)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①	②	13-2) 귀 사업체는 ISO 45001(구, OHSAS 18001)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①	②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자료로 대체 가능하여 제외함
항 목	예	아니오										
13-1) 귀 사업체는 KOSHA-MS(구, KOSHA 18001)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①	②										
13-2) 귀 사업체는 ISO 45001(구, OHSAS 18001)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①	②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13	<p>문17) 다음은 귀 사업체의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1) 우리 회사는 체계적인 안전규정 및 절차를 가지고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12) 우리 회사의 안전규정 및 절차는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우리 회사는 체계적인 안전규정 및 절차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회사의 안전규정 및 절차는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p>문 12. 귀 사업장에는 문서화 된 안전보건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까?</p> <p>① 예 → 문 13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14로 이동</p> <p>문 13. 다음은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문 13-1.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준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13-2.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13-1.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2.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문서화된 규정 절차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17-11)을 문 12로 수정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에 관한 정기적 정보제공 여부 문항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으로 문 13-1 추가 (ESENER Q156 참조) •문 13-2 어구 수정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우리 회사는 체계적인 안전규정 및 절차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회사의 안전규정 및 절차는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13-1.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2.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p>문17) 다음은 귀 사업체의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3) 우리 회사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우리 회사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p>문 14. 다음은 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시설과 장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문 14-1. 우리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장비,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14-1. 우리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장비,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하고, 질문 의도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충분히' 추가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우리 회사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14-1. 우리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장비,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p>문15) 위에서 응답하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2020년 1년간 위험성의 정도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문서로 남기는 작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p> <p>☑ 2020년 1월 이후 설립한 사업체는 사업체가 설립된 이후 시점부터 1년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실시한 적 없음 ② 정기적은 아니지만 실시한 적 있음 ③ 정기적으로 실시함 → 문16-2로 이동</p> <p>문15-1) 귀 사업체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의 정도를 평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위험성을 이미 잘 알고 있다 ②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다 ③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이 너무 어렵다 ④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⑤ 기타(직접 기입) → 문16-2로 이동</p> <p>문15-2) 귀 사업체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21 662 996 869"> <thead> <tr> <th>문항</th> <th>응답</th> </tr> </thead> <tbody> <tr> <td>1) 위험성 평가는 누가 수행하였습니까?</td> <td>① 내부 직원 ② 외부 전문가 ③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td> </tr> <tr> <td>2)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였습니까?</td> <td>① 예 ② 아니오</td> </tr> <tr> <td>3)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였습니까?</td> <td>① 전혀 노력하지 않음 ② 별로 노력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약간 노력함 ⑤ 많이 노력함</td> </tr> </tbody> </table>	문항	응답	1) 위험성 평가는 누가 수행하였습니까?	① 내부 직원 ② 외부 전문가 ③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2)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였습니까?	① 전혀 노력하지 않음 ② 별로 노력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약간 노력함 ⑤ 많이 노력함	<p>문 1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p> <p>① 들어본 적 없음 → 문 19로 이동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름 → 문 16으로 이동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문 16으로 이동 ④ 잘 알고 있음 → 문 16으로 이동</p> <p>문 16. 귀 사업장은 최근 1년간 위험성평가를 한번이라도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음 → 문 16-1로 이동 ② 없음 → 문 16-2로 이동</p> <table border="1" data-bbox="1019 574 1646 829"> <thead> <tr> <th>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th> <th>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문 16-1. 귀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다음 중 언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십니까?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td> <td>문 16-2. 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개만 응답)?</td> </tr> <tr> <td>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정기평가) ② 유해-위험요인도 변동될 때마다 실시 (수시평가) ③ 월/주 일 단위로 실시 (상시평가) ④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td> <td>① 위험성평가를 할 만큼의 위험요인이 없다 ②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 ③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이 너무 어렵다 ④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⑤ 기타(직접 기입) → 문 19로 이동</td> </tr> </tbody> </table> <p>문 17. 다음 중, 최근 1년간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분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p> <p>① 사업주/안전관리책임자 ②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③ 외부 전문가 ④ 관리감독자(관리자) ⑤ 일반근로자(작업자) ⑥ 협력업체 관계자 ⑦ 그 외 (직접 기입)</p>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	문 16-1. 귀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다음 중 언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십니까?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문 16-2. 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개만 응답)?	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정기평가) ② 유해-위험요인도 변동될 때마다 실시 (수시평가) ③ 월/주 일 단위로 실시 (상시평가) ④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	① 위험성평가를 할 만큼의 위험요인이 없다 ②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 ③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이 너무 어렵다 ④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⑤ 기타(직접 기입) → 문 19로 이동	<p>•위험성평가의 중요성에 따라 문항 추가함 •문 15: 소규모 사업장 포함으로 인지 정도부터 질문 필요하여 추가하자는 의견 •문 16-1: 고용노동부 2023 위험성평가 안내서 참고하여, 실시 유형 질문 추가 •문 16-2: 전문가 의견 수렴 바탕으로 미실시 이유 수정 •문 17: 참여자 범주 세분화 (근로자 등)</p>																						
문항	응답																																					
1) 위험성 평가는 누가 수행하였습니까?	① 내부 직원 ② 외부 전문가 ③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2)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였습니까?	① 전혀 노력하지 않음 ② 별로 노력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약간 노력함 ⑤ 많이 노력함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																																					
문 16-1. 귀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다음 중 언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십니까?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문 16-2. 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개만 응답)?																																					
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정기평가) ② 유해-위험요인도 변동될 때마다 실시 (수시평가) ③ 월/주 일 단위로 실시 (상시평가) ④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	① 위험성평가를 할 만큼의 위험요인이 없다 ②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 ③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이 너무 어렵다 ④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⑤ 기타(직접 기입) → 문 19로 이동																																					
<p>15</p>	<p>문 18. 다음은 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1019 1077 1646 1295">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 <th>보통이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문 18-1. [문 17에서 '⑤ 일반근로자(작업자)'를 선택한 경우만]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18-2.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18-3.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항상 문서로 작성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18-4.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견한 위험 요인을 교육 시 또는 업무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준다.(예: 토크스미팅)</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18-5. 위험성평가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 18-1. [문 17에서 '⑤ 일반근로자(작업자)'를 선택한 경우만]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2.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3.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항상 문서로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4.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견한 위험 요인을 교육 시 또는 업무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준다.(예: 토크스미팅)	①	②	③	④	⑤	문 18-5. 위험성평가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p>•문 18: 실질적인 수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문항 추가 (ESENER Q257~Q259 참조)</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 18-1. [문 17에서 '⑤ 일반근로자(작업자)'를 선택한 경우만]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2.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3.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항상 문서로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4.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견한 위험 요인을 교육 시 또는 업무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준다.(예: 토크스미팅)	①	②	③	④	⑤																																	
문 18-5. 위험성평가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p>문22) 다음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p> <p>문22-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셨습니까?</p> <p>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 공정 없음 ④ 해당 여부를 모르겠음</p> <p>→ 문23로 이동</p> <p>문22-2)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인자의 노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습니까?</p> <p>① 전혀 하지 않음 ② 했지만 많이 부족함 ③ 열심히 한 편임 ④ 매우 열심히 함</p>	<p>문 19. 다음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질문입니다.</p> <p>*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는 제도임</p> <p>문 19-1. 귀 사업장은 최근 1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p> <p>① 예 → 문 19-2로 이동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이지만 실시하지 않음 → 문 20으로 이동 ③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님 → 문 20으로 이동 ④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모름 → 문 20으로 이동</p> <p>문 19-2. [문 19-1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p> <p>① 예 ② 아니오</p> <p>문 19-3. [문 19-1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셨습니까?</p> <p>① 예 → 문 19-4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19-5로 이동 ③ 결과상 후속 조치가 필요 없었음 → 문 19-5로 이동</p> <p>문 19-4. [문 19-3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는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복수 응답 가능). 원래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말씀해주시시오.</p> <p>① 유해요인의 제거 ② 시설 및 설비 설치 또는 개선(예: 국소배기의 설치) ③ 개인 보호구 지급 ④ 건강진단 실시 ⑤ 기타 (직접 기입)</p> <p>문 19-5. 작업환경측정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p>	<p>•작업환경측정 정의: 소규모 업체를 위해 정의 추가(산안법 제125조 제1항 참고)</p> <p>•문 19-1: 기존 문 22-1의 응답지 2와 3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응답지 수정</p> <p>•실질적인 시행여부 점검을 위해 문 19-2, 19-4, 19-5 추가</p> <p>•문 19-4 응답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참고</p>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18	<p>문21) 다음은 귀 사업체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특수건강진단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함</p> </div> <p>문21-1) 2020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까?</p> <p>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 근로자 없음 → 문22)로 이동 ④ 해당 여부를 모르겠음 → 문22)로 이동</p> <p>문21-2) [문21-1에서 1번을 응답한 경우만]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조치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몇 명이었는지 기입해 주십시오.</p> <p>① 예 → <input type="text"/> 명 ② 아니오 → 문22)로 이동</p> <p>문21-3) [문21-2에서 1번을 응답한 경우만]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조치 대상자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p> <p>① 전혀 하지 않음 ② 했지만 많이 부족함 ③ 열심히 한 편임 ④ 매우 열심히 함</p>	<p>문 20. 다음은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질문입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특수건강진단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p> </div> <p>문 20-1. 귀 사업장은 최근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p> <p>① 예 → 문 20-2로 이동 ② 해당 근로자가 있지만 실시하지 않음 → 문 20-5로 이동 ③ 해당 근로자 없음 → 문 21로 이동 ④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모름 → 문 21로 이동</p> <p>문 20-2. [문 20-1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조치 대상자(C, D등급)가 있었습니까?</p> <p>① 있었음 → 문 20-3으로 이동 ② 없었음 → 문 20-5로 이동</p> <p>문 20-3. [문 20-2에서 '예' 있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셨습니까?</p> <p>① 예 → 문 20-4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20-5로 이동 ③ 후속 조치 대상자가 없었음 → 문 20-5로 이동</p> <p>문 20-4. [문 20-3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는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요. (복수 응답 가능)</p> <p>① 작업장소 변경 ② 작업 전환 ③ 근무시간 단축 ④ 야간근로 제한 ⑤ 작업환경개선 ⑥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⑦ 기타(직접 기입)</p> <p>문 20-5. 특수건강진단이 근로자의 건강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p>	<p>•특수건강검진의 정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추가(산안법 제130조 참고) •문 20-1: 기존 문 21-1의 응답지 2와 3의 구분을 명확하기 위한 응답지 수정 •문 20-2: 사후관리대상자를 명확히 정의(C, D 등급). 단 인원수는 불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으로 삭제 •실질적인 시행여부 점검을 위해 문 20-4(응답지는 산안법 제132조 참고)와 문 20-5 추가</p>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21		<p>문 24.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음 중 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일용직 포함) 중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p> <p>① 예.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 문 25로 이동 ② 아니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습니다. → 문 26으로 이동</p> <p>문 25.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음 중 귀 사업장에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p> <table border="1" data-bbox="1021 459 1644 571"> <thead> <tr> <th>구분</th> <th>예</th> <th>아니오</th> </tr> </thead> <tbody> <tr> <td>문 25-1.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예: 해당국 언어 또는 그림)으로 안전보건 교육 실시</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25-2.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예: 해당국 언어 또는 그림)으로 안전보건 표지 부착</td> <td>①</td> <td>②</td> </tr> </tbody> </table>	구분	예	아니오	문 25-1.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예: 해당국 언어 또는 그림)으로 안전보건 교육 실시	①	②	문 25-2.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예: 해당국 언어 또는 그림)으로 안전보건 표지 부착	①	②	<p>•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관련 문항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결과 추가 (ESENER Q104 참고)</p>																																	
구분	예	아니오																																											
문 25-1.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예: 해당국 언어 또는 그림)으로 안전보건 교육 실시	①	②																																											
문 25-2.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예: 해당국 언어 또는 그림)으로 안전보건 표지 부착	①	②																																											
22	<p>문17) 다음은 귀 사업체의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21 619 1021 762">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6) 우리 회사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7) 우리 회사에는 작업장 안전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8) 우리 회사는 안전에 대한 구성원의 제안에 성의있게 대응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p>문10)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체만 응답] 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까?</p> <p>① 운영하고 있음 ②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문12로 이동 ③ 잘 모르겠음</p> <p>문10-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이행 여부에 대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p> <p>① 심의·의결한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함 ② 다음 회의 시까지 진행 상황은 파악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음 ③ 일반적으로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종료 처리 함 → 문12로 이동</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우리 회사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에는 작업장 안전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는 안전에 대한 구성원의 제안에 성의있게 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p>문 26. 다음은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1021 619 1644 730">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문 26-1. 우리 회사는 정기적으로 근로자(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작업장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26-2. 우리 회사는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p>문 27. 다음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참여를 위한 제도 및 활동입니다. 이 중 귀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p> <p>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안전보건협의회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④ 안전보건관련 소모임 활동 ⑤ 안전보건 게시판 ⑥ 그 외 (직접 기입) ⑦ 없음 → 문 28로 이동</p> <p>문 27-1. 귀 사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26-1. 우리 회사는 정기적으로 근로자(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작업장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 26-2. 우리 회사는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p>•근로자 참여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문항 확대함</p> <p>•문 26-1: 근로자에 '또는 근로자 대표' 추가</p> <p>•문 26-2: 어구 수정</p> <p>•기존 문 17-7 '작업장 안전 제안 시스템 유무'는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어 삭제함</p> <p>•문 27: 산보위 이외의 추가적인 근로자 참여 활동(산안법 3조, 24조, 제75조 참고)을 추가</p> <p>•문 27-1: 근로자 참여제도 활용도 질문 추가</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우리 회사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에는 작업장 안전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는 안전에 대한 구성원의 제안에 성의있게 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26-1. 우리 회사는 정기적으로 근로자(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작업장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 26-2. 우리 회사는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p>문17) 다음은 귀 사업체의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21 1137 1021 1225">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6) 우리 회사 근로자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우리 회사 근로자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문 28. 다음은 작업중지권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1021 1121 1644 1225"> <thead> <tr> <th>문항</th> <th>예</th> <th>아니오</th> </tr> </thead> <tbody> <tr> <td>문 28-1. 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권(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까?</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28-2. 귀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안전 때문에 근로자가 작업중단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까?</td> <td>①</td> <td>②</td> </tr> </tbody> </table>	문항	예	아니오	문 28-1. 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권(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까?	①	②	문 28-2. 귀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안전 때문에 근로자가 작업중단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②	<p>•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 고지 여부 및 사용 경험 여부를 파악하자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p> <p>•문 28-1, 28-2로 수정 및 추가(산안법 제52조 참고)</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우리 회사 근로자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예	아니오																																											
문 28-1. 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권(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까?	①	②																																											
문 28-2. 귀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안전 때문에 근로자가 작업중단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②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24	<p>문18) [문12의 관리감독자 수가 1명 이상인 경우만 응답] 다음은 귀 사업체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평소 관리감독자들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에 가장 적절한 것의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우리 회사 관리감독자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고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 우리 회사 관리감독자들은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3) 우리 회사는 관리감독자들이 역할과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4) 우리 회사 관리감독자들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p>문12) 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는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명 (없으면 0명으로 기재)</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 관리감독자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 관리감독자들은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관리감독자들이 역할과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 관리감독자들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p>문 29. 다음은 귀 사업장의 관리자(예: 부사장, 반장, 담당, 조장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평소 관리자들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에 가장 적절한 것의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문 29-1.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안전보건에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잘 알고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29-2.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안전보건 관리를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29-3. 우리 회사는 관리자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29-1.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안전보건에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9-2.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안전보건 관리를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9-3. 우리 회사는 관리자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p>변경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 29: 사전조사 결과 바탕으로 '관리자'로 수정 •문 29-1: 어구 수정('역할과 책임'을 '책임'으로) •문 29-2: 문항수정 ('역량'을 '지식과 기술'로) •문 29-3: 어구수정 ('역할과 책임'을 '안전보건 업무'로) •기존 문 12: 관리감독자수 정보는 활용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삭제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 관리감독자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 관리감독자들은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관리감독자들이 역할과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 관리감독자들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29-1.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안전보건에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9-2.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안전보건 관리를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9-3. 우리 회사는 관리자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p>문17) 다음은 귀 사업체의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4) 우리 회사는 회의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14) 우리 회사의 작업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15) 우리 회사 근로자들은 항상 안전 절차 및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우리 회사는 회의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회사의 작업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회사 근로자들은 항상 안전 절차 및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한다.	①	②	③	④	⑤	<p>문 30. 다음은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문 30-1. 우리 회사에서는 위험한 일을 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절차를 알려주고 위험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30-2. 우리 회사의 작업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30-3.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항상 안전 절차 및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30-4.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를 잘 이행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30-1. 우리 회사에서는 위험한 일을 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절차를 알려주고 위험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문 30-2. 우리 회사의 작업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0-3.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항상 안전 절차 및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0-4.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를 잘 이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p>•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문 30-1(TBM 활동), 문 30-4(시정지시 이행) 추가</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우리 회사는 회의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회사의 작업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회사 근로자들은 항상 안전 절차 및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30-1. 우리 회사에서는 위험한 일을 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절차를 알려주고 위험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문 30-2. 우리 회사의 작업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0-3.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항상 안전 절차 및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0-4.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를 잘 이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26	<p>문16) 다음은 귀 사업체 종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p> <p>문16-1)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각 스트레스 요인이 귀사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아래 5단계 중 하나로 응답해 주십시오.</p> <p>문16-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각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거나 피해를 낮추기 위해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아래 5단계 중 하나로 응답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항목</th> <th colspan="5">16-1) 심각도</th> <th colspan="5">16-2) 관리노력 정도</th> </tr> <tr> <th>전혀 심각하지 않음</th> <th>별로 심각하지 않음</th> <th>보통임</th> <th>약간 심각함</th> <th>매우 심각함</th> <th>전혀 노력하지 않음</th> <th>별로 노력하지 않음</th> <th>보통임</th> <th>약간 노력함</th> <th>많이 노력함</th> </tr> </thead> <tbody> <tr> <td>1) 고객대상 감정노동</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r> <tr> <td>2) 장시간 노동</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r> <tr> <td>3) 시간 압박</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r> <tr> <td>4) 고용의 불안정성</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r> <tr> <td>5) 직장 내 괴롭힘</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r> <tr> <td>6) 직장 내 신체적 폭력</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r> <tr> <td>7)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 </tr> </tbody> </table> <p>문2) 귀사는 교대근무제를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2-1) 이문</p> <p>문2-1) 전체 종사자(문 1-1에서 응답한) 중 교대근무를 하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 명 또는 전체 종사자 중 [] %</p> <p>문3) 전체 종사자 중 야간작업을 하는 종사자는 얼마나 됩니까? * 야간작업을 하는 근무자만? 최근 6개월 간 월 10시 ~ 다음날 아침 6시 사이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한 종사자 [] 명 또는 전체 종사자 중 [] %</p>	항목	16-1) 심각도					16-2) 관리노력 정도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심각함	매우 심각함	전혀 노력하지 않음	별로 노력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노력함	많이 노력함	1) 고객대상 감정노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장시간 노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시간 압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고용의 불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내 괴롭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직장 내 신체적 폭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p>문 31. 아래는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입니다. 각 요인이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지 말씀해주시시오.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예</th> <th>아니오</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직무 스트레스 위험요인</td> </tr> <tr> <td>문 31-1.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31-2.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신체적 폭력</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31-3.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성폭력·성희롱</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31-4.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31-5.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신체적 폭력</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31-6.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성폭력·성희롱</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31-7. 시간 압박</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31-8. 고용의 불안정성</td> <td>①</td> <td>②</td> </tr> </tbody> </table> <p>문 3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높은 작업이므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말씀해주시시오. 1명이라도 있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예</th> <th>아니오</th> </tr> </thead> <tbody> <tr> <td>문 32-1. 장시간 노동</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32-2.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32-3.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만)</td> <td>①</td> <td>②</td> </tr> <tr> <td>문 32-4. 정밀기계 조작 작업</td> <td>①</td> <td>②</td> </tr> </tbody> </table> <p>문 33. 다음은 사업장에서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입니다. 이 중 귀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시행하신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무 스트레스 요인 위험성 평가 ②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검사 ③ 직무 스트레스 관련 교육 ④ 심리상담 지원 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 신고 제도 ⑥ 직무 스트레스 발생 시 휴게시간 혹은 휴가 부여 ⑦ 선택적 근로 시간제 ⑧ 재택/원격 근무제 ⑨ 건강증진 프로그램 ⑩ 그 외 (직접 기입) ⑪ 없음 	항목	예	아니오	직무 스트레스 위험요인			문 31-1.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①	②	문 31-2.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신체적 폭력	①	②	문 31-3.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성폭력·성희롱	①	②	문 31-4.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①	②	문 31-5.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신체적 폭력	①	②	문 31-6.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성폭력·성희롱	①	②	문 31-7. 시간 압박	①	②	문 31-8. 고용의 불안정성	①	②	항목	예	아니오	문 32-1. 장시간 노동	①	②	문 32-2.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①	②	문 32-3.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만)	①	②	문 32-4. 정밀기계 조작 작업	①	②	<p>•서비스업 등의 확대를 고려하여, 스트레스 문항을 보강함</p> <p>•문 31: 기존의 감정노동과 직장내 괴롭힘 문항을 조직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수정함</p> <p>•문 32: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애 예방조치'에 따른 위험 요인을 별도로 질문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참조)</p> <p>•기존 문항 문 2, 문 3은 문 32로 대체하고 삭제함</p> <p>•문 33: 사업장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노력에 대한 문항 추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산안법 시행령 제41조 참고)</p>
	항목		16-1) 심각도					16-2) 관리노력 정도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심각함	매우 심각함	전혀 노력하지 않음	별로 노력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노력함	많이 노력함																																																																																																																																							
	1) 고객대상 감정노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장시간 노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시간 압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고용의 불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내 괴롭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직장 내 신체적 폭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예	아니오																																																																																																																																																
직무 스트레스 위험요인																																																																																																																																																		
문 31-1.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①	②																																																																																																																																																
문 31-2.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신체적 폭력	①	②																																																																																																																																																
문 31-3. 조직 외부인(예, 고객, 거래처, 원청 직원)의 성폭력·성희롱	①	②																																																																																																																																																
문 31-4.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언어적 폭력 또는 무리한 요구	①	②																																																																																																																																																
문 31-5.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신체적 폭력	①	②																																																																																																																																																
문 31-6. 내부 직원(예, 상사, 동료) 간 성폭력·성희롱	①	②																																																																																																																																																
문 31-7. 시간 압박	①	②																																																																																																																																																
문 31-8. 고용의 불안정성	①	②																																																																																																																																																
항목	예	아니오																																																																																																																																																
문 32-1. 장시간 노동	①	②																																																																																																																																																
문 32-2.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①	②																																																																																																																																																
문 32-3.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만)	①	②																																																																																																																																																
문 32-4. 정밀기계 조작 작업	①	②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p>문23) 귀 사업체의 사업체 내에 상주하며 연간 계약을 하는 협력업체(파트너사, 하청업체)가 있습니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협력업체(파트너사, 하청업체)란? 명칭은 사업체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사업주(도급인, 원청)로부터 해당 업무를 받은 사업주(수급인, 하청)</p> <p>※ 사업체 내에 상주란? 1년 이상 계약을 통해 사업체 내에 상주하면서 사업체와 계약한 일을 하는 경우 (누리, 검사, 물건의 납품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체에 들어와 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p> <p>※ 해당 업체(들)의 총 근로자수 상주하는 근로자가 매일 변동이 있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략적인 월 평균 인원 수</p> </div> <p>① 있음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문항</th> <th>응답</th> </tr> <tr> <td>23-1) 사내 상주하며 연간 계약 협력업체 수</td> <td><input type="text"/> 개사</td> </tr> <tr> <td>23-2) 해당 업체(들)의 총 근로자 수</td> <td><input type="text"/> 명</td> </tr> </table> <p>② 없음 → 문25로 이동</p> <p>문24) [문23에서 1번을 응답한 경우만] 다음은 협력업체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우리 회사는 안전과 보건에 대해 협력업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문항	응답	23-1) 사내 상주하며 연간 계약 협력업체 수	<input type="text"/> 개사	23-2) 해당 업체(들)의 총 근로자 수	<input type="text"/>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안전과 보건에 대해 협력업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p>문 34. 귀 사업장에는 연간 계약을 하는 협력사(파트너사, 하청업체)가 있습니까?</p> <p>※ 협력사(파트너사, 하청업체)란? 명칭은 사업체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사업주(도급인, 원청)로부터 해당 업무를 받은 사업주(수급인, 하청)</p> <p>① 있음 → 문 35로 이동 ② 없음 → 문 37로 이동</p> <p>문 35. [문 34에서 '①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다음은 협력사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 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문 35-1. 우리 회사는 협력사 계약시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35-2. 우리 회사는 계약시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확인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35-3. 우리 회사는 협력사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35-4. 우리 회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지원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35-5. 우리 회사는 협력사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보장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p>문 36. [문 34에서 '①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다음 중 최근 1년 기준으로 귀 사업장이 협력사의 안전보건을 위해 시행한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복수 응답 가능).</p> <p>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② 작업장 순회 점검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 장소 또는 교육자료 제공) ④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⑥ 휴게실 등 위생시설 제공 ⑦ 안전보건 조치 확인 및 시정 요구 ⑧ 안전보건 자료 및 정보 제공 ⑨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점검 ⑩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및 검토 ⑪ 협력사 근로자 작업증지권 보장 ⑫ 그 외(직접 기입) ⑬ 없음</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35-1. 우리 회사는 협력사 계약시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2. 우리 회사는 계약시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3. 우리 회사는 협력사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4. 우리 회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5. 우리 회사는 협력사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p>•문 34: 업종 확대에 따라 '사내협력사'를 '연간 계약하는 협력사'로 수정</p> <p>•사전조사결과, 협력사 근로자수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문항 삭제</p> <p>•문 35, 36: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협력사 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 추가(문 35-1, 35-2, 35-5, 36)</p> <p>•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5조 등 참고</p>
문항	응답																																																													
23-1) 사내 상주하며 연간 계약 협력업체 수	<input type="text"/> 개사																																																													
23-2) 해당 업체(들)의 총 근로자 수	<input type="text"/>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안전과 보건에 대해 협력업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35-1. 우리 회사는 협력사 계약시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2. 우리 회사는 계약시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3. 우리 회사는 협력사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4. 우리 회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5. 우리 회사는 협력사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p>문25) 귀 사업체는 거래하는 원청 기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귀 사업체는 원청의 사업체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까?</p> <p>① 거래하는 원청이 있으며, 원청의 사업체 내에 사업체가 있음 ② 거래하는 원청이 있지만, 원청의 사업체와 관계없이 외부에 별도의 사업체가 있음 ③ 없음 → 문27로 이동</p> <p>문26) [문25에서 1~2번을 응답한 경우만] 다음은 원청업체와 관련 문항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21 470 1003 587">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원청(도급업체)은 우리 회사와 안전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 원청(도급업체)은 우리 회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청(도급업체)은 우리 회사와 안전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원청(도급업체)은 우리 회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p>문 37. 귀 사업장은 거래하는 원청(도급업체)이 있습니까?</p> <p>① 예 → 문 38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41로 이동</p> <p>문 38. [문 37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원청(도급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십니까?</p> <p>① 예 ② 아니오</p> <p>문 39. [문 37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다음은 원청(도급업체)와 관련 문항입니다. 거래하는 원청(도급업체)이 여러 개인 경우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1025 534 1646 758">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문 39-1. 원청(도급업체)은 계약시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39-2. 원청(도급업체)은 계약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확인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39-3. 우리 회사와 원청(도급업체)은 직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39-4. 원청(도급업체)은 우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지원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39-5. 원청(도급업체)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보장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p>문 40. [문 37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다음 중 최근 1년 기준으로 원청(도급업체)이 귀 사업장 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시행한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p> <p>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② 작업장 순회 점검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 장소 또는 교육자료 제공) ④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정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⑥ 휴게실 등 위생시설 제공 ⑦ 안전보건 조치 확인 및 시정 요구 ⑧ 안전보건 자료 및 정보 제공 ⑨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점검 ⑩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및 검토 ⑪ 협력사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⑫ 그 외(직접 기입) ⑬ 없음</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39-1. 원청(도급업체)은 계약시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2. 원청(도급업체)은 계약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확인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3. 우리 회사와 원청(도급업체)은 직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4. 원청(도급업체)은 우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5. 원청(도급업체)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p>•문 37, 38: 사내 근무 여부를 별도로 질문</p> <p>•문 39, 40: 원청문항과 동일</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청(도급업체)은 우리 회사와 안전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원청(도급업체)은 우리 회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39-1. 원청(도급업체)은 계약시 안전보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2. 원청(도급업체)은 계약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확인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3. 우리 회사와 원청(도급업체)은 직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4. 원청(도급업체)은 우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5. 원청(도급업체)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29	<p>문27) 귀 사업체에서 2020년, 2021년 발생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산업 재해는 몇 건입니까?</p> <p>※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단순한 분석 자료로만 이용됩니다. 솔직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간은 치료 후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계속양한 경우, 요양기간의 연장된 경우 등 모두를 포함한 전체 요양기간을 말합니다. 응답하시는 시점에 산업재해도 요양 중인 통산자가 있는 경우, 치료 예정기간을 기준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해 발생 연도</th> <th>총 요양기간</th> <th>업무상 사고</th> <th>업무상 질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2020년</td> <td>4일~89일</td> <td><input type="text"/> 건</td> <td><input type="text"/> 건</td> </tr> <tr> <td>90일 이상</td> <td><input type="text"/> 건</td> <td><input type="text"/> 건</td> </tr> <tr> <td>사망</td> <td><input type="text"/> 건</td> <td><input type="text"/> 건</td> </tr> <tr> <td rowspan="3">2021년</td> <td>4일~89일</td> <td><input type="text"/> 건</td> <td><input type="text"/> 건</td> </tr> <tr> <td>90일 이상</td> <td><input type="text"/> 건</td> <td><input type="text"/> 건</td> </tr> <tr> <td>사망</td> <td><input type="text"/> 건</td> <td><input type="text"/> 건</td> </tr> </tbody> </table>	재해 발생 연도	총 요양기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2020년	4일~89일	<input type="text"/> 건	<input type="text"/> 건	90일 이상	<input type="text"/> 건	<input type="text"/> 건	사망	<input type="text"/> 건	<input type="text"/> 건	2021년	4일~89일	<input type="text"/> 건	<input type="text"/> 건	90일 이상	<input type="text"/> 건	<input type="text"/> 건	사망	<input type="text"/> 건	<input type="text"/> 건	삭제		<p>•재해 정보는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 가능하므로 삭제</p>																														
	재해 발생 연도	총 요양기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2020년	4일~89일	<input type="text"/> 건	<input type="text"/> 건																																																							
	90일 이상	<input type="text"/> 건	<input type="text"/> 건																																																							
	사망	<input type="text"/> 건	<input type="text"/> 건																																																							
2021년	4일~89일	<input type="text"/> 건	<input type="text"/> 건																																																							
	90일 이상	<input type="text"/> 건	<input type="text"/> 건																																																							
	사망	<input type="text"/> 건	<input type="text"/> 건																																																							
<p>문28) 다음 중 귀하께서 안전보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세 개만 골라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1순위</th> <th>2순위</th> <th>3순위</th> </tr> </thead> <tbody> <tr> <td>① 경영진의 관심 부족</td> <td>② 예산 부족</td> <td></td> </tr> <tr> <td>③ 작업 일정 또는 생산 목표</td> <td>④ 근로자의 인식 부족</td> <td></td> </tr> <tr> <td>⑤ 안전보건 담당자의 인원 또는 시간 부족</td> <td>⑥ 안전보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td> <td></td> </tr> <tr> <td>⑦ 과도한 행정 업무</td> <td>⑧ 법적 요건</td> <td></td> </tr> <tr> <td>⑨ 기타(직입 기입)</td> <td></td> <td></td> </tr> </tbody> </table>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경영진의 관심 부족	② 예산 부족		③ 작업 일정 또는 생산 목표	④ 근로자의 인식 부족		⑤ 안전보건 담당자의 인원 또는 시간 부족	⑥ 안전보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⑦ 과도한 행정 업무	⑧ 법적 요건		⑨ 기타(직입 기입)			<p>문 41. 다음 중 귀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3개 골라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1위</th> <th>2위</th> <th>3위</th> </tr> </thead> <tbody> <tr> <td>1) 경영진의 관심 부족</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2) 예산 부족</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3) 작업 일정, 생산 목표, 매출 또는 이익</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4) 근로자의 인식 부족</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5) 안전보건 담당자의 인원 또는 시간 부족</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6) 안전보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7) 과도한 행정 업무</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8) 법적 요건</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body> </table>		항목	1위	2위	3위	1) 경영진의 관심 부족	①	②	③	2) 예산 부족	①	②	③	3) 작업 일정, 생산 목표, 매출 또는 이익	①	②	③	4) 근로자의 인식 부족	①	②	③	5) 안전보건 담당자의 인원 또는 시간 부족	①	②	③	6) 안전보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7) 과도한 행정 업무	①	②	③	8) 법적 요건	①	②	③	<p>•응답자 편의를 위해 문항 구조 변경 •예비 조사 결과, 비제조업종 고려하여 '작업 일정 또는 생산 목표'를 '작업 일정, 생산 목표, 매출 또는 이익'으로 수정함 •ESENER Q263 참고</p>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경영진의 관심 부족	② 예산 부족																																																									
③ 작업 일정 또는 생산 목표	④ 근로자의 인식 부족																																																									
⑤ 안전보건 담당자의 인원 또는 시간 부족	⑥ 안전보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⑦ 과도한 행정 업무	⑧ 법적 요건																																																									
⑨ 기타(직입 기입)																																																										
항목	1위	2위	3위																																																							
1) 경영진의 관심 부족	①	②	③																																																							
2) 예산 부족	①	②	③																																																							
3) 작업 일정, 생산 목표, 매출 또는 이익	①	②	③																																																							
4) 근로자의 인식 부족	①	②	③																																																							
5) 안전보건 담당자의 인원 또는 시간 부족	①	②	③																																																							
6) 안전보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7) 과도한 행정 업무	①	②	③																																																							
8) 법적 요건	①	②	③																																																							
<p>문29) 귀사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외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도움을 받고 싶은 전문서비스 영역을 다음 중에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1순위</th> <th>2순위</th> <th>3순위</th> </tr> </thead> <tbody> <tr> <td>①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td> <td>② 작업환경 개선</td> <td></td> </tr> <tr> <td>③ 건강 증진 컨설팅</td> <td>④ 안전장치 및 보호구 컨설팅</td> <td></td> </tr> <tr> <td>⑤ 인간공학적 작업 자세 및 작업 환경 평가</td> <td>⑥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컨설팅</td> <td></td> </tr> <tr> <td>⑦ 안전문화 측정 및 향상 방안 제시</td> <td>⑧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컨설팅</td> <td></td> </tr> <tr> <td>⑧ 그 외 일반 안전보건 컨설팅</td> <td>⑨ 필요 없음</td> <td></td> </tr> <tr> <td>⑨ 기타(직입 기입)</td> <td></td> <td></td> </tr> </tbody> </table>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② 작업환경 개선		③ 건강 증진 컨설팅	④ 안전장치 및 보호구 컨설팅		⑤ 인간공학적 작업 자세 및 작업 환경 평가	⑥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컨설팅		⑦ 안전문화 측정 및 향상 방안 제시	⑧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컨설팅		⑧ 그 외 일반 안전보건 컨설팅	⑨ 필요 없음		⑨ 기타(직입 기입)			<p>문 42.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영역을 다음 중에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p> <table border="1"> <tbody> <tr> <td>① 일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td> </tr> <tr> <td>② 위험성평가</td> </tr> <tr> <td>③ 작업환경 개선</td> </tr> <tr> <td>④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컨설팅</td> </tr> <tr> <td>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td> </tr> <tr> <td>⑥ 안전장치 및 보호구 컨설팅</td> </tr> <tr> <td>⑦ 건강증진 컨설팅</td> </tr> <tr> <td>⑧ 안전문화 측정 및 향상 방안 제시</td> </tr> <tr> <td>⑨ 인간공학적 작업 자세 및 작업 환경 평가</td> </tr> <tr> <td>⑩ 그 외 일반 안전보건 컨설팅</td> </tr> <tr> <td>⑪ 재정지원사업</td> </tr> <tr> <td>⑫ 기타(직입 기입)</td> </tr> <tr> <td>⑬ 없음</td> </tr> </tbody> </table>		① 일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② 위험성평가	③ 작업환경 개선	④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컨설팅	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⑥ 안전장치 및 보호구 컨설팅	⑦ 건강증진 컨설팅	⑧ 안전문화 측정 및 향상 방안 제시	⑨ 인간공학적 작업 자세 및 작업 환경 평가	⑩ 그 외 일반 안전보건 컨설팅	⑪ 재정지원사업	⑫ 기타(직입 기입)	⑬ 없음	<p>•문항어구 수정('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관리'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응답지 추가: 위험성평가; 재정지원사업 추가</p>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② 작업환경 개선																																																									
③ 건강 증진 컨설팅	④ 안전장치 및 보호구 컨설팅																																																									
⑤ 인간공학적 작업 자세 및 작업 환경 평가	⑥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컨설팅																																																									
⑦ 안전문화 측정 및 향상 방안 제시	⑧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컨설팅																																																									
⑧ 그 외 일반 안전보건 컨설팅	⑨ 필요 없음																																																									
⑨ 기타(직입 기입)																																																										
① 일반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② 위험성평가																																																										
③ 작업환경 개선																																																										
④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컨설팅																																																										
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⑥ 안전장치 및 보호구 컨설팅																																																										
⑦ 건강증진 컨설팅																																																										
⑧ 안전문화 측정 및 향상 방안 제시																																																										
⑨ 인간공학적 작업 자세 및 작업 환경 평가																																																										
⑩ 그 외 일반 안전보건 컨설팅																																																										
⑪ 재정지원사업																																																										
⑫ 기타(직입 기입)																																																										
⑬ 없음																																																										
31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p>문30) 귀 사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업체가 2019년 6월 이후에 설립된 경우에는 설립된 시점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있다 ② 없다 → 문31)로 이동</p> <p>문30-1) [문30에서 1번을 응답한 경우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귀사의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p>	<p>문 43.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고용노동부 감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43-1. 귀 사업장은 최근 1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다 → 문 43-2로 이동 ② 없다 → 문 44로 이동</p> <p>문 43-2. [문 43-1에서 '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귀 사업장의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p>	<p>•문 43 어구 수정: '최근 1년 동안'</p>																																				
<p>문31) 귀 사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보제공 또는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업체가 2019년 6월 이후에 설립된 경우에는 설립된 시점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p> <p>① 있다 ② 없다 → 문32)로 이동</p> <p>문31-1) [문31에서 1번을 응답한 경우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보제공 또는 지원이 귀사의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p>	<p>문 44. 다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44-1. 귀 사업장은 최근 1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거나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p> <p>① 있다 → 문 44-2로 이동 ② 없다 → 문 45로 이동</p> <p>문 44-2. [문 44-1에서 '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이나 자료가 귀 사업장의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까?</p> <p>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p>	<p>•문 44 어구 수정: '최근 1년 동안'; '지원을 받거나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활용'</p>																																				
<p>문32) 귀하는 2019년 1월 15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p> <p>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 문33)로 이동 ③ 조금 안다 ④ 잘 안다</p> <p>문32-1) [문32에서 3~4번을 응답한 경우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귀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p> <p>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조금 도움이 된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p>	<p>문 45.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예: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p> <p>① 전혀 모른다 → 문 47로 이동 ② 거의 모른다 → 문 46으로 이동 ③ 조금 안다 → 문 46으로 이동 ④ 잘 안다 → 문 46으로 이동</p> <p>문 46. [문 45에서 '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예: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요.</p> <table border="1" data-bbox="1021 1053 1653 1212">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문 46-1. 현장의 안전보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46-2. 우리 사업장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46-3. 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46-4.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적정하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46-5.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46-1. 현장의 안전보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2. 우리 사업장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3. 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4.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5.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p>•문 45: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문구 추가 •문 46: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문 45에서 '1. 전혀모른다'를 제외한 모두에게 질문하기로 함 (독일 GDA W15B201_1, W15B201_5를 참고) •예비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사업장 인식 문항 추가함</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46-1. 현장의 안전보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2. 우리 사업장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3. 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4.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5.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p>문33) 귀하는 2021년 1월 26일 제정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p> <p>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조금 안다 ④ 잘 안다</p> <p>→ 문34)로 이동</p> <p>35 → 문33-1) [문33에서 3~4번을 응답한 경우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귀사의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p>	<p>문 47. 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p> <p>① 전혀 모른다 → 문 49로 이동 ② 거의 모른다 → 문 48로 이동 ③ 조금 안다 → 문 48로 이동 ④ 잘 안다 → 문 48로 이동</p> <p>문 48. [문 47에서 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별로 그렇지 않다</th> <th>보통이다</th> <th>대체로 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문 48-1. 현장의 안전보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48-2. 우리 사업장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48-3. 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48-4.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적정하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문 48-5.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48-1. 현장의 안전보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2. 우리 사업장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3. 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4.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5.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p>•문 45, 46과 동일한 내용</p>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48-1. 현장의 안전보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2. 우리 사업장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3. 법 규정을 준수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4.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8-5.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p>36</p>	<p>문 49. 다음 중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을 1개 선택해주세요.</p> <p>① 사업주 집체교육 ② 전문가 방문 컨설팅 ③ 가이드 및 해설서 ④ 동영상 자료 ⑤ 필요 없음</p>	<p>•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로 추가함</p>																																				
<p>37</p> <p>문34) 귀하의 사업체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제품 생산(서비스 제공) 등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초과근무 등 일을 급하게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까?</p> <p>① 전혀 없었다 ② 거의 없었다 ③ 약간 있었다 ④ 많이 있었다</p> <p>문35) 코로나 발생으로 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 발생 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60px; width: 100%;"></div>	<p>삭제</p>	<p>•코로나19관련 문항은 삭제함</p>																																				
<p>38</p> <p>문36)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60px; width: 100%;"></div>	<p>삭제</p>	<p>•표본 수를 고려하여 주관식 응답 분석이 어려워 삭제함</p>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지(안)	변경사항																																																																																				
<p>문1) 본 공사현장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공사 시작일</td> <td style="width:1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5%;">년</td> <td style="width: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5%;">월</td> <td style="width: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5%;">일</td> </tr> <tr> <td>공사 종료일 (종료 예정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r> <tr> <td>공사 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억</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만</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백만원</td> </tr> <tr> <td>발주처</td> <td colspan="6"> ① 정부 ② 공공기관 ③ 사기업 또는 개인 ④ 자재공사 ⑤ 기타(리얼 기업) </td> </tr> <tr> <td>기성공정율</td> <td colspan="6">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90% 미만 ⑥ 90% 이상 </td> </tr> </table>	공사 시작일	□□□□	년	□□	월	□□	일	공사 종료일 (종료 예정일)	□□□□	년	□□	월	□□	일	공사 금액	□□□□	천억	□□□□	십억	□□□□	일억		□□□□	천만	□□□□	백만	백만원		발주처	① 정부 ② 공공기관 ③ 사기업 또는 개인 ④ 자재공사 ⑤ 기타(리얼 기업)						기성공정율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90% 미만 ⑥ 90% 이상						<p>아래는 건설업만 해당하는 문항</p> <p>문 1. 본 공사현장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5%;">공사 시작일</td> <td style="width:1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5%;">년</td> <td style="width: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5%;">월</td> <td style="width: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5%;">일</td> </tr> <tr> <td>공사 종료일 (종료 예정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r> <tr> <td>공사 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십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억</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천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만</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원</td> </tr> <tr> <td>발주처</td> <td colspan="6">① 정부 ② 공공기관 ③ 사기업 또는 개인 ④ 자재공사 ⑤ 기타</td> </tr> <tr> <td>기성공정율</td> <td colspan="6">□□ %</td> </tr> </table>	공사 시작일	□□□□	년	□□	월	□□	일	공사 종료일 (종료 예정일)	□□□□	년	□□	월	□□	일	공사 금액	□□□□	천억	□□□□	십억	□□□□	일억		□□□□	천만	□□□□	백만	원		발주처	① 정부 ② 공공기관 ③ 사기업 또는 개인 ④ 자재공사 ⑤ 기타						기성공정율	□□ %						<p>•기성공정율: 사전조사결과, 주관식 응답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주관식으로 수정</p>
공사 시작일	□□□□	년	□□	월	□□	일																																																																																
공사 종료일 (종료 예정일)	□□□□	년	□□	월	□□	일																																																																																
공사 금액	□□□□	천억	□□□□	십억	□□□□	일억																																																																																
	□□□□	천만	□□□□	백만	백만원																																																																																	
발주처	① 정부 ② 공공기관 ③ 사기업 또는 개인 ④ 자재공사 ⑤ 기타(리얼 기업)																																																																																					
기성공정율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90% 미만 ⑥ 90% 이상																																																																																					
공사 시작일	□□□□	년	□□	월	□□	일																																																																																
공사 종료일 (종료 예정일)	□□□□	년	□□	월	□□	일																																																																																
공사 금액	□□□□	천억	□□□□	십억	□□□□	일억																																																																																
	□□□□	천만	□□□□	백만	원																																																																																	
발주처	① 정부 ② 공공기관 ③ 사기업 또는 개인 ④ 자재공사 ⑤ 기타																																																																																					
기성공정율	□□ %																																																																																					
<p>문2) 다음 중 이 현장의 공사 종류는 어디에 속합니까? 해당하는 공사 종류를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20%; text-align: center;">건축공사</td> <td style="width:55%;"> ① 아파트 ② 공장 ③ 근생시설/빌딩 ④ 학교/병원 ⑤ 건축 기타 </td> <td style="width:25%; text-align: right;">→ 문 3-1)로 이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토목공사</td> <td> ⑥ 도로 ⑦ 철도 ⑧ 교량 ⑨ 상하수도 ⑩ 토목 기타 </td> <td style="text-align: right;">→ 문 3-2)로 이동</td> </tr> <tr> <td></td> <td> ⑪ 전기정보통신공사 ⑫ 기타 </td> <td style="text-align: right;">→ 문 4)로 이동</td> </tr> </table> <p>문3-1) [건축공사인 경우] 오늘(조사일 기준)은 다음 중 어떤 공정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 중 해당하는 공정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p> <table style="width:100%;"> <tr> <td>① 굴착공사</td> <td>② 가설공사</td> <td>③ 구조물공사</td> </tr> <tr> <td>④ 마감공사</td> <td>⑤ 기계설비공사</td> <td>⑥ 해체공사</td> </tr> <tr> <td>⑦ 단열공사(냉동냉장고만 해당)</td> <td>⑧ 부대토목공사</td> <td></td> </tr> </table> <p>문3-2) [토목공사인 경우] 오늘(조사일 기준)은 다음 중 어떤 공정에 해당됩니까? 아래 보기 중 해당하는 공정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p> <table style="width:100%;"> <tr> <td>① 굴착공사</td> <td>② 가설공사</td> <td>③ 교량 하부공사</td> </tr> <tr> <td>④ 교량 상부공사</td> <td>⑤ 발파공사</td> <td>⑥ 댐축조공사</td> </tr> </table>	건축공사	① 아파트 ② 공장 ③ 근생시설/빌딩 ④ 학교/병원 ⑤ 건축 기타	→ 문 3-1)로 이동	토목공사	⑥ 도로 ⑦ 철도 ⑧ 교량 ⑨ 상하수도 ⑩ 토목 기타	→ 문 3-2)로 이동		⑪ 전기정보통신공사 ⑫ 기타	→ 문 4)로 이동	① 굴착공사	② 가설공사	③ 구조물공사	④ 마감공사	⑤ 기계설비공사	⑥ 해체공사	⑦ 단열공사(냉동냉장고만 해당)	⑧ 부대토목공사		① 굴착공사	② 가설공사	③ 교량 하부공사	④ 교량 상부공사	⑤ 발파공사	⑥ 댐축조공사	<p>문 2. 다음 중 이 현장의 공사 종류와 공정에 대한 질문입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질문</th> <th style="width:25%;">건축공사</th> <th style="width:25%;">토목공사</th> <th style="width:35%;">그외</th> </tr> </thead> <tbody> <tr> <td>문 2-1. 이 현장의 공사는 다음 중 어떤 종류에 해당됩니까?</td> <td> ① 아파트 ② 공장 ③ 근생시설/빌딩 ④ 학교/병원 ⑤ 건축 기타 </td> <td> ⑥ 도로 ⑦ 철도 ⑧ 교량 ⑨ 상하수도 ⑩ 토목 기타 </td> <td> ⑪ 전기정보통신공사 ⑫ 기타 </td> </tr> <tr> <td>문 2-2. 오늘은 다음 중 어떤 공정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공정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td> <td> ① 굴착공사 ② 가설공사 ③ 구조물공사 ④ 마감공사 ⑤ 기계설비공사 ⑥ 해체공사 ⑦ 열공사(냉동냉장고만 해당) ⑧ 부대토목공사 </td> <td> ① 굴착공사 ② 가설공사 ③ 교량 하부공사 ④ 교량 상부공사 ⑤ 발파공사 ⑥ 댐축조공사 </td> <td></td> </tr> </tbody> </table>	질문	건축공사	토목공사	그외	문 2-1. 이 현장의 공사는 다음 중 어떤 종류에 해당됩니까?	① 아파트 ② 공장 ③ 근생시설/빌딩 ④ 학교/병원 ⑤ 건축 기타	⑥ 도로 ⑦ 철도 ⑧ 교량 ⑨ 상하수도 ⑩ 토목 기타	⑪ 전기정보통신공사 ⑫ 기타	문 2-2. 오늘은 다음 중 어떤 공정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공정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① 굴착공사 ② 가설공사 ③ 구조물공사 ④ 마감공사 ⑤ 기계설비공사 ⑥ 해체공사 ⑦ 열공사(냉동냉장고만 해당) ⑧ 부대토목공사	① 굴착공사 ② 가설공사 ③ 교량 하부공사 ④ 교량 상부공사 ⑤ 발파공사 ⑥ 댐축조공사		<p>•응답자 편의를 위해 구조 수정(문항은 동일하고)</p>																																																
건축공사	① 아파트 ② 공장 ③ 근생시설/빌딩 ④ 학교/병원 ⑤ 건축 기타	→ 문 3-1)로 이동																																																																																				
토목공사	⑥ 도로 ⑦ 철도 ⑧ 교량 ⑨ 상하수도 ⑩ 토목 기타	→ 문 3-2)로 이동																																																																																				
	⑪ 전기정보통신공사 ⑫ 기타	→ 문 4)로 이동																																																																																				
① 굴착공사	② 가설공사	③ 구조물공사																																																																																				
④ 마감공사	⑤ 기계설비공사	⑥ 해체공사																																																																																				
⑦ 단열공사(냉동냉장고만 해당)	⑧ 부대토목공사																																																																																					
① 굴착공사	② 가설공사	③ 교량 하부공사																																																																																				
④ 교량 상부공사	⑤ 발파공사	⑥ 댐축조공사																																																																																				
질문	건축공사	토목공사	그외																																																																																			
문 2-1. 이 현장의 공사는 다음 중 어떤 종류에 해당됩니까?	① 아파트 ② 공장 ③ 근생시설/빌딩 ④ 학교/병원 ⑤ 건축 기타	⑥ 도로 ⑦ 철도 ⑧ 교량 ⑨ 상하수도 ⑩ 토목 기타	⑪ 전기정보통신공사 ⑫ 기타																																																																																			
문 2-2. 오늘은 다음 중 어떤 공정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공정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① 굴착공사 ② 가설공사 ③ 구조물공사 ④ 마감공사 ⑤ 기계설비공사 ⑥ 해체공사 ⑦ 열공사(냉동냉장고만 해당) ⑧ 부대토목공사	① 굴착공사 ② 가설공사 ③ 교량 하부공사 ④ 교량 상부공사 ⑤ 발파공사 ⑥ 댐축조공사																																																																																				

부록 5. 표집설계

부록 5-1. 1안: 17개 대업종 (중47) + 제조업 (중25) + 건설업

기준

- 1) 전사체 업종중 대분류 기준 다음업종 제외(건설업)
- 2) 1인 자영자는 제외
- 3) 규모층을 5~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으로 세분화

표본배분방법

질사추출
과표본추출

종사자수 300명 이상 모든 사업체는 전수조사 실시
층별 최소 표본 수 30개 확보

업종 by 종사자 규모 세부 단위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95% 신뢰수준 하에서 허용오차를 16% 이내로 최소 표본 수 확보
층별 크기와 분산을 고려하여 배분

네이만배분

업종 중분류	규모층	사업체 수	종사자 합계	종사자 평균	종사자 표준편차	2만7천개	
						표본수	허용오차
		758,491	16,025,599	21.1	123.9	27,000	0.59
1.농업	5~19인	1,950	16,707	8.6	3.7	57	12.79
	20~49인	344	10,045	29.2	7.6	40	14.57
	50~99인	51	3,271	64.1	12.4	32	10.57
	100~299인	12	1,602	133.5	19.3	12	
	300인 이상	1	817	817.0	0.0	1	
2.임업	5~19인	786	6,842	8.7	3.2	39	15.30
	20~49인	73	2,190	30.0	8.3	32	12.98
	50~99인	12	851	70.9	14.7	12	
	100~299인	4	564	141.0	35.5	4	
	300인 이상						
3.어업	5~19인	208	1,639	7.9	3.2	33	15.65
	20~49인	34	1,088	32.0	8.0	31	5.23
	50~99인	21	1,596	76.0	16.2	21	
	100~299인	8	1,172	146.5	27.6	8	
	300인 이상	1	302	302.0	0.0	1	
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5~19인	2	18	9.0	3.0	2	
	20~49인	3	95	31.7	4.9	3	
	50~99인	1	93	93.0	0.0	1	
	100~299인	1	257	257.0	0.0	1	
	300인 이상	2	1,085	542.5	88.5	2	
6.금속 광업	5~19인	4	28	7.0	1.9	4	
	20~49인	3	90	30.0	6.5	3	
	50~99인						
	100~299인	1	100	100.0	0.0	1	
	300인 이상						
7.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5~19인	346	3,479	10.1	4.3	36	15.46
	20~49인	140	4,116	29.4	7.8	34	14.62
	50~99인	17	1,179	69.4	15.6	17	
	100~299인						
	300인 이상						
8.광업 지원 서비스업	5~19인	3	32	10.7	1.7	3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	604	604.0	0.0	1	
10.식품 제조업	5~19인	9,997	89,672	9.0	3.9	174	7.36
	20~49인	2,240	67,657	30.2	8.4	100	9.58
	50~99인	619	42,361	68.4	14.0	62	11.81
	100~299인	305	48,862	160.2	49.5	86	8.95
	300인 이상	54	28,954	536.2	253.0	54	
11.음료 제조업	5~19인	396	3,378	8.5	3.8	36	15.57
	20~49인	84	2,666	31.7	8.8	33	13.29
	50~99인	43	2,898	67.4	11.1	32	8.76
	100~299인	32	5,424	169.5	57.1	32	
	300인 이상	8	3,181	397.6	93.1	8	
12.담배 제조업	5~19인	1	9	9.0	0.0	1	
	20~49인	1	37	37.0	0.0	1	
	50~99인	1	86	86.0	0.0	1	
	100~299인	1	146	146.0	0.0	1	

12.담배 제조업	300인 이상	2	1,145	572.5	253.5	2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5~19인	5,319	45,333	8.5	3.7	103	9.56
	20~49인	897	26,286	29.3	7.9	56	12.68
	50~99인	200	13,790	69.0	13.2	40	13.86
	100~299인	59	8,362	141.7	43.0	39	9.14
	300인 이상	4	2,115	528.8	339.1	4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19인	5,669	44,892	7.9	3.3	98	9.81
	20~49인	493	14,179	28.8	7.8	44	14.10
	50~99인	97	6,429	66.3	14.0	35	13.24
	100~299인	34	5,315	156.3	52.8	34	
	300인 이상	8	5,917	739.6	454.9	8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19인	1,244	10,234	8.2	3.5	46	14.18
	20~49인	170	4,851	28.5	8.6	35	14.76
	50~99인	27	1,838	68.1	13.0	27	
	100~299인	10	1,527	152.7	56.8	10	
	300인 이상	1	321	321.0	0.0	1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19인	1,941	16,656	8.6	3.5	55	13.03
	20~49인	223	6,130	27.5	7.1	36	14.96
	50~99인	20	1,379	69.0	17.2	20	
	100~299인	18	3,075	170.8	47.8	18	
	300인 이상	2	618	309.0	1.0	2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19인	2,932	26,774	9.1	3.9	73	11.33
	20~49인	671	19,612	29.2	7.8	49	13.48
	50~99인	154	10,573	68.7	14.8	38	13.80
	100~299인	82	12,419	151.5	47.7	45	9.81
	300인 이상	8	3,298	412.3	74.5	8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19인	2,870	23,461	8.2	3.5	68	11.74
	20~49인	371	10,685	28.8	8.3	41	14.43
	50~99인	46	2,980	64.8	12.8	32	9.56
	100~299인	23	3,519	153.0	44.5	23	
	300인 이상						
19.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19인	155	1,592	10.3	4.1	32	15.43
	20~49인	51	1,330	26.1	6.2	31	11.02
	50~99인	10	664	66.4	12.3	10	
	100~299인	6	960	160.0	56.3	6	
	300인 이상	6	8,495	1415.8	595.9	6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19인	4,611	41,912	9.1	3.9	97	9.85
	20~49인	1,158	35,299	30.5	8.4	66	11.71
	50~99인	354	24,318	68.7	13.7	48	13.15
	100~299인	241	37,434	155.3	47.5	72	9.67
	300인 이상	59	35,337	598.9	355.3	59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19인	452	4,387	9.7	4.2	37	15.44
	20~49인	247	7,930	32.1	8.7	38	14.62
	50~99인	123	8,595	69.9	14.2	36	13.74
	100~299인	125	20,799	166.4	52.9	55	9.89
	300인 이상	30	20,022	667.4	804.3	30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19인	9,027	82,253	9.1	3.9	161	7.65
	20~49인	2,269	66,845	29.5	8.0	98	9.68
	50~99인	491	33,024	67.3	13.7	55	12.45
	100~299인	240	37,410	155.9	48.2	73	9.57
	300인 이상	36	27,675	768.8	625.1	36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19인	3,910	37,467	9.6	4.0	88	10.33
	20~49인	939	27,177	28.9	7.9	57	12.58
	50~99인	199	13,777	69.2	14.0	40	13.85
	100~299인	97	14,988	154.5	50.6	48	10.05
	300인 이상	17	9,770	574.7	538.3	17	
24.1차 금속 제조업	5~19인	3,656	34,969	9.6	4.0	85	10.51
	20~49인	1,104	32,337	29.3	7.8	62	12.09
	50~99인	271	18,423	68.0	12.7	43	13.71
	100~299인	135	22,167	164.2	54.5	57	9.87
	300인 이상	44	48,455	1101.3	1685.4	44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19인	18,766	162,483	8.7	3.7	290	5.71
	20~49인	3,097	89,935	29.0	7.8	120	8.77
	50~99인	472	31,595	66.9	13.9	54	12.55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0~299인	203	31,261	154.0	49.5	67	9.80
	300인 이상	36	20,970	582.5	514.3	36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19인	5,208	46,462	8.9	3.8	104	9.51
	20~49인	1,227	36,628	29.9	8.1	67	11.64
	50~99인	396	26,917	68.0	14.2	51	12.81
	100~299인	251	39,591	157.7	48.3	75	9.48
	300인 이상	111	229,671	2069.1	4740.8	111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19인	4,504	39,489	8.8	3.7	92	10.11
	20~49인	883	26,410	29.9	8.2	57	12.55
	50~99인	287	19,586	68.2	14.5	45	13.41
	100~299인	151	24,563	162.7	52.1	59	9.96
	300인 이상	21	15,273	727.3	1174.0	21	
28.전기장비 제조업	5~19인	7,602	67,552	8.9	3.8	138	8.27
	20~49인	1,524	45,633	29.9	8.4	78	10.81
	50~99인	453	30,885	68.2	13.7	53	12.65
	100~299인	247	38,683	156.6	48.6	75	9.44
	300인 이상	76	61,005	802.7	978.8	76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19인	16,017	142,729	8.9	3.9	259	6.04
	20~49인	3,530	104,782	29.7	8.1	137	8.21
	50~99인	866	59,175	68.3	14.0	75	10.81
	100~299인	416	66,774	160.5	51.2	109	8.06
	300인 이상	72	43,715	607.2	387.3	72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19인	4,414	41,949	9.5	4.1	97	9.84
	20~49인	2,043	62,366	30.5	8.3	93	9.93
	50~99인	661	45,840	69.3	14.0	64	11.64
	100~299인	417	67,811	162.6	53.3	112	7.92
	300인 이상	112	136,716	1220.7	3339.8	112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19인	1,673	15,859	9.5	3.8	54	13.12
	20~49인	598	18,113	30.3	8.4	49	13.41
	50~99인	334	23,301	69.8	13.4	47	13.25
	100~299인	118	16,067	136.2	43.5	49	10.71
	300인 이상	24	52,103	2171.0	2797.1	24	
32.가구 제조업	5~19인	3,014	25,509	8.5	3.7	71	11.49
	20~49인	420	12,162	29.0	7.7	42	14.35
	50~99인	46	3,028	65.8	13.6	32	9.56
	100~299인	14	2,143	153.1	40.2	14	
	300인 이상						
33.기타 제품 제조업	5~19인	2,818	23,300	8.3	3.6	68	11.74
	20~49인	324	9,462	29.2	8.0	40	14.51
	50~99인	67	4,675	69.8	14.2	34	11.80
	100~299인	15	2,201	146.7	51.4	15	
	300인 이상	3	1,474	491.3	110.5	3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5~19인	1,411	11,430	8.1	3.5	48	13.90
	20~49인	217	6,447	29.7	8.3	37	14.67
	50~99인	72	5,068	70.4	15.2	34	12.21
	100~299인	69	12,495	181.1	52.9	44	8.89
	300인 이상	6	3,274	545.7	286.3	6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19인	417	3,567	8.6	3.6	36	15.61
	20~49인	211	7,312	34.7	8.4	37	14.63
	50~99인	207	14,590	70.5	13.0	40	13.92
	100~299인	94	16,412	174.6	59.4	51	9.28
	300인 이상	33	25,702	778.8	592.9	33	
36.수도업	5~19인	123	1,296	10.5	4.6	32	14.90
	20~49인	174	5,853	33.6	8.2	35	14.81
	50~99인	68	4,533	66.7	13.9	34	11.88
	100~299인	41	6,016	146.7	38.2	36	5.70
	300인 이상	2	2,118	1059.0	753.0	2	
37.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5~19인	641	6,174	9.6	4.1	40	15.00
	20~49인	227	6,860	30.2	7.6	36	14.98
	50~99인	47	3,012	64.1	13.6	32	9.79
	100~299인	17	2,840	167.1	35.4	17	
	300인 이상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19인	2,885	26,843	9.3	3.9	72	11.40
	20~49인	911	28,576	31.4	8.7	59	12.34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0~99인	226	14,998	66.4	13.1	41	13.85
	100~299인	46	6,407	139.3	45.2	38	6.63
	300인 이상	2	805	402.5	48.5	2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5~19인	50	457	9.1	4.2	31	10.85
	20~49인	18	517	28.7	7.5	18	
	50~99인	9	517	57.4	6.1	9	
	100~299인	1	100	100.0	0.0	1	
	300인 이상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19인	5,733	52,955	9.2	3.9	114	9.09
	20~49인	647	17,473	27.0	7.3	48	13.61
	50~99인	92	6,086	66.2	12.8	34	13.34
	100~299인	26	4,049	155.7	51.2	26	
	300인 이상	3	2,155	718.3	426.7	3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9인	51,848	418,145	8.1	3.4	690	3.71
	20~49인	5,563	160,212	28.8	7.9	192	6.95
	50~99인	1,063	72,165	67.9	14.0	85	10.20
	100~299인	512	79,957	156.2	51.1	127	7.54
	300인 이상	128	68,021	531.4	263.5	128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5~19인	55,543	410,358	7.4	3.0	656	3.80
	20~49인	3,800	107,904	28.4	7.7	138	8.19
	50~99인	742	50,300	67.8	14.3	69	11.24
	100~299인	428	63,646	148.7	41.9	97	8.75
	300인 이상	48	33,496	697.8	801.3	48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19인	7,182	69,827	9.7	4.1	139	8.23
	20~49인	3,054	92,989	30.4	8.3	124	8.62
	50~99인	1,238	84,650	68.4	13.6	92	9.83
	100~299인	753	118,978	158.0	52.1	175	6.49
	300인 이상	75	37,979	506.4	236.0	75	
50.수상 운송업	5~19인	437	4,236	9.7	4.2	37	15.41
	20~49인	146	4,453	30.5	8.6	35	14.44
	50~99인	37	2,588	69.9	15.4	32	6.37
	100~299인	26	4,155	159.8	43.8	26	
	300인 이상	8	4,326	540.8	353.1	8	
51.항공 운송업	5~19인	78	755	9.7	4.1	31	13.66
	20~49인	21	644	30.7	5.8	21	
	50~99인	7	520	74.3	15.0	7	
	100~299인	11	1,848	168.0	50.0	11	
	300인 이상	10	26,334	2633.4	3277.4	10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19인	7,223	65,711	9.1	3.8	133	8.42
	20~49인	1,785	53,205	29.8	8.2	84	10.44
	50~99인	584	39,948	68.4	14.7	62	11.77
	100~299인	390	59,641	152.9	52.2	105	8.18
	300인 이상	72	48,235	669.9	550.3	72	
55.숙박업	5~19인	3,507	25,903	7.4	3.2	72	11.43
	20~49인	432	12,782	29.6	8.1	43	14.18
	50~99인	137	9,244	67.5	13.1	37	13.76
	100~299인	74	12,219	165.1	52.6	44	9.41
	300인 이상	32	16,915	528.6	253.7	32	
56.음식점 및 주점업	5~19인	94,874	685,914	7.2	2.9	1,033	3.03
	20~49인	2,897	81,082	28.0	7.8	113	9.04
	50~99인	330	20,873	63.3	11.4	44	13.75
	100~299인	40	5,847	146.2	44.9	37	4.41
	300인 이상	4	2,434	608.5	198.6	4	
58.출판업	5~19인	9,083	82,081	9.0	3.8	158	7.73
	20~49인	2,350	69,705	29.7	8.2	101	9.54
	50~99인	743	51,266	69.0	14.3	69	11.24
	100~299인	429	69,085	161.0	49.3	108	8.16
	300인 이상	115	74,922	651.5	608.1	115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19인	2,233	19,537	8.7	3.8	61	12.38
	20~49인	556	15,783	28.4	7.6	46	13.84
	50~99인	86	5,751	66.9	13.3	34	13.07
	100~299인	52	8,229	158.3	57.9	41	7.04
	300인 이상	10	4,372	437.2	132.5	10	
60.방송업	5~19인	210	2,016	9.6	3.9	33	15.66

60.방송업	20~49인	113	3,588	31.8	8.4	34	14.05
	50~99인	57	4,072	71.4	13.7	33	11.07
	100~299인	38	5,761	151.6	47.1	35	4.65
	300인 이상	15	13,502	900.1	981.7	15	
61.우편 및 통신업	5~19인	1,337	10,987	8.2	3.8	49	13.74
	20~49인	352	10,728	30.5	8.6	41	14.39
	50~99인	179	12,224	68.3	14.0	39	13.88
	100~299인	175	30,030	171.6	52.4	64	9.76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19인	23	20,803	904.5	995.5	23	
	20~49인	3,109	28,210	9.1	3.8	74	11.26
	50~99인	841	25,112	29.9	8.1	55	12.77
	100~299인	260	17,842	68.6	13.8	43	13.65
63.정보서비스업	5~19인	154	25,490	165.5	51.6	59	10.02
	20~49인	48	45,135	940.3	1699.6	48	
	50~99인	1,204	10,695	8.9	3.8	47	14.01
	100~299인	287	8,735	30.4	8.6	39	14.59
64.금융업	5~19인	110	7,508	68.3	13.7	36	13.40
	20~49인	74	12,240	165.4	50.0	44	9.41
	50~99인	33	26,918	815.7	867.9	33	
	100~299인	124	20,424	164.7	52.1	54	10.02
65.보험 및 연금업	5~19인	60	61,573	1026.2	1041.8	60	
	20~49인	13,485	129,292	9.6	3.7	213	6.66
	50~99인	1,616	45,029	27.9	7.7	76	10.97
	100~299인	260	17,152	66.0	12.8	42	13.85
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5~19인	124	20,424	164.7	52.1	54	10.02
	20~49인	60	61,573	1026.2	1041.8	60	
	50~99인	2,153	21,769	10.1	4.1	63	12.16
	100~299인	2,489	81,695	32.8	8.0	104	9.41
67.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5~19인	792	50,605	63.9	12.5	67	11.45
	20~49인	160	23,901	149.4	48.4	59	10.14
	50~99인	49	36,999	755.1	549.2	49	
	100~299인	4340	44,376	10.2	4.0	95	9.94
68.부동산업	5~19인	1,663	49,504	29.8	8.0	79	10.76
	20~49인	432	28,216	65.3	13.3	51	12.89
	50~99인	151	23,084	152.9	54.4	60	9.82
	100~299인	54	40,852	756.5	584.6	54	
69.부동산업	5~19인	25,778	209,180	8.1	3.4	350	5.20
	20~49인	1,937	54,310	28.0	7.5	84	10.46
	50~99인	229	15,191	66.3	13.2	41	13.87
	100~299인	156	25,357	162.5	55.6	62	9.66
70.연구개발업	5~19인	39	27,875	714.7	565.7	39	
	20~49인	3,017	28,896	9.6	4.1	75	11.17
	50~99인	946	27,788	29.4	7.9	58	12.47
	100~299인	326	22,194	68.1	13.6	46	13.39
71.전문 서비스업	5~19인	263	44,370	168.7	58.0	87	8.59
	20~49인	130	172,200	1324.6	3528.4	130	
	50~99인	19,160	151,758	7.9	3.4	269	5.93
	100~299인	2,271	66,421	29.2	8.1	99	9.63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9인	642	44,259	68.9	14.4	64	11.62
	20~49인	385	63,266	164.3	53.1	106	8.10
	50~99인	170	135,526	797.2	761.4	170	
	100~299인	10,900	100,176	9.2	3.9	187	7.10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19인	2,550	74,298	29.1	7.9	105	9.36
	20~49인	649	44,427	68.5	13.9	64	11.63
	50~99인	331	53,740	162.4	52.3	94	8.55
	100~299인	113	65,211	577.1	342.2	113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9인	3,661	29,258	8.0	3.4	77	11.05
	20~49인	452	12,822	28.4	7.7	43	14.22
	50~99인	80	5,347	66.8	12.9	34	12.74
	100~299인	34	4,797	141.1	41.2	34	
75.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9인	6	3,117	519.5	157.9	6	
	20~49인	4,248	38,602	9.1	4.0	93	10.05
	50~99인	1,329	40,118	30.2	8.4	71	11.32
	100~299인	492	34,112	69.3	13.9	55	12.45
76.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9인	396	65,405	165.2	53.5	109	7.99
	20~49인	160	115,469	721.7	937.9	160	
	50~99인	160	115,469	721.7	937.9	160	
	100~299인	160	115,469	721.7	937.9	160	

75.사업지원 서비스업	5~19인	8,105	73,300	9.0	3.9	148	7.98
	20~49인	3,033	91,971	30.3	8.3	124	8.62
	50~99인	1,225	84,867	69.3	14.5	96	9.60
	100~299인	1,029	171,260	166.4	54.0	236	5.60
	300인 이상	484	374,227	773.2	793.6	484	
76.임대업; 부동산 제외	5~19인	2,466	21,085	8.6	3.8	65	11.99
	20~49인	509	14,104	27.7	6.7	43	14.30
	50~99인	44	2,916	66.3	13.2	32	9.05
	100~299인	21	2,940	140.0	39.2	21	
	300인 이상	6	2,363	393.8	20.8	6	
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19인	3,912	48,703	12.4	4.3	92	10.10
	20~49인	4,448	131,686	29.6	7.7	157	7.68
	50~99인	1,116	76,639	68.7	14.2	89	9.97
	100~299인	959	156,344	163.0	53.0	218	5.83
	300인 이상	567	471,972	832.4	672.5	567	
85.교육 서비스업	5~19인	30,864	261,678	8.5	3.8	462	4.53
	20~49인	8,535	264,011	30.9	8.6	303	5.53
	50~99인	6,464	45,340	70.4	13.3	350	5.09
	100~299인	1,359	173,527	127.7	38.0	221	6.03
	300인 이상	283	253,436	895.5	816.3	283	
86.보건업	5~19인	31,682	251,629	7.9	3.4	433	4.68
	20~49인	3,449	103,383	30.0	8.4	137	8.20
	50~99인	1,970	140,323	71.2	13.8	131	8.27
	100~299인	1,260	199,538	158.4	51.8	272	5.26
	300인 이상	323	338,860	1049.1	1178.0	323	
87.사회복지 서비스업	5~19인	40,581	405,324	10.0	3.9	610	3.94
	20~49인	11,471	350,032	30.5	8.2	380	4.94
	50~99인	3,189	210,494	66.0	13.1	185	6.99
	100~299인	884	144,623	163.6	53.0	204	6.02
	300인 이상	168	123,757	736.6	688.0	168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19인	3,079	26,895	8.7	3.7	73	11.33
	20~49인	647	19,840	30.7	8.4	50	13.31
	50~99인	189	12,744	67.4	13.1	39	13.98
	100~299인	99	15,094	152.5	50.5	49	9.95
	300인 이상	15	6,780	452.0	102.3	15	
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19인	9,531	73,725	7.7	3.2	144	8.10
	20~49인	753	22,175	29.4	8.0	52	13.11
	50~99인	243	17,008	70.0	14.5	43	13.56
	100~299인	287	44,685	155.7	46.4	79	9.39
	300인 이상	29	19,784	682.2	598.7	29	
94.협회 및 단체	5~19인	6,776	53,563	7.9	3.3	114	9.10
	20~49인	663	19,202	29.0	8.1	50	13.33
	50~99인	160	10,718	67.0	12.8	38	13.88
	100~299인	84	12,255	145.9	44.5	44	10.20
	300인 이상	7	3,188	455.4	166.7	7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5~19인	6,671	56,941	8.5	3.7	122	8.79
	20~49인	1,048	29,494	28.1	7.2	58	12.51
	50~99인	117	7,983	68.2	14.2	36	13.59
	100~299인	27	3,770	139.6	41.6	27	
	300인 이상						
96.기타 개인 서비스업	5~19인	8,628	70,588	8.2	3.6	144	8.10
	20~49인	998	28,292	28.3	7.5	58	12.49
	50~99인	144	9,610	66.7	13.6	37	13.89
	100~299인	63	9,460	150.2	49.8	42	8.73
	300인 이상	8	3,246	405.8	81.8	8	

기준

- 1) 건설업 업종은 건축, 토목, 기타로 구분
- 2) 규모층을 공사금액 기준으로
 20억원~50억원 미만
 50억원~120억원 미만
 120억원~800억원 미만
 800억원~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으로 구분

표본배분방법

- 질사추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사업체와 모집단 사업체수가 적은 토목 사업체는 전수조사 실시
- 과표본추출 총별 최소 표본 수 60개 확보
 업종 by 공사금액 규모 세부 단위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95% 신뢰수준 하에서 허용오차를 10% 이내로
 최소 표본 수 확보
- 네이만배분 총별 크기와 분산을 고려하여 배분

20억원 이상

그룹	공사금액	사업장수	공사금액 평균	공사금액 표준편차	표본수	허용오차
전체		31,950			3,000	1.70
A_건축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733	3,297,808,722	888,897,623	99	9.79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4,731	7,631,877,426	1,913,366,295	112	9.15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4,658	32,511,608,707	18,701,483,234	558	3.89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158	111,099,785,906	20,215,234,120	194	6.42
	1,500억원 이상	1,332	327,821,998,490	486,388,708,701	1,332	0.00
B_토목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4	3,208,675,628	867,173,464	54	0.00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33	7,385,073,258	1,841,400,066	33	0.00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14	20,575,356,090	7,160,570,780	14	0.00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					
C_기타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181	3,159,007,751	860,002,520	95	9.99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3,201	7,370,771,224	1,855,474,741	94	9.96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1,553	26,729,982,132	15,566,305,443	198	6.51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62	108,300,190,426	18,370,875,570	77	8.09
	1,500억원 이상	140	551,249,731,145	1,850,922,168,626	140	0.00

부록 5-2. 2안: 17개 대업종 (중47) + 제조업 (중25) + 건설업

기준

- 1) 전사체 업종중 대분류 기준 다음업종 제외(건설업)
- 2) 1인 자영자는 제외
- 3) 규모층을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으로 세분화

표본배분방법

절사추출
과표본추출

종사자수 300명 이상 모든 사업체는 전수조사 실시

층별 최소 표본 수 30개 확보

업종 by 종사자 규모 세부 단위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95% 신뢰수준 하에서 허용오차를 16% 이내로 최소 표본 수 확보

층별 크기와 분산을 고려하여 배분

네이만배분

업종 중분류	규모층	사업체 수	종사자 합계	종사자 평균	종사자 표준편차	2만7천개	
						표본수	허용오차
		330,054	13,297,928	40.3	186.1	27,000	0.57
1.농업	10~19인	640	8,371	13.1	2.7	41	14.81
	20~49인	344	10,045	29.2	7.6	46	13.45
	50~99인	51	3,271	64.1	12.4	34	9.70
	100~299인	12	1,602	133.5	19.3	12	
	300인 이상	1	817	817.0	0.0	1	
2.임업	10~19인	200	2,688	13.4	2.7	33	15.59
	20~49인	73	2,190	30.0	8.3	34	12.28
	50~99인	12	851	70.9	14.7	12	
	100~299인	4	564	141.0	35.5	4	
	300인 이상						
3.어업	10~19인	46	597	13.0	2.9	31	10.05
	20~49인	34	1,088	32.0	8.0	32	4.20
	50~99인	21	1,596	76.0	16.2	21	
	100~299인	8	1,172	146.5	27.6	8	
	300인 이상	1	302	302.0	0.0	1	
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0~19인	1	12	12.0	0.0	1	
	20~49인	3	95	31.7	4.9	3	
	50~99인	1	93	93.0	0.0	1	
	100~299인	1	257	257.0	0.0	1	
	300인 이상	2	1,085	542.5	88.5	2	
6.금속 광업	10~19인	1	10	10.0	0.0	1	
	20~49인	3	90	30.0	6.5	3	
	50~99인						
	100~299인	1	100	100.0	0.0	1	
	300인 이상						
7.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0~19인	165	2,293	13.9	3.0	33	15.26
	20~49인	140	4,116	29.4	7.8	37	13.82
	50~99인	17	1,179	69.4	15.6	17	
	100~299인						
	300인 이상						
8.광업 지원 서비스업	10~19인	2	23	11.5	1.5	2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	604	604.0	0.0	1	
10.식품품 제조업	10~19인	3,549	47,671	13.4	2.9	93	10.03
	20~49인	2,240	67,657	30.2	8.4	146	7.84
	50~99인	619	42,361	68.4	14.0	83	10.01
	100~299인	305	48,862	160.2	49.5	123	6.83
	300인 이상	54	28,954	536.2	253.0	54	
11.음료 제조업	10~19인	118	1,584	13.4	3.1	32	14.79
	20~49인	84	2,666	31.7	8.8	35	12.65
	50~99인	43	2,898	67.4	11.1	33	8.23
	100~299인	32	5,424	169.5	57.1	32	
	300인 이상	8	3,181	397.6	93.1	8	
12.담배 제조업	10~19인						
	20~49인	1	37	37.0	0.0	1	
	50~99인	1	86	86.0	0.0	1	
	100~299인	1	146	146.0	0.0	1	
	300인 이상						

12.담배 제조업	300인 이상	2	1,145	572.5	253.5	2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0~19인	1,740	22,630	13.0	2.8	61	12.33
	20~49인	897	26,286	29.3	7.9	74	10.91
	50~99인	200	13,790	69.0	13.2	46	12.68
	100~299인	59	8,362	141.7	43.0	46	6.78
	300인 이상	4	2,115	528.8	339.1	4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19인	1,508	18,750	12.4	2.7	55	12.97
	20~49인	493	14,179	28.8	7.8	54	12.58
	50~99인	97	6,429	66.3	14.0	38	12.40
	100~299인	34	5,315	156.3	52.8	34	
	300인 이상	8	5,917	739.6	454.9	8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19인	367	4,716	12.9	2.6	36	15.51
	20~49인	170	4,851	28.5	8.6	39	13.78
	50~99인	27	1,838	68.1	13.0	27	
	100~299인	10	1,527	152.7	56.8	10	
	300인 이상	1	321	321.0	0.0	1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19인	626	8,080	12.9	2.6	40	14.99
	20~49인	223	6,130	27.5	7.1	40	14.04
	50~99인	20	1,379	69.0	17.2	20	
	100~299인	18	3,075	170.8	47.8	18	
	300인 이상	2	618	309.0	1.0	2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19인	1,128	15,087	13.4	2.9	50	13.55
	20~49인	671	19,612	29.2	7.8	62	11.86
	50~99인	154	10,573	68.7	14.8	44	12.49
	100~299인	82	12,419	151.5	47.7	54	7.79
	300인 이상	8	3,298	412.3	74.5	8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19인	845	10,817	12.8	2.8	45	14.21
	20~49인	371	10,685	28.8	8.3	49	13.04
	50~99인	46	2,980	64.8	12.8	34	8.58
	100~299인	23	3,519	153.0	44.5	23	
	300인 이상						
19.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19인	79	1,075	13.6	3.0	31	13.72
	20~49인	51	1,330	26.1	6.2	32	10.57
	50~99인	10	664	66.4	12.3	10	
	100~299인	6	960	160.0	56.3	6	
	300인 이상	6	8,495	1415.8	595.9	6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19인	1,742	23,224	13.3	2.9	61	12.33
	20~49인	1,158	35,299	30.5	8.4	90	9.92
	50~99인	354	24,318	68.7	13.7	60	11.53
	100~299인	241	37,434	155.3	47.5	101	7.43
	300인 이상	59	35,337	598.9	355.3	59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19인	194	2,697	13.9	2.7	33	15.54
	20~49인	247	7,930	32.1	8.7	43	13.58
	50~99인	123	8,595	69.9	14.2	41	12.50
	100~299인	125	20,799	166.4	52.9	71	7.64
	300인 이상	30	20,022	667.4	804.3	30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19인	3,503	46,530	13.3	2.9	92	10.08
	20~49인	2,269	66,845	29.5	8.0	143	7.93
	50~99인	491	33,024	67.3	13.7	72	10.67
	100~299인	240	37,410	155.9	48.2	102	7.36
	300인 이상	36	27,675	768.8	625.1	36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19인	1,714	23,016	13.4	2.8	60	12.43
	20~49인	939	27,177	28.9	7.9	76	10.78
	50~99인	199	13,777	69.2	14.0	47	12.49
	100~299인	97	14,988	154.5	50.6	60	7.81
	300인 이상	17	9,770	574.7	538.3	17	
24.1차 금속 제조업	10~19인	1,618	21,648	13.4	2.9	59	12.52
	20~49인	1,104	32,337	29.3	7.8	84	10.28
	50~99인	271	18,423	68.0	12.7	51	12.36
	100~299인	135	22,167	164.2	54.5	75	7.54
	300인 이상	44	48,455	1101.3	1685.4	44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19인	6,290	82,588	13.1	2.8	140	8.19
	20~49인	3,097	89,935	29.0	7.8	180	7.09
	50~99인	472	31,595	66.9	13.9	71	10.72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0~299인	209	31,261	154.0	49.5	92	7.56
	300인 이상	36	20,970	582.5	514.3	36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19인	1,868	24,788	13.3	2.9	63	12.14
	20~49인	1,227	36,628	29.9	8.1	91	9.88
	50~99인	396	26,917	68.0	14.2	65	11.11
	100~299인	251	39,591	157.7	48.3	105	7.29
	300인 이상	111	229,671	2069.1	4740.8	111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19인	1,575	20,553	13.0	2.9	58	12.63
	20~49인	883	26,410	29.9	8.2	75	10.82
	50~99인	287	19,586	68.2	14.5	56	11.75
	100~299인	151	24,563	162.7	52.1	79	7.61
	300인 이상	21	15,273	727.3	1174.0	21	
28.전기장비 제조업	10~19인	2,734	36,176	13.2	2.9	78	10.94
	20~49인	1,524	45,633	29.9	8.4	109	9.04
	50~99인	453	30,885	68.2	13.7	68	10.96
	100~299인	247	38,683	156.6	48.6	104	7.31
	300인 이상	76	61,005	802.7	978.8	76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19인	5,849	77,459	13.2	2.8	133	8.40
	20~49인	3,530	104,782	29.7	8.1	208	6.59
	50~99인	866	59,175	68.3	14.0	105	8.97
	100~299인	416	66,774	160.5	51.2	162	6.02
	300인 이상	72	43,715	607.2	387.3	72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19인	1,835	24,943	13.6	3.0	64	12.03
	20~49인	2,043	62,366	30.5	8.3	134	8.18
	50~99인	661	45,840	69.3	14.0	87	9.79
	100~299인	417	67,811	162.6	53.3	167	5.87
	300인 이상	112	136,716	1220.7	3339.8	112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19인	738	9,620	13.0	2.7	43	14.50
	20~49인	598	18,113	30.3	8.4	61	11.89
	50~99인	334	23,301	69.8	13.4	58	11.70
	100~299인	118	16,067	136.2	43.5	62	8.57
	300인 이상	24	52,103	2171.0	2797.1	24	
32.가구 제조업	10~19인	913	12,101	13.3	2.9	46	14.08
	20~49인	420	12,162	29.0	7.7	50	13.01
	50~99인	46	3,028	65.8	13.6	34	8.58
	100~299인	14	2,143	153.1	40.2	14	
	300인 이상						
33.기타 제품 제조업	10~19인	817	10,699	13.1	2.8	44	14.37
	20~49인	324	9,462	29.2	8.0	46	13.38
	50~99인	67	4,675	69.8	14.2	36	11.11
	100~299인	15	2,201	146.7	51.4	15	
	300인 이상	3	1,474	491.3	110.5	3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19인	363	4,781	13.2	2.8	36	15.50
	20~49인	217	6,447	29.7	8.3	41	13.78
	50~99인	72	5,068	70.4	15.2	37	11.23
	100~299인	69	12,495	181.1	52.9	53	6.48
	300인 이상	6	3,274	545.7	286.3	6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19인	129	1,707	13.2	2.6	32	15.02
	20~49인	211	7,312	34.7	8.4	41	13.74
	50~99인	207	14,590	70.5	13.0	47	12.57
	100~299인	94	16,412	174.6	59.4	64	6.92
	300인 이상	33	25,702	778.8	592.9	33	
36.수도업	10~19인	57	848	14.9	2.7	31	11.89
	20~49인	174	5,853	33.6	8.2	39	13.82
	50~99인	68	4,533	66.7	13.9	36	11.20
	100~299인	41	6,016	146.7	38.2	33	7.54
	300인 이상	2	2,118	1059.0	753.0	2	
37.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0~19인	267	3,680	13.8	2.9	35	15.44
	20~49인	227	6,860	30.2	7.6	41	13.85
	50~99인	47	3,012	64.1	13.6	34	8.84
	100~299인	17	2,840	167.1	35.4	17	
	300인 이상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0~19인	1,139	15,307	13.4	2.8	50	13.55
	20~49인	911	28,576	31.4	8.7	79	10.54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0-99인	226	14,998	66.4	13.1	48	12.55
	100-299인	46	6,407	139.3	45.2	43	3.82
	300인 이상	2	805	402.5	48.5	2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10-19인	19	264	13.9	2.9	19	
	20-49인	18	517	28.7	7.5	18	
	50-99인	9	517	57.4	6.1	9	
	100-299인	1	100	100.0	0.0	1	
	300인 이상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0-19인	2,262	30,357	13.4	2.7	68	11.70
	20-49인	647	17,473	27.0	7.3	59	12.16
	50-99인	92	6,086	66.2	12.8	37	12.46
	100-299인	26	4,049	155.7	51.2	26	
	300인 이상	3	2,155	718.3	426.7	3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10-19인	13,383	174,300	13.0	2.7	255	6.08
	20-49인	5,563	160,212	28.8	7.9	301	5.49
	50-99인	1,063	72,165	67.9	14.0	122	8.35
	100-299인	512	79,957	156.2	51.1	192	5.59
	300인 이상	128	68,021	531.4	263.5	128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10-19인	10,065	129,469	12.9	2.7	197	6.91
	20-49인	3,800	107,904	28.4	7.7	210	6.57
	50-99인	742	50,300	67.8	14.3	96	9.33
	100-299인	428	63,646	148.7	41.9	141	6.76
	300인 이상	48	33,496	697.8	801.3	48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0-19인	3,245	43,967	13.5	2.8	86	10.43
	20-49인	3,054	92,989	30.4	8.3	186	6.96
	50-99인	1,238	84,650	68.4	13.6	134	7.99
	100-299인	753	118,978	158.0	52.1	273	4.74
	300인 이상	75	37,979	506.4	236.0	75	
50.수상 운송업	10-19인	189	2,595	13.7	3.0	34	15.22
	20-49인	146	4,453	30.5	8.6	38	13.67
	50-99인	37	2,588	69.9	15.4	34	4.79
	100-299인	26	4,155	159.8	43.8	26	
	300인 이상	8	4,326	540.8	353.1	8	
51.항공 운송업	10-19인	35	475	13.6	2.8	31	5.95
	20-49인	21	644	30.7	5.8	21	
	50-99인	7	520	74.3	15.0	7	
	100-299인	11	1,848	168.0	50.0	11	
	300인 이상	10	26,334	2633.4	3277.4	10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0-19인	2,748	36,465	13.3	2.7	76	11.08
	20-49인	1,785	53,205	29.8	8.2	120	8.64
	50-99인	584	39,948	68.4	14.7	83	9.96
	100-299인	390	59,641	152.9	52.2	156	6.08
	300인 이상	72	48,235	669.9	550.3	72	
55.숙박업	10-19인	683	8,875	13.0	2.8	42	14.65
	20-49인	432	12,782	29.6	8.1	52	12.75
	50-99인	137	9,244	67.5	13.1	41	12.81
	100-299인	74	12,219	165.1	52.6	54	6.93
	300인 이상	32	16,915	528.6	253.7	32	
56.음식점 및 주점업	10-19인	15,937	200,185	12.6	2.5	277	5.84
	20-49인	2,897	81,082	28.0	7.8	169	7.32
	50-99인	330	20,873	63.3	11.4	53	12.33
	100-299인	40	5,847	146.2	44.9	40	
	300인 이상	4	2,434	608.5	198.6	4	
58.출판업	10-19인	3,350	44,441	13.3	2.7	87	10.37
	20-49인	2,350	69,705	29.7	8.2	149	7.77
	50-99인	743	51,266	69.0	14.3	96	9.33
	100-299인	429	69,085	161.0	49.3	161	6.10
	300인 이상	115	74,922	651.5	608.1	115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0-19인	753	9,998	13.3	2.7	43	14.51
	20-49인	556	15,783	28.4	7.6	56	12.42
	50-99인	86	5,751	66.9	13.3	37	12.16
	100-299인	52	8,229	158.3	57.9	49	3.36
	300인 이상	10	4,372	437.2	132.5	10	
60.방송업	10-19인	88	1,189	13.5	2.7	31	14.17

60.방송업	20~49인	113	3,588	31.8	8.4	36	13.48
	50~99인	57	4,072	71.4	13.7	35	10.29
	100~299인	38	5,761	151.6	47.1	38	
	300인 이상	15	13,502	900.1	981.7	15	
61.우편 및 통신업	10~19인	379	5,109	13.5	2.9	37	15.30
	20~49인	352	10,728	30.5	8.6	49	12.99
	50~99인	179	12,224	68.3	14.0	46	12.46
	100~299인	175	30,030	171.6	52.4	87	7.45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00인 이상	23	20,803	904.5	995.5	23	
	10~19인	1,146	15,291	13.3	2.8	50	13.55
	20~49인	841	25,112	29.9	8.1	72	11.04
	50~99인	260	17,842	68.6	13.8	52	12.16
63.정보서비스업	100~299인	154	25,490	165.5	51.6	79	7.69
	300인 이상	48	45,135	940.3	1699.6	48	
	10~19인	434	5,724	13.2	2.7	37	15.41
	20~49인	287	8,735	30.4	8.6	45	13.41
64.금융업	50~99인	110	7,508	68.3	13.7	39	12.61
	100~299인	74	12,240	165.4	50.0	53	7.17
	300인 이상	33	26,918	815.7	867.9	33	
	10~19인	5,995	78,000	13.0	2.6	126	8.64
65.보험 및 연금업	20~49인	1,616	45,029	27.9	7.7	107	9.15
	50~99인	260	17,152	66.0	12.8	51	12.30
	100~299인	124	20,424	164.7	52.1	70	7.73
	300인 이상	60	61,573	1026.2	1041.8	60	
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19인	1,025	14,054	13.7	2.9	48	13.81
	20~49인	2,489	81,695	32.8	8.0	153	7.68
	50~99인	792	50,605	63.9	12.5	91	9.66
	100~299인	160	23,901	149.4	48.4	78	7.94
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00인 이상	49	36,999	755.1	549.2	49	
	10~19인	2,250	30,324	13.5	2.7	68	11.70
	20~49인	1,663	49,504	29.8	8.0	112	8.94
	50~99인	432	28,216	65.3	13.3	66	11.10
68.부동산업	100~299인	151	23,084	152.9	54.4	81	7.41
	300인 이상	54	40,852	756.5	584.6	54	
	10~19인	6,844	87,832	12.8	2.6	141	8.17
	20~49인	1,937	54,310	28.0	7.5	119	8.70
70.연구개발업	50~99인	229	15,191	66.3	13.2	49	12.41
	100~299인	156	25,357	162.5	55.6	84	7.26
	300인 이상	39	27,875	714.7	565.7	39	
	10~19인	1,284	17,450	13.6	2.8	53	13.18
71.전문 서비스업	20~49인	946	27,788	29.4	7.9	76	10.78
	50~99인	326	22,194	68.1	13.6	57	11.79
	100~299인	263	44,370	168.7	58.0	124	6.40
	300인 이상	130	172,200	1324.6	3528.4	130	
71.전문 서비스업	10~19인	4,688	60,712	13.0	2.7	108	9.32
	20~49인	2,271	66,421	29.2	8.1	144	7.90
	50~99인	642	44,259	68.9	14.4	87	9.77
	100~299인	385	63,266	164.3	53.1	156	6.05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00인 이상	170	135,526	797.2	761.4	170	
	10~19인	4,209	56,332	13.4	2.7	101	9.63
	20~49인	2,550	74,298	29.1	7.9	155	7.63
	50~99인	649	44,427	68.5	13.9	86	9.84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299인	331	53,740	162.4	52.3	137	6.41
	300인 이상	113	65,211	577.1	342.2	113	
	10~19인	926	12,073	13.0	2.7	45	14.25
	20~49인	452	12,822	28.4	7.7	52	12.78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0~99인	80	5,347	66.8	12.9	36	12.11
	100~299인	34	4,797	141.1	41.2	34	
	300인 이상	6	3,117	519.5	157.9	6	
	10~19인	1,567	21,263	13.6	2.8	57	12.74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0~49인	1,329	40,118	30.2	8.4	99	9.48
	50~99인	492	34,112	69.3	13.9	72	10.67
	100~299인	396	65,405	165.2	53.5	161	5.95
	300인 이상	160	115,469	721.7	937.9	160	

75.사업지원 서비스업	10~19인	3,034	40,696	13.4	2.8	83	10.61
	20~49인	3,033	91,971	30.3	8.3	187	6.94
	50~99인	1,225	84,867	69.3	14.5	140	7.79
	100~299인	1,029	171,260	166.4	54.0	373	4.05
	300인 이상	484	374,227	773.2	793.6	484	
76.임대업; 부동산 제외	10~19인	774	10,368	13.4	2.8	43	14.52
	20~49인	509	14,104	27.7	6.7	51	13.02
	50~99인	44	2,916	66.3	13.2	34	8.01
	100~299인	21	2,940	140.0	39.2	21	
	300인 이상	6	2,363	393.8	20.8	6	
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19인	2,621	39,226	15.0	2.7	75	11.15
	20~49인	4,448	131,686	29.6	7.7	242	6.13
	50~99인	1,116	76,639	68.7	14.2	128	8.15
	100~299인	959	156,344	163.0	53.0	344	4.23
	300인 이상	567	471,972	832.4	672.5	567	
85.교육 서비스업	10~19인	9,254	124,600	13.5	2.8	191	7.02
	20~49인	8,535	264,011	30.9	8.6	485	4.32
	50~99인	6,464	455,340	70.4	13.3	563	3.95
	100~299인	1,359	173,527	127.7	38.0	349	4.52
	300인 이상	283	253,436	895.5	816.3	283	
86.보건업	10~19인	7,870	102,728	13.1	2.7	161	7.64
	20~49인	3,449	103,383	30.0	8.4	209	6.57
	50~99인	1,970	140,323	71.2	13.8	198	6.61
	100~299인	1,260	199,538	158.4	51.8	433	3.82
	300인 이상	323	338,860	1049.1	1178.0	323	
87.사회복지 서비스업	10~19인	18,719	252,764	13.5	2.7	346	5.22
	20~49인	11,471	350,032	30.5	8.2	613	3.85
	50~99인	3,189	210,494	66.0	13.1	289	5.50
	100~299인	884	144,623	163.6	53.0	320	4.38
	300인 이상	168	123,757	736.6	688.0	168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19인	1,033	13,655	13.2	2.7	47	13.97
	20~49인	647	19,840	30.7	8.4	64	11.63
	50~99인	189	12,744	67.4	13.1	45	12.75
	100~299인	99	15,094	152.5	50.5	61	7.77
	300인 이상	15	6,780	452.0	102.3	15	
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0~19인	2,095	26,969	12.9	2.6	64	12.06
	20~49인	753	22,175	29.4	8.0	67	11.43
	50~99인	243	17,008	70.0	14.5	52	12.05
	100~299인	287	44,685	155.7	46.4	112	7.23
	300인 이상	29	19,784	682.2	598.7	29	
94.협회 및 단체	10~19인	1,644	21,269	12.9	2.7	58	12.64
	20~49인	663	19,202	29.0	8.1	63	11.75
	50~99인	160	10,718	67.0	12.8	43	12.78
	100~299인	84	12,255	145.9	44.5	53	8.18
	300인 이상	7	3,188	455.4	166.7	7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0~19인	1,999	26,795	13.4	2.8	65	11.96
	20~49인	1,048	29,494	28.1	7.2	77	10.75
	50~99인	117	7,983	68.2	14.2	40	12.57
	100~299인	27	3,770	139.6	41.6	27	
	300인 이상						
96.기타 개인 서비스업	10~19인	2,316	30,647	13.2	2.8	70	11.53
	20~49인	998	28,292	28.3	7.5	76	10.80
	50~99인	144	9,610	66.7	13.6	42	12.73
	100~299인	63	9,460	150.2	49.8	49	6.60
	300인 이상	8	3,246	405.8	81.8	8	

기준

- 1) 건설업 업종은 건축, 토목, 기타로 구분
- 2) 규모층을 공사금액 기준으로
 20억원~50억원 미만
 50억원~120억원 미만
 120억원~800억원 미만
 800억원~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으로 구분

표본배분방법

- 질사추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사업체와 모집단 사업체수가 적은 토목 사업체는 전수조사 실시
- 과표본추출 총별 최소 표본 수 60개 확보
 업종 by 공사금액 규모 세부 단위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95% 신뢰수준 하에서 허용오차를 10% 이내로 최소 표본 수 확보
- 네이만배분 총별 크기와 분산을 고려하여 배분

20억원 이상

그룹	공사금액	사업장수	공사금액 평균	공사금액 표준편차	표본수	허용오차
전체		31,950			3,000	1.70
A_건축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733	3,297,808,722	888,897,623	99	9.79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4,731	7,631,877,426	1,913,366,295	112	9.15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4,658	32,511,608,707	18,701,483,234	558	3.89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158	111,099,785,906	20,215,234,120	194	6.42
	1,500억원 이상	1,332	327,821,998,490	486,388,708,701	1,332	0.00
B_토목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4	3,208,675,628	867,173,464	54	0.00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33	7,385,073,258	1,841,400,066	33	0.00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14	20,575,356,090	7,160,570,780	14	0.00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					
C_기타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181	3,159,007,751	860,002,520	95	9.99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3,201	7,370,771,224	1,855,474,741	94	9.96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1,553	26,729,982,132	15,566,305,443	198	6.51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62	108,300,190,426	18,370,875,570	77	8.09
	1,500억원 이상	140	551,249,731,145	1,850,922,168,626	140	0.00

부록 5-3. 3안: 17개 대업종 (대17) + 제조업 (중25) +건설업

기준

- 1) 전사제 업종중 대분류 기준 다음업종 제외(건설업), 제조업은 중분류로 분류
- 2) 1인 자영자는 제외
- 3) 규모종을 5~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으로 세분화

표본배분방법

질사추출
과표분출

종사자수 300명 이상 모든 사업체는 전수조사 실시

중별 최소 표본수 40기 확보

업종 by 종사자 규모 세부 단위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95% 신뢰수준 하에서 허용오차를 14% 이내로 최소 표본 수 확보

네이만배분

중별 크기와 분산을 고려하여 배분

업종 대분류	업종 중분류	규모종	사업체 수	종사자 합계	종사자 평균	종사자 표준편차	2만7천계	
							표본수	허용오차
전체			758,491	16,025,599	21.1	123.9	27,000	0.59
A. 농업, 임업 및 어업		5~19인	2,944	25,188	8.6	3.5	82	10.67
		20~49인	451	13,323	29.5	7.8	54	12.51
		50~99인	84	5,719	68.1	14.7	45	9.95
		100~299인	24	3,338	139.1	26.2	24	
		300인 이상	2	1,119	559.5	257.5	2	
B. 광업		5~19인	355	3,557	10.0	4.3	46	13.48
		20~49인	146	4,301	29.5	7.7	45	12.15
		50~99인	18	1,272	70.7	16.1	18	
		100~299인	2	357	178.5	78.5	2	
		300인 이상	3	1,689	563.0	77.9	3	
C. 제조업	10.식품 제조업	5~19인	9,997	89,672	9.0	3.9	198	6.90
		20~49인	2,240	67,657	30.2	8.4	116	8.86
		50~99인	619	42,361	68.4	14.0	75	10.61
		100~299인	305	48,862	160.2	49.5	101	7.97
		300인 이상	54	28,954	536.2	253.0	54	
	11.음료 제조업	5~19인	396	3,378	8.5	3.8	46	13.58
		20~49인	84	2,666	31.7	8.8	43	10.44
		50~99인	43	2,898	67.4	11.1	41	3.30
		100~299인	32	5,424	169.5	57.1	32	
		300인 이상	8	3,181	397.6	93.1	8	
	12.담배 제조업	5~19인	1	9	9.0	0.0	1	
		20~49인	1	37	37.0	0.0	1	
		50~99인	1	86	86.0	0.0	1	
		100~299인	1	146	146.0	0.0	1	
		300인 이상	2	1,145	572.5	253.5	2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5~19인	5,319	45,333	8.5	3.7	120	8.84
		20~49인	897	26,286	29.3	7.9	69	11.33
		50~99인	200	13,790	69.0	13.2	51	11.84
		100~299인	59	8,362	141.7	43.0	50	5.41
		300인 이상	4	2,115	528.8	339.1	4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19인	5,669	44,892	7.9	3.3	115	9.05
		20~49인	493	14,179	28.8	7.8	55	12.46
		50~99인	97	6,429	66.3	14.0	45	10.70
		100~299인	34	5,315	156.3	52.8	34	
		300인 이상	8	5,917	739.6	454.9	8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19인	1,244	10,234	8.2	3.5	58	12.56
		20~49인	170	4,851	28.5	8.6	46	12.34
		50~99인	27	1,838	68.1	13.0	27	
		100~299인	10	1,527	152.7	56.8	10	
		300인 이상	1	321	321.0	0.0	1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19인	1,941	16,656	8.6	3.5	68	11.67
		20~49인	223	6,130	27.5	7.1	46	12.87
		50~99인	20	1,379	69.0	17.2	20	
		100~299인	18	3,075	170.8	47.8	18	
		300인 이상	2	618	309.0	1.0	2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19인	2,932	26,774	9.1	3.9	87	10.35
		20~49인	671	19,612	29.2	7.8	61	11.96
		50~99인	154	10,573	68.7	14.8	49	11.56
		100~299인	82	12,419	151.5	47.7	56	7.37
		300인 이상	8	3,298	412.3	74.5	8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19인	2,870	23,461	8.2	3.5	81	10.73
		20~49인	371	10,685	28.8	8.3	52	12.60
		50~99인	46	2,980	64.8	12.8	42	4.46
		100~299인	23	3,519	153.0	44.5	23	
		300인 이상						
	19.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19인	155	1,592	10.3	4.1	43	12.70
		20~49인	51	1,330	26.1	6.2	41	6.78
		50~99인	10	664	66.4	12.3	10	
		100~299인	6	960	160.0	56.3	6	

C. 제조업	19.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00인 이상	6	8,495	1415.8	595.9	6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19인	4,611	41,912	91	3.9	113	9.11
		20~49인	1,158	35,299	305	8.4	80	10.57
		50~99인	354	24,318	687	13.7	60	11.53
		100~299인	241	37,434	1553	47.5	86	8.47
		300인 이상	59	35,337	598.9	355.3	59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19인	452	4,387	9.7	4.2	48	13.37
		20~49인	247	7,930	32.1	8.7	49	12.53
		50~99인	123	8,595	69.9	14.2	47	11.24
		100~299인	125	20,799	166.4	52.9	67	8.16
		300인 이상	30	20,022	667.4	804.3	30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19인	9,027	82,253	91	3.9	183	7.17
		20~49인	2,269	66,845	295	8.0	114	8.94
		50~99인	491	33,024	67.3	13.7	67	11.13
		100~299인	240	37,410	155.9	48.2	87	8.39
		300인 이상	36	27,675	768.8	625.1	36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19인	3,910	37,467	9.6	4.0	104	9.48
		20~49인	939	27,177	28.9	7.9	70	11.27
		50~99인	199	13,777	69.2	14.0	51	11.69
		100~299인	97	14,988	154.5	50.6	60	7.81
		300인 이상	17	9,770	574.7	538.3	17	
	24.자 금속 제조업	5~19인	3,656	34,969	9.6	4.0	100	9.67
		20~49인	1,104	32,337	29.3	7.8	75	10.92
		50~99인	271	18,423	68.0	12.7	54	11.93
		100~299인	135	22,167	164.2	54.5	70	8.13
		300인 이상	44	48,455	1101.3	1685.4	44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19인	18,766	162,483	87	3.7	324	5.40
		20~49인	3,097	89,935	29.0	7.8	138	8.15
		50~99인	472	31,595	66.9	13.9	67	11.09
		100~299인	203	31,261	154.0	49.5	81	8.44
		300인 이상	36	20,970	582.5	514.3	36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19인	5,208	46,462	8.9	3.8	121	8.80
		20~49인	1,227	36,628	29.9	8.1	80	10.59
50~99인		396	26,917	68.0	14.2	63	11.32	
100~299인		251	39,591	157.7	48.3	89	8.35	
300인 이상		111	229,671	2069.1	4740.8	111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19인	4,504	39,489	8.8	3.7	108	9.32	
	20~49인	883	26,410	29.9	8.2	69	11.33	
	50~99인	287	19,586	68.2	14.5	57	11.62	
	100~299인	151	24,563	162.7	52.1	72	8.35	
	300인 이상	21	15,273	727.3	1174.0	21		
28.전기장비 제조업	5~19인	7,602	67,552	8.9	3.8	158	7.72	
	20~49인	1,524	45,633	29.9	8.4	92	9.90	
	50~99인	453	30,885	68.2	13.7	65	11.25	
	100~299인	247	38,683	156.6	48.6	89	8.31	
	300인 이상	76	61,005	802.7	978.8	76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19인	16,017	142,729	8.9	3.9	290	5.70	
	20~49인	3,530	104,782	29.7	8.1	156	7.67	
	50~99인	866	59,175	68.3	14.0	89	9.84	
	100~299인	416	66,774	160.5	51.2	126	7.29	
	300인 이상	72	43,715	607.2	387.3	72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19인	4,414	41,949	9.5	4.1	113	9.10	
	20~49인	2,043	62,366	30.5	8.3	108	9.18	
	50~99인	661	45,840	69.3	14.0	77	10.50	
	100~299인	417	67,811	162.6	53.3	130	7.13	
	300인 이상	112	136,716	1220.7	3339.8	112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19인	1,673	15,859	9.5	3.8	66	11.82	
	20~49인	598	18,113	30.3	8.4	60	12.00	
	50~99인	334	23,301	69.8	13.4	58	11.70	
	100~299인	118	16,067	136.2	43.5	61	8.72	
	300인 이상	24	52,103	2171.0	2797.1	24		
32.가구 제조업	5~19인	3,014	25,509	8.5	3.7	85	10.48	
	20~49인	420	12,162	29.0	7.7	53	12.58	
	50~99인	46	3,028	65.8	13.6	43	3.82	
	100~299인	14	2,143	153.1	40.2	14		
	300인 이상							
33.기타 제품 제조업	5~19인	2,818	23,300	8.3	3.6	81	10.73	
	20~49인	324	9,462	29.2	8.0	50	12.75	
	50~99인	67	4,675	69.8	14.2	44	8.66	
	100~299인	15	2,201	146.7	51.4	15		
	300인 이상	3	1,474	491.3	110.5	3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5~19인	1,411	11,430	8.1	3.5	60	12.38	
	20~49인	217	6,447	29.7	8.3	47	12.65	

C. 제조업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50~99인	72	5,068	70.4	15.2	44	9.21
		100~299인	69	12,495	181.1	52.9	55	5.95
		300인 이상	6	3,274	545.7	286.3	6	
		5~19인	417	3,567	8.6	3.6	46	13.63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49인	211	7,312	34.7	8.4	47	12.60	
	50~99인	207	14,590	70.5	13.0	51	11.91	
	100~299인	94	16,412	174.6	59.4	63	7.09	
	300인 이상	33	25,702	778.8	592.9	33		
	5~19인	3,699	34,770	9.4	4.0	100	9.67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49인	1,330	41,806	31.4	8.5	86	10.22	
	50~99인	350	23,060	65.9	13.3	59	11.63	
	100~299인	105	15,363	146.3	42.2	58	8.61	
	300인 이상	4	2,923	730.8	626.4	4		
	5~19인	113,124	881,458	7.8	3.3	1,555	2.47	
G. 도매 및 소매업	20~49인	10,010	285,589	28.5	7.8	355	5.11	
	50~99인	1,897	128,551	67.8	14.1	148	7.73	
	100~299인	966	147,652	152.8	47.4	225	5.72	
	300인 이상	179	103,672	579.2	480.2	179		
	5~19인	14,920	140,529	9.4	4.0	280	5.80	
H. 운수 및 창고업	20~49인	5,006	151,291	30.2	8.3	207	6.67	
	50~99인	1,866	127,706	68.4	14.0	146	7.79	
	100~299인	1,180	184,622	156.5	52.0	288	5.02	
	300인 이상	165	116,874	708.3	102.94	165		
	5~19인	98,381	711,817	7.2	2.9	1,182	2.83	
I. 숙박 및 음식점업	20~49인	3,329	93,864	28.2	7.8	145	7.96	
	50~99인	467	30,117	64.5	12.1	63	11.48	
	100~299인	114	18,066	158.5	50.9	63	8.26	
	300인 이상	36	19,349	537.5	249.4	36		
	5~19인	17,176	153,526	8.9	3.8	305	5.56	
J. 정보통신업	20~49인	4,499	133,651	29.7	8.2	189	6.98	
	50~99인	1,435	98,663	68.8	14.1	122	8.49	
	100~299인	922	150,835	163.6	51.0	230	5.60	
	300인 이상	244	185,652	760.9	100.88	244		
	5~19인	19,978	195,437	9.8	3.8	348	5.21	
K. 금융 및 보험업	20~49인	5,768	176,228	30.6	8.2	231	6.32	
	50~99인	1,484	95,973	64.7	12.8	117	8.70	
	100~299인	435	67,409	155.0	52.0	131	7.16	
	300인 이상	163	139,424	855.4	787.7	163		
	5~19인	25,778	209,180	8.1	3.4	390	4.92	
L. 부동산업	20~49인	1,937	54,310	28.0	7.5	99	9.59	
	50~99인	229	15,191	66.3	13.2	52	11.95	
	100~299인	156	25,357	162.5	55.6	75	8.15	
	300인 이상	39	27,875	714.7	565.7	39		
	5~19인	36,738	310,088	8.4	3.7	583	4.0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49인	6,219	181,329	29.2	8.0	241	6.19	
	50~99인	1,697	116,227	68.5	14.0	136	8.06	
	100~299인	1,013	166,173	164.0	54.1	262	5.21	
	300인 이상	419	376,054	897.5	205.43	419		
	5~19인	14,819	132,987	9.0	3.9	276	5.8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49인	4,871	146,193	30.0	8.2	202	6.75	
	50~99인	1,761	121,895	69.2	14.3	142	7.89	
	100~299인	1,446	239,605	165.7	53.8	355	4.52	
	300인 이상	650	492,059	757.0	829.0	650		
	5~19인	3,912	48,703	12.4	4.3	108	9.3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49인	4,448	131,686	29.6	7.7	179	7.18	
	50~99인	1,116	76,639	68.7	14.2	104	9.15	
	100~299인	959	156,344	163.0	53.0	246	5.39	
	300인 이상	567	471,972	832.4	672.5	567		
	5~19인	30,864	261,678	8.5	3.8	512	4.29	
P. 교육 서비스업	20~49인	8,535	264,011	30.9	8.6	338	5.22	
	50~99인	6,464	455,340	70.4	13.3	389	4.82	
	100~299인	1,359	173,527	127.7	38.0	249	5.61	
	300인 이상	283	253,436	895.5	816.3	283		
	5~19인	72,263	656,953	9.1	3.8	1,154	2.86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49인	14,920	453,415	30.4	8.3	540	4.14	
	50~99인	5,159	350,817	68.0	13.6	325	5.26	
	100~299인	2,144	344,161	160.5	52.4	494	3.87	
	300인 이상	491	462,617	942.2	1047.3	491		
	5~19인	12,610	100,620	8.0	3.4	212	6.6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49인	1,400	42,015	30.0	8.2	87	10.18	
	50~99인	432	29,752	68.9	13.9	64	11.31	
	100~299인	386	59,779	154.9	47.5	114	7.70	
	300인 이상	44	26,564	603.7	501.8	44		
	5~19인	12,610	100,620	8.0	3.4	212	6.67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9인	22,075	181,092	8.2	3.6	358	5.14
	20~49인	2,709	76,988	28.4	7.6	123	8.63
	50~99인	421	28,311	67.2	13.5	63	11.39
	100~299인	174	25,485	146.5	46.2	73	8.74
	300인 이상	15	6,434	428.9	130.9	15	

기준

- 1) 건설업 업종은 건축, 토목, 기타로 구분
- 2) 규모층을 공사금액 기준으로
 20억원~50억원 미만
 50억원~120억원 미만
 120억원~800억원 미만
 800억원~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으로 구분

표본배분방법

절사추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사업체와 모집단 사업체수가 적은 토목 사업체는 전수조사 실시

과표본추출 층별 최소 표본 수 60개 확보

업종 by 공사금액 규모 세부 단위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95% 신뢰수준 하에서 허용오차를 10% 이내로 최소 표본 수 확보

네이만배분 층별 크기와 분산을 고려하여 배분

20억원 이상

그룹	공사금액	사업장수	공사금액 평균	공사금액 표준편차	표본수	허용오차
전체		31,950			3,000	1.70
A_건축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733	3,297,808,722	888,897,623	99	9.79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4,731	7,631,877,426	1,913,366,295	112	9.15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4,658	32,511,608,707	18,701,483,234	558	3.89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158	111,099,785,906	20,215,234,120	194	6.42
	1,500억원 이상	1,332	327,821,998,490	486,388,708,701	1,332	0.00
B_토목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4	3,208,675,628	867,173,464	54	0.00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33	7,385,073,258	1,841,400,066	33	0.00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14	20,575,356,090	7,160,570,780	14	0.00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					
C_기타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181	3,159,007,751	860,002,520	95	9.99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3,201	7,370,771,224	1,855,474,741	94	9.96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1,553	26,729,982,132	15,566,305,443	198	6.51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62	108,300,190,426	18,370,875,570	77	8.09
	1,500억원 이상	140	551,249,731,145	1,850,922,168,626	140	0.00

부록 5-4. 4안: 17개 대업종 (대17) + 제조업 (중25) + 건설업

기준

- 1) 전사제 업종중 대분류 기준 다음업종 제외(건설업), 제조업은 중분류로 분류
- 2) 1인 자영자는 제외
- 3) 규모중을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으로 세분화

표본배분방법

질사추출

과표분출

네이만배분

종사자수 300명 이상 모든 사업체는 전수조사 실시

중별 최소 표본수 40개 확보

업종 by 종사자 규모 세부 단위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95% 신뢰수준 하에서 허용오차를 14% 이내로 최소 표본수 확보

중별 크기와 분산을 고려하여 배분

업종 대분류	업종 중분류	규모종	사업체 수	종사자 합계	종사자 평균	종사자 표준편차	2만7천계	
							표본수	허용오차
전체			330,054	13,297,928	40.3	186.1	27,000	0.57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19인	886	11,656	13.2	2.7	56	12.68
		20~49인	451	13,323	29.5	7.8	64	11.35
		50~99인	84	5,718	68.1	14.7	48	9.26
		100~299인	24	3,338	139.1	26.2	24	
		300인 이상	2	1,119	559.5	257.5	2	
B. 광업		10~19인	169	2,338	13.8	3.0	43	12.90
		20~49인	146	4,301	29.5	7.7	48	11.59
		50~99인	18	1,272	70.7	16.1	18	
		100~299인	2	357	178.5	78.5	2	
		300인 이상	3	1,689	563.0	77.9	3	
C. 제조업	10.식품 제조업	10~19인	3,549	47,671	13.4	2.9	109	9.24
		20~49인	2,240	67,657	30.2	8.4	167	7.30
		50~99인	619	42,361	68.4	14.0	98	9.08
		100~299인	305	48,862	160.2	49.5	142	6.01
		300인 이상	54	28,954	536.2	253.0	54	
	11.음료 제조업	10~19인	118	1,584	13.4	3.1	42	12.14
		20~49인	84	2,666	31.7	8.8	45	9.95
		50~99인	43	2,898	67.4	11.1	43	
		100~299인	32	5,424	169.5	57.1	32	
		300인 이상	8	3,181	397.6	93.1	8	
	12.담배 제조업	10~19인						
		20~49인	1	37	37.0	0.0	1	
		50~99인	1	86	86.0	0.0	1	
		100~299인	1	146	146.0	0.0	1	
		300인 이상	2	1,145	572.5	253.5	2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0~19인	1,740	22,630	13.0	2.8	73	11.23
		20~49인	897	26,286	29.3	7.9	88	9.92
		50~99인	200	13,790	69.0	13.2	58	10.84
		100~299인	59	8,362	141.7	43.0	55	3.44
		300인 이상	4	2,115	528.8	339.1	4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19인	1,508	18,750	12.4	2.7	67	11.70
		20~49인	493	14,179	28.8	7.8	66	11.23
		50~99인	97	6,429	66.3	14.0	49	9.85
		100~299인	34	5,315	156.3	52.8	34	
		300인 이상	8	5,917	739.6	454.9	8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19인	367	4,716	12.9	2.6	46	13.51
		20~49인	170	4,851	28.5	8.6	50	11.64
		50~99인	27	1,838	68.1	13.0	27	
		100~299인	10	1,527	152.7	56.8	10	
		300인 이상	1	321	321.0	0.0	1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19인	626	8,080	12.9	2.6	51	13.15
		20~49인	223	6,130	27.5	7.1	51	12.05
		50~99인	20	1,379	69.0	17.2	20	
		100~299인	18	3,075	170.8	47.8	18	
		300인 이상	2	618	309.0	1.0	2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19인	1,128	15,087	13.4	2.9	62	12.10
		20~49인	671	19,612	29.2	7.8	75	10.66
		50~99인	154	10,573	68.7	14.8	55	10.60
		100~299인	82	12,419	151.5	47.7	66	5.33
		300인 이상	8	3,298	412.3	74.5	8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19인	845	10,817	12.8	2.8	56	12.65
		20~49인	371	10,685	28.8	8.3	61	11.47
		50~99인	46	2,980	64.8	12.8	44	3.08
		100~299인	23	3,519	153.0	44.5	23	
		300인 이상						
19.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19인	79	1,075	13.6	3.0	42	10.35	
	20~49인	51	1,330	26.1	6.2	42	6.35	
	50~99인	10	664	66.4	12.3	10		
	100~299인	6	960	160.0	56.3	6		
	300인 이상							

C. 제조업	19.코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00인 이상	6	8,495	1415.8	595.9	6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19인	1,742	23,224	13.3	2.9	74	11.15
		20~49인	1,158	35,299	30.5	8.4	106	9.07
		50~99인	354	24,318	68.7	13.7	73	10.22
		100~299인	241	37,434	155.3	47.5	117	6.50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00인 이상	59	35,337	598.9	355.3	59	
		10~19인	194	2,697	13.9	2.7	44	12.99
		20~49인	247	7,930	32.1	8.7	55	11.65
		50~99인	123	8,595	69.9	14.2	52	10.33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0~299인	125	20,799	166.4	52.9	85	6.01
		300인 이상	30	20,022	667.4	804.3	30	
		10~19인	3,503	46,530	13.3	2.9	108	9.28
		20~49인	2,269	66,845	29.5	8.0	163	7.40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0~99인	491	33,024	67.3	13.7	85	9.67
		100~299인	240	37,410	155.9	48.2	118	6.43
		300인 이상	36	27,675	768.8	625.1	36	
		10~19인	1,714	23,016	13.4	2.8	73	11.22
	24.1차 금속 제조업	20~49인	939	27,177	28.9	7.9	90	9.82
		50~99인	199	13,777	69.2	14.0	59	10.70
		100~299인	97	14,988	154.5	50.6	73	5.71
		300인 이상	17	9,770	574.7	538.3	17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19인	1,618	21,648	13.4	2.9	71	11.37
		20~49인	1,104	32,337	29.3	7.8	98	9.45
		50~99인	271	18,423	68.0	12.7	63	10.82
		100~299인	135	22,167	164.2	54.5	90	5.96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00인 이상	44	48,455	1101.3	1685.4	44	
		10~19인	6,290	82,588	13.1	2.8	160	7.65
		20~49인	3,097	89,935	29.0	7.8	204	6.63
		50~99인	472	31,595	66.9	13.9	84	9.69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0~299인	203	31,261	154.0	49.5	108	6.45
		300인 이상	36	20,970	582.5	514.3	36	
		10~19인	1,868	24,788	13.3	2.9	76	11.01
		20~49인	1,227	36,628	29.9	8.1	107	9.05
	28.전기장비 제조업	50~99인	396	26,917	68.0	14.2	78	9.94
		100~299인	251	39,591	157.7	48.3	122	6.36
		300인 이상	111	229,671	2069.1	4740.8	111	
		10~19인	1,575	20,553	13.0	2.9	70	11.45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49인	883	26,410	29.9	8.2	89	9.85
		50~99인	287	19,586	68.2	14.5	68	10.38
		100~299인	151	24,563	162.7	52.1	93	6.30
300인 이상		21	15,273	727.3	1174.0	21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19인	2,734	36,176	13.2	2.9	93	9.99	
	20~49인	1,524	45,633	29.9	8.4	127	8.33	
	50~99인	453	30,885	68.2	13.7	82	9.79	
	100~299인	247	38,683	156.6	48.6	121	6.36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0인 이상	76	61,005	802.7	978.8	76		
	10~19인	5,849	77,459	13.2	2.8	152	7.84	
	20~49인	3,530	104,782	29.7	8.1	234	6.19	
	50~99인	866	59,175	68.3	14.0	122	8.22	
32.가구 제조업	100~299인	416	66,774	160.5	51.2	184	5.40	
	300인 이상	72	43,715	607.2	387.3	72		
	10~19인	1,835	24,943	13.6	3.0	77	10.93	
	20~49인	2,043	62,366	30.5	8.3	154	7.59	
33.기타 제품 제조업	50~99인	661	45,840	69.3	14.0	102	8.92	
	100~299인	417	67,811	162.6	53.3	190	5.25	
	300인 이상	112	136,716	1220.7	3339.8	112		
	10~19인	738	9,620	13.0	2.7	54	12.84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0~49인	598	18,113	30.3	8.4	74	10.66	
	50~99인	334	23,301	69.8	13.4	70	10.41	
	100~299인	118	16,067	136.2	43.5	75	6.83	
	300인 이상	24	52,103	2171.0	2797.1	24		
35.기타 제품 제조업	10~19인	913	12,101	13.3	2.9	58	12.45	
	20~49인	420	12,162	29.0	7.7	62	11.49	
	50~99인	46	3,028	65.8	13.6	44	3.08	
	100~299인	14	2,143	153.1	40.2	14		
36.기타 제품 제조업	300인 이상							
	10~19인	817	10,699	13.1	2.8	55	12.76	
	20~49인	324	9,462	29.2	8.0	57	11.78	
	50~99인	67	4,675	69.8	14.2	46	8.09	
37.기타 제품 제조업	100~299인	15	2,201	146.7	51.4	15		
	300인 이상	3	1,474	491.3	110.5	3		
	10~19인	363	4,781	13.2	2.8	47	13.34	
	20~49인	217	6,447	29.7	8.3	52	11.85	

C. 제조업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50~99인	72	5,068	70.4	15.2	47	8.42
		100~299인	69	12,495	181.1	52.9	65	2.93
		300인 이상	6	3,274	545.7	286.3	6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19인	129	1,707	13.2	2.6	42	12.42	
	20~49인	211	7,312	34.7	8.4	52	11.80	
	50~99인	207	14,590	70.5	13.0	58	10.92	
	100~299인	94	16,412	174.6	59.4	78	4.58	
	300인 이상	33	25,702	778.8	592.9	33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0~19인	1,482	20,099	13.6	2.8	68	11.61	
	20~49인	1,330	41,806	31.4	8.5	116	8.69	
	50~99인	350	23,060	65.9	13.3	71	10.38	
	100~299인	105	15,363	146.3	42.2	70	6.76	
	300인 이상	4	2,923	730.8	626.4	4		
G. 도매 및 소매업	10~19인	25,710	334,126	13.0	2.7	511	4.29	
	20~49인	10,010	285,589	28.5	7.8	566	4.00	
	50~99인	1,897	128,551	67.8	14.1	220	6.21	
	100~299인	966	147,652	152.8	47.4	349	4.19	
	300인 이상	179	103,672	579.2	480.2	179		
H. 운수 및 항공업	10~19인	6,217	83,502	13.4	2.8	157	7.72	
	20~49인	5,006	151,291	30.2	8.3	319	5.31	
	50~99인	1,866	127,706	68.4	14.0	216	6.27	
	100~299인	1,180	184,622	156.5	52.0	455	3.60	
	300인 이상	165	116,874	708.3	1029.4	165		
I. 숙박 및 음식점업	10~19인	16,620	209,060	12.6	2.5	323	5.40	
	20~49인	3,329	93,864	28.2	7.8	216	6.45	
	50~99인	467	30,117	64.5	12.1	78	10.13	
	100~299인	114	18,066	158.5	50.9	79	6.11	
	300인 이상	36	19,349	537.5	249.4	36		
J. 정보통신업	10~19인	6,150	81,752	13.3	2.8	155	7.77	
	20~49인	4,499	133,651	29.7	8.2	289	5.58	
	50~99인	1,435	98,663	68.8	14.1	177	6.90	
	100~299인	922	150,835	163.6	51.0	358	4.05	
	300인 이상	244	185,652	760.9	1008.8	244		
K. 금융 및 보험업	10~19인	9,270	122,378	13.2	2.7	208	6.72	
	20~49인	5,768	176,228	30.6	8.2	359	5.01	
	50~99인	1,484	95,973	64.7	12.8	169	7.10	
	100~299인	435	67,409	155.0	52.0	193	5.26	
	300인 이상	163	139,424	855.4	787.7	163		
L. 부동산업	10~19인	6,844	87,832	12.8	2.6	162	7.61	
	20~49인	1,937	54,310	28.0	7.5	138	8.04	
	50~99인	229	15,191	66.3	13.2	60	10.87	
	100~299인	156	25,357	162.5	55.6	99	5.95	
	300인 이상	39	27,875	714.7	565.7	39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19인	11,107	146,567	13.2	2.7	246	6.18	
	20~49인	6,219	181,329	29.2	8.0	376	4.90	
	50~99인	1,697	116,227	68.5	14.0	200	6.51	
	100~299인	1,013	166,173	164.0	54.1	410	3.73	
	300인 이상	419	376,054	897.5	2054.3	419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19인	5,375	72,327	13.5	2.8	142	8.11	
	20~49인	4,871	146,193	30.0	8.2	311	5.38	
	50~99인	1,761	121,895	69.2	14.3	210	6.35	
	100~299인	1,446	239,605	165.7	53.8	565	3.22	
	300인 이상	650	492,059	757.0	829.0	65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19인	2,621	39,226	15.0	2.7	89	10.21	
	20~49인	4,448	131,686	29.6	7.7	272	5.76	
	50~99인	1,116	76,639	68.7	14.2	147	7.53	
	100~299인	959	156,344	163.0	53.0	383	3.88	
	300인 이상	567	471,972	832.4	672.5	567		
P. 교육 서비스업	10~19인	9,254	124,600	13.5	2.8	216	6.59	
	20~49인	8,535	264,011	30.9	8.6	538	4.09	
	50~99인	6,464	455,340	70.4	13.3	622	3.74	
	100~299인	1,359	173,527	127.7	38.0	388	4.21	
	300인 이상	283	253,436	895.5	816.3	28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9인	26,589	355,492	13.4	2.7	529	4.22	
	20~49인	14,920	453,415	30.4	8.3	874	3.22	
	50~99인	5,159	350,817	68.0	13.6	515	4.10	
	100~299인	2,144	344,161	160.5	52.4	798	2.75	
	300인 이상	491	462,617	942.2	1047.3	49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19인	3,128	40,624	13.0	2.7	97	9.79	
	20~49인	1,400	42,015	30.0	8.2	118	8.63	
	50~99인	432	29,752	68.9	13.9	81	9.82	
	100~299인	386	59,779	154.9	47.5	164	5.80	
	300인 이상	44	26,564	603.7	501.8	44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19인	5,959	78,711	13.2	2.8	153	7.82
	20~49인	2,709	76,988	28.4	7.6	178	7.10
	50~99인	421	28,311	67.2	13.5	78	10.02
	100~299인	174	25,485	146.5	46.2	94	6.85
	300인 이상	15	6,434	428.9	130.9	15	

기준

- 1) 건설업 업종은 건축, 토목, 기타로 구분
- 2) 규모층을 공사금액 기준으로
 20억원~50억원 미만
 50억원~120억원 미만
 120억원~800억원 미만
 800억원~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으로 구분

표본배분방법

- 절사추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사업체와 모집단 사업체수가 적은 토목 사업체는 전수조사 실시
 과표본추출 층별 최소 표본 수 60개 확보
 업종 by 공사금액 규모 세부 단위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95% 신뢰수준 하에서 허용오차를 10% 이내로
 최소 표본 수 확보
- 네이만배분 층별 크기와 분산을 고려하여 배분

20억원 이상

그룹	공사금액	사업장수	공사금액 평균	공사금액 표준편차	표본수	허용오차
전체		31,950			3,000	1.70
A_건축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733	3,297,808,722	888,897,623	99	9.79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4,731	7,631,877,426	1,913,366,295	112	9.15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4,658	32,511,608,707	18,701,483,234	558	3.89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158	111,099,785,906	20,215,234,120	194	6.42
	1,500억원 이상	1,332	327,821,998,490	486,388,708,701	1,332	0.00
B_토목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4	3,208,675,628	867,173,464	54	0.00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33	7,385,073,258	1,841,400,066	33	0.00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14	20,575,356,090	7,160,570,780	14	0.00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					
C_기타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181	3,159,007,751	860,002,520	95	9.99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3,201	7,370,771,224	1,855,474,741	94	9.96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1,553	26,729,982,132	15,566,305,443	198	6.51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62	108,300,190,426	18,370,875,570	77	8.09
	1,500억원 이상	140	551,249,731,145	1,850,922,168,626	140	0.00

부록 5-5. 5안: 17개 대업종 (중47) (제조업 제외) +건설업

기준

- 1) 전사체 업종중 대분류 기준 다음업종 제외(건설업, 제조업)
- 2) 1인 자영자는 제외
- 3) 규모층을 5~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으로 세분화

표본배분방법

질사추출
과표본추출

총사자수 300명 이상 모든 사업체는 전수조사 실시

층별 최소 표본 수 40개 확보

업종 by 총사자 규모 세부 단위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95% 신뢰수준 하에서 허용오차를 13% 이내로 최소 표본 수 확보

층별 크기와 분산을 고려하여 배분

네이만배분

업종 중분류	규모층	사업체 수	총사자 합계	총사자 평균	총사자 표준편차	2만7천개	
						표본수	허용오차
		605,745	12,536,184	20.7	102.2	27,000	0.58
1.농업	5~19인	1,950	16,707	8.6	3.7	78	10.87
	20~49인	344	10,045	29.2	7.6	54	12.24
	50~99인	51	3,271	64.1	12.4	43	5.92
	100~299인	12	1,602	133.5	19.3	12	
	300인 이상	1	817	817.0	0.0	1	
2.임업	5~19인	786	6,842	8.7	3.2	54	12.87
	20~49인	73	2,190	30.0	8.3	43	9.58
	50~99인	12	851	70.9	14.7	12	
	100~299인	4	564	141.0	35.5	4	
	300인 이상						
3.어업	5~19인	208	1,639	7.9	3.2	45	12.93
	20~49인	34	1,088	32.0	8.0	34	
	50~99인	21	1,596	76.0	16.2	21	
	100~299인	8	1,172	146.5	27.6	8	
	300인 이상	1	302	302.0	0.0	1	
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5~19인	2	18	9.0	3.0	2	
	20~49인	3	95	31.7	4.9	3	
	50~99인	1	93	93.0	0.0	1	
	100~299인	1	257	257.0	0.0	1	
	300인 이상	2	1,085	542.5	88.5	2	
6.금속 광업	5~19인	4	28	7.0	1.9	4	
	20~49인	3	90	30.0	6.5	3	
	50~99인						
	100~299인	1	100	100.0	0.0	1	
	300인 이상						
7.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5~19인	346	3,479	10.1	4.3	49	12.97
	20~49인	140	4,116	29.4	7.8	46	11.84
	50~99인	17	1,179	69.4	15.6	17	
	100~299인						
	300인 이상						
8.광업 지원 서비스업	5~19인	3	32	10.7	1.7	3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	604	604.0	0.0	1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19인	417	3,567	8.6	3.6	50	13.00
	20~49인	211	7,312	34.7	8.4	50	12.11
	50~99인	207	14,590	70.5	13.0	54	11.47
	100~299인	94	16,412	174.6	59.4	70	5.92
	300인 이상	33	25,702	778.8	592.9	33	
36.수도업	5~19인	123	1,296	10.5	4.6	43	12.05
	20~49인	174	5,853	33.6	8.2	48	12.04
	50~99인	68	4,533	66.7	13.9	45	8.50
	100~299인	41	6,016	146.7	38.2	41	
	300인 이상	2	2,118	1059.0	753.0	2	
37.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5~19인	641	6,174	9.6	4.1	54	12.76
	20~49인	227	6,860	30.2	7.6	49	12.40
	50~99인	47	3,012	64.1	13.6	43	4.36
	100~299인	17	2,840	167.1	35.4	17	

37.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00인 이상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19인	2,885	26,843	9.3	3.9	101	9.58
	20~49인	911	28,576	31.4	8.7	82	10.32
	50~99인	226	14,998	66.4	13.1	56	11.36
	100~299인	46	6,407	139.3	45.2	46	
	300인 이상	2	805	402.5	48.5	2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5~19인	50	457	9.1	4.2	41	6.49
	20~49인	18	517	28.7	7.5	18	
	50~99인	9	517	57.4	6.1	9	
	100~299인	1	100	100.0	0.0	1	
	300인 이상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19인	5,733	52,955	9.2	3.9	161	7.61
	20~49인	647	17,473	27.0	7.3	65	11.53
	50~99인	92	6,086	66.2	12.8	46	10.22
	100~299인	26	4,049	155.7	51.2	26	
	300인 이상	3	2,155	718.3	426.7	3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9인	51,848	418,145	8.1	3.4	995	3.08
	20~49인	5,563	160,212	28.8	7.9	275	5.76
	50~99인	1,063	72,165	67.9	14.0	120	8.43
	100~299인	512	79,957	156.2	51.1	180	5.88
	300인 이상	128	68,021	531.4	263.5	128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5~19인	55,543	410,358	7.4	3.0	946	3.16
	20~49인	3,800	107,904	28.4	7.7	197	6.80
	50~99인	742	50,300	67.8	14.3	97	9.28
	100~299인	428	63,646	148.7	41.9	136	6.94
	300인 이상	48	33,496	697.8	801.3	48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19인	7,182	69,827	9.7	4.1	197	6.89
	20~49인	3,054	92,989	30.4	8.3	176	7.17
	50~99인	1,238	84,650	68.4	13.6	130	8.13
	100~299인	753	118,978	158.0	52.1	251	5.05
	300인 이상	75	37,979	506.4	236.0	75	
50.수상 운송업	5~19인	437	4,236	9.7	4.2	51	12.90
	20~49인	146	4,453	30.5	8.6	47	11.77
	50~99인	37	2,588	69.9	15.4	37	
	100~299인	26	4,155	159.8	43.8	26	
	300인 이상	8	4,326	540.8	353.1	8	
51.항공 운송업	5~19인	78	755	9.7	4.1	42	10.27
	20~49인	21	644	30.7	5.8	21	
	50~99인	7	520	74.3	15.0	7	
	100~299인	11	1,848	168.0	50.0	11	
	300인 이상	10	26,334	2633.4	3277.4	10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19인	7,223	65,711	9.1	3.8	188	7.05
	20~49인	1,785	53,205	29.8	8.2	118	8.72
	50~99인	584	39,948	68.4	14.7	86	9.76
	100~299인	390	59,641	152.9	52.2	149	6.31
	300인 이상	72	48,235	669.9	550.3	72	
55.숙박업	5~19인	3,507	25,903	7.4	3.2	101	9.61
	20~49인	432	12,782	29.6	8.1	59	11.86
	50~99인	137	9,244	67.5	13.1	50	11.04
	100~299인	74	12,219	165.1	52.6	61	5.26
	300인 이상	32	16,915	528.6	253.7	32	
56.음식점 및 주점업	5~19인	94,874	685,914	7.2	2.9	1,491	2.52
	20~49인	2,897	81,082	28.0	7.8	160	7.53
	50~99인	330	20,873	63.3	11.4	60	11.44
	100~299인	40	5,847	146.2	44.9	40	
	300인 이상	4	2,434	608.5	198.6	4	
58.출판업	5~19인	9,083	82,081	9.0	3.8	225	6.45
	20~49인	2,350	69,705	29.7	8.2	143	7.94
	50~99인	743	51,266	69.0	14.3	97	9.28
	100~299인	429	69,085	161.0	49.3	154	6.32
	300인 이상	115	74,922	651.5	608.1	115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19인	2,233	19,537	8.7	3.8	85	10.43
	20~49인	556	15,783	28.4	7.6	63	11.63
	50~99인	86	5,751	66.9	13.3	46	9.85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00~299인	52	8,229	158.3	57.9	52	
	300인 이상	10	4,372	437.2	132.5	10	
60.방송업	5~19인	210	2,016	9.6	3.9	45	12.95
	20~49인	113	3,588	31.8	8.4	45	11.33
	50~99인	57	4,072	71.4	13.7	44	7.06
	100~299인	38	5,761	151.6	47.1	38	
	300인 이상	15	13,502	900.1	981.7	15	
61.우편 및 통신업	5~19인	1,337	10,987	8.2	3.8	67	11.67
	20~49인	352	10,728	30.5	8.6	56	12.01
	50~99인	179	12,224	68.3	14.0	53	11.29
	100~299인	175	30,030	171.6	52.4	89	7.28
	300인 이상	23	20,803	904.5	995.5	23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19인	3,109	28,210	9.1	3.8	104	9.45
	20~49인	841	25,112	29.9	8.1	77	10.64
	50~99인	260	17,842	68.6	13.8	59	11.22
	100~299인	154	25,490	165.5	51.6	83	7.30
	300인 이상	48	45,135	940.3	1,699.6	48	
63.정보서비스업	5~19인	1,204	10,695	8.9	3.8	64	11.92
	20~49인	287	8,735	30.4	8.6	53	12.16
	50~99인	110	7,508	68.3	13.7	48	10.62
	100~299인	74	12,240	165.4	50.0	60	5.50
	300인 이상	33	26,918	815.7	867.9	33	
64.금융업	5~19인	13,485	129,292	9.6	3.7	305	5.55
	20~49인	1,616	45,029	27.9	7.7	107	9.15
	50~99인	260	17,152	66.0	12.8	58	11.34
	100~299인	124	20,424	164.7	52.1	75	7.11
	300인 이상	60	61,573	1,026.2	1,041.8	60	
65.보험 및 연금업	5~19인	2,153	21,769	10.1	4.1	87	10.29
	20~49인	2,489	81,695	32.8	8.0	147	7.84
	50~99인	792	50,605	63.9	12.5	93	9.55
	100~299인	160	23,901	149.4	48.4	82	7.56
	300인 이상	49	36,999	755.1	549.2	49	
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5~19인	4,340	44,376	10.2	4.0	134	8.33
	20~49인	1,663	49,504	29.8	8.0	111	8.99
	50~99인	432	28,216	65.3	13.3	71	10.63
	100~299인	151	23,084	152.9	54.4	84	7.12
	300인 이상	54	40,852	756.5	584.6	54	
68.부동산업	5~19인	25,778	209,180	8.1	3.4	503	4.33
	20~49인	1,937	54,310	28.0	7.5	118	8.74
	50~99인	229	15,191	66.3	13.2	56	11.38
	100~299인	156	25,357	162.5	55.6	87	6.99
	300인 이상	39	27,875	714.7	565.7	39	
70.연구개발업	5~19인	3,017	28,896	9.6	4.1	106	9.35
	20~49인	946	27,788	29.4	7.9	80	10.48
	50~99인	326	22,194	68.1	13.6	64	10.98
	100~299인	263	44,370	168.7	58.0	122	6.50
	300인 이상	130	172,200	1,324.6	3,528.4	130	
71.전문 서비스업	5~19인	19,160	151,758	7.9	3.4	385	4.94
	20~49인	2,271	66,421	29.2	8.1	139	8.05
	50~99인	642	44,259	68.9	14.4	89	9.64
	100~299인	385	63,266	164.3	53.1	150	6.25
	300인 이상	170	135,526	797.2	761.4	170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9인	10,900	100,176	9.2	3.9	267	5.92
	20~49인	2,550	74,298	29.1	7.9	149	7.79
	50~99인	649	44,427	68.5	13.9	88	9.71
	100~299인	331	53,740	162.4	52.3	133	6.57
	300인 이상	113	65,211	577.1	342.2	113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19인	3,661	29,258	8.0	3.4	107	9.33
	20~49인	452	12,822	28.4	7.7	59	11.90
	50~99인	80	5,347	66.8	12.9	46	9.42
	100~299인	34	4,797	141.1	41.2	34	
	300인 이상	6	3,117	519.5	157.9	6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9인	4,248	38,602	9.1	4.0	131	8.43
	20~49인	1,329	40,118	30.2	8.4	100	9.42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50~99인	492	34,112	69.3	13.9	77	10.26
	100~299인	396	65,405	165.2	53.5	154	6.17
	300인 이상	160	115,469	721.7	937.9	160	
75.사업지원 서비스업	5~19인	8,105	73,300	9.0	3.9	211	6.66
	20~49인	3,033	91,971	30.3	8.3	176	7.17
	50~99인	1,225	84,867	69.3	14.5	135	7.96
	100~299인	1,029	171,260	166.4	54.0	338	4.37
	300인 이상	484	374,227	773.2	793.6	484	
76.임대업; 부동산 제외	5~19인	2,466	21,085	8.6	3.8	90	10.14
	20~49인	509	14,104	27.7	6.7	58	12.11
	50~99인	44	2,916	66.3	13.2	40	4.67
	100~299인	21	2,940	140.0	39.2	21	
	300인 이상	6	2,363	393.8	20.8	6	
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19인	3,912	48,703	12.4	4.3	130	8.45
	20~49인	4,448	131,686	29.6	7.7	224	6.38
	50~99인	1,116	76,639	68.7	14.2	125	8.26
	100~299인	959	156,344	163.0	53.0	313	4.55
	300인 이상	567	471,972	832.4	672.5	567	
85.교육 서비스업	5~19인	30,864	261,678	8.5	3.8	665	3.76
	20~49인	8,535	264,011	30.9	8.6	435	4.58
	50~99인	6,464	455,340	70.4	13.3	503	4.20
	100~299인	1,359	173,527	127.7	38.0	317	4.82
	300인 이상	283	253,436	895.5	816.3	283	
86.보건업	5~19인	31,682	251,629	7.9	3.4	622	3.89
	20~49인	3,449	103,383	30.0	8.4	195	6.82
	50~99인	1,970	140,323	71.2	13.8	186	6.84
	100~299인	1,260	199,538	158.4	51.8	390	4.12
	300인 이상	323	338,860	1049.1	1178.0	323	
87.사회복지 서비스업	5~19인	40,581	405,324	10.0	3.9	879	3.27
	20~49인	11,471	350,032	30.5	8.2	547	4.09
	50~99인	3,189	210,494	66.0	13.1	264	5.78
	100~299인	884	144,623	163.6	53.0	291	4.71
	300인 이상	168	123,757	736.6	688.0	168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19인	3,079	26,895	8.7	3.7	102	9.54
	20~49인	647	19,840	30.7	8.4	69	11.15
	50~99인	189	12,744	67.4	13.1	53	11.42
	100~299인	99	15,094	152.5	50.5	67	6.81
	300인 이상	15	6,780	452.0	102.3	15	
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19인	9,531	73,725	7.7	3.2	204	6.79
	20~49인	753	22,175	29.4	8.0	72	10.98
	50~99인	243	17,008	70.0	14.5	59	11.10
	100~299인	287	44,685	155.7	46.4	111	7.28
	300인 이상	29	19,784	682.2	598.7	29	
94.협회 및 단체	5~19인	6,776	53,563	7.9	3.3	162	7.61
	20~49인	663	19,202	29.0	8.1	69	11.17
	50~99인	160	10,718	67.0	12.8	51	11.33
	100~299인	84	12,255	145.9	44.5	60	6.76
	300인 이상	7	3,188	455.4	166.7	7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5~19인	6,671	56,941	8.5	3.7	173	7.35
	20~49인	1,048	29,494	28.1	7.2	81	10.46
	50~99인	117	7,983	68.2	14.2	49	10.67
	100~299인	27	3,770	139.6	41.6	27	
	300인 이상						
96.기타 개인 서비스업	5~19인	8,628	70,588	8.2	3.6	205	6.76
	20~49인	998	28,292	28.3	7.5	80	10.51
	50~99인	144	9,610	66.7	13.6	50	11.20
	100~299인	63	9,460	150.2	49.8	57	4.01
	300인 이상	8	3,246	405.8	81.8	8	

기준

- 1) 건설업 업종은 건축, 토목, 기타로 구분
- 2) 규모층을 공사금액 기준으로
 20억원~50억원 미만
 50억원~120억원 미만
 120억원~800억원 미만
 800억원~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으로 구분

표본배분방법

- 질사추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사업체와 모집단 사업체수가 적은 토목 사업체는 전수조사 실시
- 과표본추출 총별 최소 표본 수 60개 확보
 업종 by 공사금액 규모 세부 단위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95% 신뢰수준 하에서 허용오차를 10% 이내로 최소 표본 수 확보
- 네이만배분 총별 크기와 분산을 고려하여 배분

20억원 이상

그룹	공사금액	사업장수	공사금액 평균	공사금액 표준편차	표본수	허용오차
전체		31,950			3,000	1.70
A_건축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733	3,297,808,722	888,897,623	99	9.79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4,731	7,631,877,426	1,913,366,295	112	9.15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4,658	32,511,608,707	18,701,483,234	558	3.89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158	111,099,785,906	20,215,234,120	194	6.42
	1,500억원 이상	1,332	327,821,998,490	486,388,708,701	1,332	0.00
B_토목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4	3,208,675,628	867,173,464	54	0.00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33	7,385,073,258	1,841,400,066	33	0.00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14	20,575,356,090	7,160,570,780	14	0.00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					
C_기타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181	3,159,007,751	860,002,520	95	9.99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3,201	7,370,771,224	1,855,474,741	94	9.96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1,553	26,729,982,132	15,566,305,443	198	6.51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62	108,300,190,426	18,370,875,570	77	8.09
	1,500억원 이상	140	551,249,731,145	1,850,922,168,626	140	0.00

부록 5-6. 6안: 17개 대업종 (중47) (제조업 제외) +건설업

기준

- 1) 전사체 업종중 대분류 기준 다음업종 제외(간설업, 제조업)
- 2) 1인 자영자는 제외
- 3) 규모종을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으로 세분화

표본배분방법

절사추출
과표본추출

총사자수 300명 이상 모든 사업체는 전수조사 실시

층별 최소 표본 수 40개 확보

업종 by 총사자 규모 세부 단위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95% 신뢰수준 하에서 허용오차를 13% 이내로 최소 표본 수 확보

층별 크기와 분산을 고려하여 배분

네이밍배분

업종 중분류	규모종	사업체 수	총사자 합계	총사자 평균	총사자 표준편차	2만7천개	
						표본수	허용오차
		253,202	10,297,031	40.7	155.9	27,000	0.56
1.농업	10~19인	640	8,371	13.1	2.7	56	12.51
	20~49인	344	10,045	29.2	7.6	64	11.05
	50~99인	51	3,271	64.1	12.4	46	4.52
	100~299인	12	1,602	133.5	19.3	12	
	300인 이상	1	817	817.0	0.0	1	
2.임업	10~19인	200	2,688	13.4	2.7	45	12.86
	20~49인	73	2,190	30.0	8.3	46	8.79
	50~99인	12	851	70.9	14.7	12	
	100~299인	4	564	141.0	35.5	4	
	300인 이상						
3.어업	10~19인	46	597	13.0	2.9	41	5.05
	20~49인	34	1,088	32.0	8.0	34	
	50~99인	21	1,596	76.0	16.2	21	
	100~299인	8	1,172	146.5	27.6	8	
	300인 이상	1	302	302.0	0.0	1	
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0~19인	1	12	12.0	0.0	1	
	20~49인	3	95	31.7	4.9	3	
	50~99인	1	93	93.0	0.0	1	
	100~299인	1	257	257.0	0.0	1	
	300인 이상	2	1,085	542.5	88.5	2	
6.금속 광업	10~19인	1	10	10.0	0.0	1	
	20~49인	3	90	30.0	6.5	3	
	50~99인						
	100~299인	1	100	100.0	0.0	1	
	300인 이상						
7.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0~19인	165	2,293	13.9	3.0	44	12.65
	20~49인	140	4,116	29.4	7.8	50	11.11
	50~99인	17	1,179	69.4	15.6	17	
	100~299인						
	300인 이상						
8.광업 지원 서비스업	10~19인	2	23	11.5	1.5	2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	604	604.0	0.0	1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19인	129	1,707	13.2	2.6	43	12.20
	20~49인	211	7,312	34.7	8.4	56	11.22
	50~99인	207	14,590	70.5	13.0	64	10.18
	100~299인	94	16,412	174.6	59.4	88	2.64
	300인 이상	33	25,702	778.8	592.9	33	
36.수도업	10~19인	57	848	14.9	2.7	41	8.11
	20~49인	174	5,853	33.6	8.2	53	11.23
	50~99인	68	4,533	66.7	13.9	49	7.40
	100~299인	41	6,016	146.7	38.2	41	
	300인 이상	2	2,118	1059.0	753.0	2	
37.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0~19인	267	3,680	13.8	2.9	47	12.98
	20~49인	227	6,860	30.2	7.6	56	11.37
	50~99인	47	3,012	64.1	13.6	46	2.11
	100~299인	17	2,840	167.1	35.4	17	

37.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00인 이상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0~19인	1,139	15,307	13.4	2.8	69	11.43	
	20~49인	911	28,576	31.4	8.7	112	8.67	
	50~99인	226	14,998	66.4	13.1	67	10.04	
	100~299인	46	6,407	139.3	45.2	46		
	300인 이상	2	805	402.5	48.5	2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10~19인	19	264	13.9	2.9	19		
	20~49인	18	517	28.7	7.5	18		
	50~99인	9	517	57.4	6.1	9		
	100~299인	1	100	100.0	0.0	1		
	300인 이상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0~19인	2,262	30,357	13.4	2.7	97	9.73	
	20~49인	647	17,473	27.0	7.3	83	10.04	
	50~99인	92	6,086	66.2	12.8	51	9.16	
	100~299인	26	4,049	155.7	51.2	26		
	300인 이상	3	2,155	718.3	426.7	3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10~19인	13,383	174,300	13.0	2.7	372	5.01	
	20~49인	5,563	160,212	28.8	7.9	439	4.49	
	50~99인	1,063	72,165	67.9	14.0	175	6.77	
	100~299인	512	79,957	156.2	51.1	278	3.97	
	300인 이상	128	68,021	531.4	263.5	128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10~19인	10,065	129,469	12.9	2.7	286	5.71	
	20~49인	3,800	107,904	28.4	7.7	306	5.37	
	50~99인	742	50,300	67.8	14.3	137	7.56	
	100~299인	428	63,646	148.7	41.9	203	4.99	
	300인 이상	48	33,496	697.8	801.3	48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0~19인	3,245	43,967	13.5	2.8	123	8.67	
	20~49인	3,054	92,989	30.4	8.3	270	5.69	
	50~99인	1,238	84,650	68.4	13.6	193	6.48	
	100~299인	753	118,978	158.0	52.1	397	3.38	
	300인 이상	75	37,979	506.4	236.0	75		
50.수상 운송업	10~19인	189	2,595	13.7	3.0	45	12.75	
	20~49인	146	4,453	30.5	8.6	51	11.07	
	50~99인	37	2,588	69.9	15.4	37		
	100~299인	26	4,155	159.8	43.8	26		
	300인 이상	8	4,326	540.8	353.1	8		
51.항공 운송업	10~19인	35	475	13.6	2.8	35		
	20~49인	21	644	30.7	5.8	21		
	50~99인	7	520	74.3	15.0	7		
	100~299인	11	1,848	168.0	50.0	11		
	300인 이상	10	26,334	2633.4	3277.4	10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0~19인	2,748	36,465	13.3	2.7	108	9.24	
	20~49인	1,785	53,205	29.8	8.2	173	7.08	
	50~99인	584	39,948	68.4	14.7	118	8.06	
	100~299인	390	59,641	152.9	52.2	225	4.25	
	300인 이상	72	48,235	669.9	550.3	72		
55.숙박업	10~19인	683	8,875	13.0	2.8	57	12.43	
	20~49인	432	12,782	29.6	8.1	72	10.54	
	50~99인	137	9,244	67.5	13.1	56	10.07	
	100~299인	74	12,219	165.1	52.6	74		
	300인 이상	32	16,915	528.6	253.7	32		
56.음식점 및 주점업	10~19인	15,937	200,185	12.6	2.5	404	4.81	
	20~49인	2,897	81,082	28.0	7.8	245	5.99	
	50~99인	330	20,873	63.3	11.4	74	10.03	
	100~299인	40	5,847	146.2	44.9	40		
	300인 이상	4	2,434	608.5	198.6	4		
58.출판업	10~19인	3,350	44,441	13.3	2.7	124	8.64	
	20~49인	2,350	69,705	29.7	8.2	215	6.37	
	50~99인	743	51,266	69.0	14.3	137	7.56	
	100~299인	429	69,085	161.0	49.3	233	4.34	
	300인 이상	115	74,922	651.5	608.1	115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0~19인	753	9,998	13.3	2.7	59	12.25	
	20~49인	556	15,783	28.4	7.6	79	10.21	
	50~99인	86	5,751	66.9	13.3	50	8.97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00~299인	52	8,229	158.3	57.9	52	
	300인 이상	10	4,372	437.2	132.5	10	
60.방송업	10~19인	88	1,189	13.5	2.7	42	10.93
	20~49인	113	3,588	31.8	8.4	49	10.54
	50~99인	57	4,072	71.4	13.7	47	5.99
	100~299인	38	5,761	151.6	47.1	38	
	300인 이상	15	13,502	900.1	981.7	15	
61.우편 및 통신업	10~19인	379	5,109	13.5	2.9	50	12.91
	20~49인	352	10,728	30.5	8.6	68	10.67
	50~99인	179	12,224	68.3	14.0	63	9.94
	100~299인	175	30,030	171.6	52.4	123	4.82
	300인 이상	23	20,803	904.5	995.5	23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19인	1,146	15,291	13.3	2.8	69	11.44
	20~49인	841	25,112	29.9	8.1	102	9.10
	50~99인	260	17,842	68.6	13.8	73	9.73
	100~299인	154	25,490	165.5	51.6	112	4.84
	300인 이상	48	45,135	940.3	1,699.6	48	
63.정보서비스업	10~19인	434	5,724	13.2	2.7	51	12.89
	20~49인	287	8,735	30.4	8.6	62	11.02
	50~99인	110	7,508	68.3	13.7	54	9.52
	100~299인	74	12,240	165.4	50.0	74	
	300인 이상	33	26,918	815.7	867.9	33	
64.금융업	10~19인	5,995	78,000	13.0	2.6	182	7.15
	20~49인	1,616	45,029	27.9	7.7	153	7.54
	50~99인	260	17,152	66.0	12.8	70	10.01
	100~299인	124	20,424	164.7	52.1	99	4.42
	300인 이상	60	61,573	1,026.2	1,041.8	60	
65.보험 및 연금업	10~19인	1,025	14,054	13.7	2.9	67	11.57
	20~49인	2,489	81,695	32.8	8.0	221	6.29
	50~99인	792	50,605	63.9	12.5	130	7.86
	100~299인	160	23,901	149.4	48.4	111	5.15
	300인 이상	49	36,999	755.1	549.2	49	
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19인	2,250	30,324	13.5	2.7	96	9.79
	20~49인	1,663	49,504	29.8	8.0	161	7.34
	50~99인	432	28,216	65.3	13.3	92	9.06
	100~299인	151	23,084	152.9	54.4	115	4.46
	300인 이상	54	40,852	756.5	584.6	54	
68.부동산업	10~19인	6,844	87,832	12.8	2.6	204	6.76
	20~49인	1,937	54,310	28.0	7.5	172	7.13
	50~99인	229	15,191	66.3	13.2	67	10.07
	100~299인	156	25,357	162.5	55.6	119	4.38
	300인 이상	39	27,875	714.7	565.7	39	
70.연구개발업	10~19인	1,284	17,450	13.6	2.8	73	11.14
	20~49인	946	27,788	29.4	7.9	108	8.88
	50~99인	326	22,194	68.1	13.6	80	9.52
	100~299인	263	44,370	168.7	58.0	179	4.14
	300인 이상	130	172,200	1,324.6	3,528.4	130	
71.전문 서비스업	10~19인	4,688	60,712	13.0	2.7	155	7.74
	20~49인	2,271	66,421	29.2	8.1	208	6.48
	50~99인	642	44,259	68.9	14.4	124	7.91
	100~299인	385	63,266	164.3	53.1	226	4.19
	300인 이상	170	135,526	797.2	761.4	170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19인	4,209	56,332	13.4	2.7	145	8.00
	20~49인	2,550	74,298	29.1	7.9	225	6.24
	50~99인	649	44,427	68.5	13.9	122	8.00
	100~299인	331	53,740	162.4	52.3	198	4.41
	300인 이상	113	65,211	577.1	342.2	113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19인	926	12,073	13.0	2.7	63	11.92
	20~49인	452	12,822	28.4	7.7	72	10.59
	50~99인	80	5,347	66.8	12.9	49	8.71
	100~299인	34	4,797	141.1	41.2	34	
	300인 이상	6	3,117	519.5	157.9	6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0~19인	1,567	21,263	13.6	2.8	80	10.67
	20~49인	1,329	40,118	30.2	8.4	141	7.80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50~99인	492	34,112	69.3	13.9	102	8.64
	100~299인	396	65,405	165.2	53.5	233	4.12
	300인 이상	160	115,469	721.7	937.9	160	
75.사업지원 서비스업	10~19인	3,034	40,696	13.4	2.8	117	8.88
	20~49인	3,033	91,971	30.3	8.3	271	5.68
	50~99인	1,225	84,867	69.3	14.5	202	6.30
	100~299인	1,029	171,260	166.4	54.0	546	2.87
	300인 이상	484	374,227	773.2	793.6	484	
76.임대업; 부동산 제외	10~19인	774	10,368	13.4	2.8	60	12.15
	20~49인	509	14,104	27.7	6.7	71	10.79
	50~99인	44	2,916	66.3	13.2	44	
	100~299인	21	2,940	140.0	39.2	21	
	300인 이상	6	2,363	393.8	20.8	6	
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19인	2,621	39,226	15.0	2.7	106	9.32
	20~49인	4,448	131,686	29.6	7.7	353	5.00
	50~99인	1,116	76,639	68.7	14.2	185	6.58
	100~299인	959	156,344	163.0	53.0	503	3.01
	300인 이상	567	471,972	832.4	672.5	567	
85.교육 서비스업	10~19인	9,254	124,600	13.5	2.8	277	5.80
	20~49인	8,535	264,011	30.9	8.6	711	3.52
	50~99인	6,464	455,340	70.4	13.3	825	3.19
	100~299인	1,359	173,527	127.7	38.0	510	3.43
	300인 이상	283	253,436	895.5	816.3	283	
86.보건업	10~19인	7,870	102,728	13.1	2.7	232	6.34
	20~49인	3,449	103,383	30.0	8.4	303	5.38
	50~99인	1,970	140,323	71.2	13.8	288	5.34
	100~299인	1,260	199,538	158.4	51.8	634	2.74
	300인 이상	323	338,860	1049.1	1178.0	323	
87.사회복지 서비스업	10~19인	18,719	252,764	13.5	2.7	505	4.30
	20~49인	11,471	350,032	30.5	8.2	901	3.13
	50~99인	3,189	210,494	66.0	13.1	421	4.45
	100~299인	884	144,623	163.6	53.0	467	3.11
	300인 이상	168	123,757	736.6	688.0	168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19인	1,033	13,655	13.2	2.7	66	11.67
	20~49인	647	19,840	30.7	8.4	90	9.58
	50~99인	189	12,744	67.4	13.1	63	10.08
	100~299인	99	15,094	152.5	50.5	86	3.83
	300인 이상	15	6,780	452.0	102.3	15	
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0~19인	2,095	26,969	12.9	2.6	91	10.05
	20~49인	753	22,175	29.4	8.0	95	9.40
	50~99인	243	17,008	70.0	14.5	72	9.69
	100~299인	287	44,685	155.7	46.4	161	5.12
	300인 이상	29	19,784	682.2	598.7	29	
94.협회 및 단체	10~19인	1,644	21,269	12.9	2.7	81	10.62
	20~49인	663	19,202	29.0	8.1	89	9.67
	50~99인	160	10,718	67.0	12.8	59	10.14
	100~299인	84	12,255	145.9	44.5	74	3.93
	300인 이상	7	3,188	455.4	166.7	7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0~19인	1,999	26,795	13.4	2.8	92	9.98
	20~49인	1,048	29,494	28.1	7.2	109	8.89
	50~99인	117	7,983	68.2	14.2	55	9.62
	100~299인	27	3,770	139.6	41.6	27	
	300인 이상						
96.기타 개인 서비스업	10~19인	2,316	30,647	13.2	2.8	99	9.64
	20~49인	998	28,292	28.3	7.5	108	8.91
	50~99인	144	9,610	66.7	13.6	58	9.94
	100~299인	63	9,460	150.2	49.8	63	
	300인 이상	8	3,246	405.8	81.8	8	

기준

- 1) 건설업 업종은 건축, 토목, 기타로 구분
- 2) 규모층을 공사금액 기준으로
 20억원~50억원 미만
 50억원~120억원 미만
 120억원~800억원 미만
 800억원~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으로 구분

표본배분방법

- 질사추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사업체와 모집단 사업체수가 적은 토목 사업체는 전수조사 실시
- 과표본추출 총별 최소 표본 수 60개 확보
 업종 by 공사금액 규모 세부 단위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해 95% 신뢰수준 하에서 허용오차를 10% 이내로
 최소 표본 수 확보
- 네이만배분 총별 크기와 분산을 고려하여 배분

20억원 이상

그룹	공사금액	사업장수	공사금액 평균	공사금액 표준편차	표본수	허용오차
전체		31,950			3,000	1.70
A_건축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733	3,297,808,722	888,897,623	99	9.79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4,731	7,631,877,426	1,913,366,295	112	9.15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4,658	32,511,608,707	18,701,483,234	558	3.89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158	111,099,785,906	20,215,234,120	194	6.42
	1,500억원 이상	1,332	327,821,998,490	486,388,708,701	1,332	0.00
B_토목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4	3,208,675,628	867,173,464	54	0.00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33	7,385,073,258	1,841,400,066	33	0.00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14	20,575,356,090	7,160,570,780	14	0.00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					
C_기타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7,181	3,159,007,751	860,002,520	95	9.99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3,201	7,370,771,224	1,855,474,741	94	9.96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	1,553	26,729,982,132	15,566,305,443	198	6.51
	8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162	108,300,190,426	18,370,875,570	77	8.09
	1,500억원 이상	140	551,249,731,145	1,850,922,168,626	140	0.00



연구진

연구기관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이선희 (교수, 충남대학교)

연구원 : 박미진 (실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 박종식 (부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선하 (석사과정, 충남대학교)

연구보조원 : 윤선미 (석사과정, 충남대학교)

연구보조원 : 멜리아 리즈크 아제다라흐
(석사과정, 충남대학교)

연구보조원 : 최서영 (박사과정, 서강대학교)

연구상대역 : 조윤희 (연구위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기간

2024. 04. 17. ~ 2024.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4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2024-산업안전보건연구원-562)

발 행 일 : 2024년 10월 31일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승현
연구책임자 : 충남대학교 교수 이선희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 052-703-0823
팩 스 : 052-703-0332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3642-98-6
공공안심글꼴 : 무료글꼴, 한국출판인회의, Kopub바탕체/돋움체